



2024. 9.

국회에산정책처 | 국정감사 대비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상아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박소희 예산분석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장희란 예산분석관

지원 | 장유진 행정실무원
김서연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 현황과 분야별 주제 】

2024.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4. 9. 23.)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지정된 327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수입·지출액은 2023년 기준 907조 3,792억원으로,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세수부진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운영 전반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3월에는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일을 앞당기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국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부처에 비하여 기관 운영,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기관별·공시항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기관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1권에서는 공공기관 전반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였고, 분야별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 현황,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안전관리등급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 공공기관의 이슈를 주제별로 분석하였습니다. 2권에서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 현황과 재무건전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문제 및 복리후생 등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다룸으로써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가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김 경 호

현 황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3
2.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13
3. 공공기관 재무 현황	21
4. 공공기관 인력 현황	28
5.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32
6.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41
7.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	48
8.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54

분야별 주제

[재무 분야]

1.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자산효율화 이행 현황 분석	67
2. 손실보전 공공기관 현황	73
3.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 분석	81



CONTENTS

4.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87
5. 공공기관 금융투자상품 운용 현황 분석	92
6. 공공기관 ESG 금융 현황과 문제점	99
6-1. 공공기관 ESG 채권 현황	101
6-2. 금융공공기관의 ESG 보증, 대출, 투자 현황	108

[조직 · 인사 분야]

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분석	117
2. 공공기관 일 · 가정 양립제도 분석	126
3.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 분석	134
4.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명 현황 및 문제점	142
5.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분석	151
6. 공공기관 징계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관리 문제	163

[안전 분야]

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현황 분석	181
2.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분석	189

[친환경 · 상생 분야]

1. 공공기관 환경법규 위반 현황 분석 203
2.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현황 분석 210
3. 공기업 · 준정부기관 혁신조달제품 구매현황 분석 215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분석 221
5.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현황 분석 223

[복리후생 분야]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의 적정성 분석 231
2. 공공기관 퇴직급여 적립금 현황 분석 241
3.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 운영 부적정 253
4. 공공기관 지침 위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 운영 문제 270
5. 공공기관 지침 위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 운영 문제 276
6. 공공기관 지침 위반 교육비 제도 운영 문제 280
7. 공공기관 지침 위반 명예퇴직수당 지급 문제 등 283

[기타 분야]

1.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89
1-1. 공공기관 지정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관리 약화	289
1-2.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관 현황 및 지정 해제의 적정성 분석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	292
1-3.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현황 및 개선점 분석	300
2. 공공기관 교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5
3.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분석	318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현황 분석	329

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며, 기관의 규모, 정부지원정도, 사업성격 등에 따라 공공기관 신규지정, 해제, 유형변경이 이루어짐
 -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경영실적평가(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공시, 경영혁신 등이 적용됨
 - 공공기관 중 직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함
 -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이 85% 이상인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그 외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
 -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¹⁾ 그 중 기금관리 및 기금관리 위탁 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정부업무 위탁집행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됨
 -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관리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운영상 자율성이 높음

이상이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3.1.1.)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됨
 (정원) 50명 이상 → 30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2024년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유형		분류기준			기관 예시
공기업 (32개)	시장형 (14개)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준시장형 (18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준정부 기관 (55개)	기금관리형 (12개)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43개)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24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총 327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나.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 2024년 4월 기준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는 327개로 2023년 347개 대비 20개 감소
 - (신규지정 +3)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이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 (지정해제 △23) 연구개발 관리체계 전환이 적용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총 22개)과 타기관(케이위터운영관리(주))에 통폐합되어 지정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 (유형변경) 한국도로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변경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수는 각각 32개, 55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20개 감소(260개→240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단위: 개)

구분	2023	2024	증감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2	-	-	-	-
▪ 시장형	13	14	+1	-	-	+1
▪ 준시장형	19	18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5	-	-	-	-
▪ 기금관리형	11	12	+1	-	-	+1
▪ 위탁집행형	44	43	△1	-	-	△1
③ 기타공공기관	260	240	△20	+3	△23	-
합계	347	327	△20	+3	△23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2024년도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58개로 가장 많고,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37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35개 순임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2024년)]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법제사법 위원회 (3)	법무부 (3)	기타공공기관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무위원회 (3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5)	기타공공기관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가보훈부 (3)
	공정거래위원회 (2)	기타공공기관(2)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소비자원
	금융위원회 (7)	기타공공기관(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3)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획재정 위원회 (6)	기획재정부 (4)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조폐공사
		기타공공기관 (3)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관세청(1)	기타공공기관(1)	한국원산지정보원
	통계청(1)	기타공공기관(1)	(재)한국통계정보원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교육위원회 (22)	교육부 (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2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2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5)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송통신위원회 (2)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1)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3)	기타공공기관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외교통일 위원회 (5)	외교부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국제협력단
		기타공공기관(1)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2)	기타공공기관 (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외동포청(1)	기타공공기관(1)	재외동포협력센터
국방위원회 (5)	국방부 (3)	기타공공기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2)	기타공공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행정안전 위원회 (6)	행정안전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혁신처(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도로교통공단
소방청(1)	기타공공기관(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32)	문화체육관광부 (3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관광공사
		기타공공기관 (2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유산청(1)	기타공공기관(1)	국가유산진흥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35)	농림축산식품부 (12)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마사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기타공공기관 (8)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제식품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해양수산부 (17)	준시장형 공기업(1)	해양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15)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1)	기타공공기관(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공공기관 (4)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58)	산업통상자원부 (41)	시장형 공기업 (11)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 (13)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엠씨에스(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1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8)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공영협소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6)	기타공공기관 (6)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보건복지위원회 (33)	보건복지부 (2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4)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5)	기타공공기관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환경노동위원회 (26)	환경부 (11)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건협회
	고용노동부 (1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기타공공기관 (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기상청 (3)	기타공공기관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APEC기후센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토교통 위원회 (28)	국토교통부 (28)	시장형 공기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타공공기관 (15)	건설기술교육원, 국립항공박물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여성가족 위원회 (5)	여성가족부 (5)	기타공공기관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 ()안의 숫자는 기관 수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전체 공공기관 339개(2024년 7월 기준, 공공기관 327개 및 부설기관 12개 포함)의 지출(수입)은 2023년 기준 907조 3,792억원으로 2022년 대비 39조 8,062억원 감소함
- 2023년 전체 지출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29.4%이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3.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1%, 기타공공기관 18.7%, 준시장형 공기업 9.2%를 차지함
 - 2023년 지출 총계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조 39억원, 5.8%),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유형은 기타공공기관(△37조 8,328억원, △18.0%)임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비중)	증감 (B-A)
공기업	시장형	1,681,918	1,627,409	1,822,550	2,727,812	2,603,316 (29.4)	△124,496 (△4.6)
	준시장형	638,851	660,160	742,638	745,449	772,892 (9.2)	27,443 (3.7)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1,500,445	1,864,150	1,914,414	2,130,681	2,150,312 (23.7)	19,631 (0.9)
	위탁집행형	1,314,966	1,447,586	1,577,854	1,726,945	1,826,985 (19.1)	100,039 (5.8)
기타공공기관		1,182,381	1,604,111	1,423,778	2,098,614	1,720,286 (18.7)	△378,328 (△18.0)
합계		6,318,560	7,203,417	7,481,234	9,429,503	9,073,792 (100)	△398,062 (△3.8)

주: 1.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2.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및 부설기관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4개 공공기관의 2023년 총지출은 260조 3,316억원임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석유공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76.9%(2023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지출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전력공사	692,738	652,380	765,284	1,141,126	1,096,191
한국가스공사	291,578	245,447	302,545	561,193	488,685
한국도로공사	113,397	128,334	133,166	148,900	163,806
한국수력원자력(주)	107,504	125,449	121,320	140,627	151,901
한국석유공사	58,256	84,135	64,182	86,260	100,799
5개 기관 계(A)	1,263,472	1,235,745	1,386,497	2,078,105	2,001,382
전체 시장형 공기업 합계(B)	1,681,918	1,627,409	1,822,550	2,727,812	2,603,316
비중(A/B)	75.1	75.9	76.1	76.2	76.9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8개 공공기관의 2023년 총지출은 77조 2,892억원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전 KPS(주)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준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85.5%(2023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준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지출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토지주택공사	371,204	447,907	499,534	449,236	429,392
한국철도공사	68,396	66,554	79,944	100,358	97,364
한국수자원공사	44,592	49,308	56,689	64,395	63,497
주택도시보증공사	12,286	15,046	16,510	17,757	56,109
한전KPS(주)	13,403	14,381	14,644	14,959	14,829
5개 기관 계(A)	509,880	593,196	667,321	646,705	661,191
전체 준시장형 공기업 합계(B)	638,851	660,160	742,638	745,449	772,892
비중(A/B)	79.8	89.9	89.9	86.8	85.5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12개 공공기관의 2023년 총지출은 215조 312억원임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81.7%(2023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입·지출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주택금융공사	482,138	657,174	511,687	371,874	677,867
국민연금공단	235,253	264,614	299,694	349,071	399,503
예금보험공사	224,269	250,038	252,517	253,156	293,759
공무원연금공단	209,657	227,480	232,064	249,031	273,966
신용보증기금	85,086	111,777	112,675	137,575	112,106
5개 기관 계(A)	1,236,403	1,511,083	1,408,638	1,360,708	1,757,201
전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합계(B)	1,500,445	1,864,150	1,914,414	2,130,681	2,150,312
비중(A/B)	82.4	81.1	73.6	63.9	81.7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6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3년 총지출은 182조 6,985억원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86.8%(2023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수입·지출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민건강보험공단	864,999	946,570	1,043,015	1,164,493	1,235,231
국가철도공단	96,203	92,127	103,473	102,652	110,617
한국연구재단	58,833	71,614	77,850	85,378	98,030
한국장학재단	80,039	85,793	83,195	91,823	95,854
한국농어촌공사	38,501	41,601	44,518	45,654	46,748
5개 기관 계(A)	1,138,574	1,237,706	1,352,052	1,490,001	1,586,480
전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B)	1,314,966	1,447,586	1,577,854	1,726,945	1,826,985
비중(A/B)	86.6	85.5	85.7	86.3	86.8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249개 공공기관(9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3년 총지출은 172조 286억원임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기타공공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77.3%(2023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기타공공기관의 수입·지출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중소기업은행	457,004	563,547	496,935	697,830	609,239
한국산업은행	249,094	454,827	343,707	594,541	361,713
한국수출입은행	87,330	161,272	95,121	298,069	221,4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93,280	90,529	130,755	125,161	112,713
서민금융진흥원	12,301	12,035	13,929	15,333	25,505
5개 기관 계(A)	899,008	1,282,211	1,080,447	1,730,934	1,330,596
전체 기타공공기관 합계(B)	1,182,381	1,604,111	1,423,778	2,098,614	1,720,286
비중(A/B)	76.0	79.9	75.9	82.5	77.3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순지원수입은 2023년 기준 110조 6,363억원, 2022년 수입(106조 9,292억원) 대비 3조 7,071억원 증가함

- 2023년 정부순지원수입 규모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4.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5.6%), 기타공공기관(14.2%), 준시장형 공기업(4.6%), 시장형 공기업(1.6%)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기금의 위탁관리나 정부업무의 위탁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 정부순지원수입의 대부분(79.6%)을 차지하고, 자체사업을 통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공기업은 비중이 6.2%로 매우 낮음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기업	공기업	53,953 (7.3)	60,646 (6.6)	78,042 (8.0)	79,016 (7.4)	68,832 (6.2)
	시장형	14,961 (2.0)	18,270 (2.0)	23,092 (2.4)	25,280 (2.4)	18,194 (1.6)
	준시장형	38,992 (5.3)	42,376 (4.6)	54,950 (5.6)	53,736 (5.0)	50,638 (4.6)
준정부 기관	준정부기관	580,073 (78.7)	711,232 (76.8)	757,098 (77.4)	841,825 (78.7)	880,547 (79.6)
	기금관리형	292,597 (39.7)	372,653 (40.2)	385,774 (39.4)	445,054 (41.6)	487,153 (44.0)
	위탁집행형	287,476 (39.0)	338,579 (36.6)	371,324 (38.0)	396,771 (37.1)	393,394 (35.6)
기타공공기관		103,298 (14.0)	153,984 (16.6)	143,074 (14.6)	148,451 (13.9)	156,983 (14.2)
합계		737,325 (100.0)	925,862 (100.0)	978,214 (100.0)	1,069,292 (100.0)	1,106,363 (100.0)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의 총계 중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0.9%p 증가
 - 2023년 총수입 중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2.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1.5%), 기타공공기관(9.1%), 준시장형 공기업(6.6%), 시장형 공기업(0.7%)임

[공공기관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기업	시장형	정부순지원수입(A)	14,961	18,270	23,092	25,280	18,194
		총수입(B)	1,681,918	1,627,409	1,822,550	2,727,812	2,603,316
		비중(A/B)	0.9	1.1	1.3	0.9	0.7
	준시장형	정부순지원수입(A)	38,992	42,376	54,950	53,736	50,638
		총수입(B)	638,851	660,160	742,638	745,449	772,892
		비중(A/B)	6.1	6.4	7.4	7.2	6.6
준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정부순지원수입(A)	292,597	372,653	385,774	445,054	487,153
		총수입(B)	1,500,445	1,864,150	1,914,414	2,130,681	2,150,312
		비중(A/B)	19.5	20.0	20.2	20.9	22.7
	위탁 집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287,476	338,579	371,324	396,771	393,394
		총수입(B)	1,314,966	1,447,586	1,577,854	1,726,945	1,826,985
		비중(A/B)	21.9	23.4	23.5	23.0	21.5
기타 공공 기관	은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8,362	3,9498	14,687	7,250	3,429
		총수입(B)	793,428	1,179,647	935,763	1,590,440	1,192,377
		비중(A/B)	1.1	3.3	1.6	0.5	0.3
	비은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94,937	114,486	128,387	141,201	153,555
		총수입(B)	388,954	424,464	488,015	508,174	527,909
		비중(A/B)	24.4	27.0	26.3	27.8	29.1
소계	정부순지원수입(A)	103,298	153,984	143,074	148,451	156,983	
	총수입(B)	1,182,381	1,604,111	1,423,778	2,098,614	1,720,286	
	비중(A/B)	8.7	9.6	10.0	7.1	9.1	
합계	정부순지원수입(A)	737,325	925,862	978,214	1,069,292	1,106,363	
	총수입(B)	6,318,560	7,203,417	7,481,234	9,429,503	9,073,792	
	비중(A/B)	11.7	12.9	13.1	11.3	12.2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재무결산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공기업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 까지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5월 15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결산과 관련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음

[정부 결산 절차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비교]

절차		정부 결산	공공기관 결산
자체 결산서 작성 및 제출·승인	중앙관서의 장(기관장) →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2월 말	3월 15일까지 제출, 4월 10일까지 승인
결산서 감사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 감사원	4월 10일	5월 15일
회계검사 결과 기획재정부 송부	감사원 → 기획재정부장관	5월 20일	7월 10일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 국회	5월 31일	7월 31일

주: 이는 2024.3.26.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0호)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되며, 2023 회계연도 결산까지는 구법의 규정이 적용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2023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1,096.3조원, 부채총액은 709.0조원, 당기순손실은 3.2조원으로 2022년 대비 총 자산은 48.3조원, 부채는 38.0조원, 당기순손익은 10.8조원 증가)
 - 2023년 부채비율은 183.0%로 나타났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 건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p 증가
 -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부채비율이 177.9%로 2021년 대비 23.1%p 상승함
 - 한편 공공기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27.3%에서 2023년 31.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2019~2023)]

(단위: 조원,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849.4	890.2	961.9	1,048.0	1,096.3	48.3	4.6
부채	524.6	541.8	584.3	670.9	709.0	38.0	5.7
(부채비율)	(161.5)	(155.5)	(154.8)	(177.9)	(183.0)	(5.1)	-
(GDP 대비 비율)	(27.3)	(27.9)	(28.1)	(31.0)	(31.7)	(0.7)	-
당기순이익	0.8	5.2	10.8	△14.0	△3.2	10.8	-

주: 1.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 기본 재무제표인 자회사의 재무현황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상기 GDP 대비 부채비율 산정 시 GDP는 연도별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 지표를 사용하였고, 2024년 GDP 기준연도 변경을 반영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4.4.3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재무결산 결과는, 2024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27개 공공기관 중 3개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외된 것임

- 국가부채 통계는 포괄 범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²⁾는 1,067.4조원(GDP대비 45.9%)이고,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2조원(GDP대비 49.8%),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대비 68.4%) 수준
 - 국가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현금주의 기준에 따른 채무를 의미
 -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을 의미
 -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중앙,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

[국가부채 통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유형	2022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067.4조원 (45.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157.2조원 (49.8%)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588.7조원 (68.4%)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주: 상기 GDP 대비 부채비율 산정 시 GDP는 연도별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 지표를 사용하였고, 2024년 GDP 기준연도 변경을 반영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일반정부 부채(D2)는 2022년 1,157.2조원(GDP 대비 49.8%)이며 2021년 1,066.2조원 대비 90.9조원 증가
 - 이 중 중앙정부에 속한 비영리공공기관(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 포함)의 부채는 2021년 54.3조원에서 2022년 55.0조원으로 0.7조원 증가
 - 2022년 일반정부 부채(D2) 산출 시 포함된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중 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226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임

2) 2023년 국가채무 총계는 1,126.7조원이며 명목GDP 대비 비율은 46.9%임(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이후 기준)

[일반정부 부채(D2) 총괄표]

(단위: 조원)

구분	2021(A)	2022(B)	증감(B-A)
일반정부 부채 (=①+②+③)	1,066.2	1,157.2	90.9
중앙정부(①)	1,016.2	1,104.2	88.1
- 회계·기금	975.7	1,064.6	88.9
- 비영리공공기관	54.3	55.0	0.7
- 내부거래	△13.9	△15.4	△1.5
지방정부(②)	69.9	72.8	2.9
- 회계·기금	68.9	70.6	1.7
- 비영리공공기관	2.9	3.5	0.6
- 내부거래	△2.0	△1.3	0.7
내부거래(③)	△19.8	△19.8	0.0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2년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무증권(회사채)은 21.1조원으로 2021년 대비 1.5조원 감소하였으나, 차입금은 13조원으로 2021년 대비 1조원 증가, 기타 미지급부채는 21조원으로 2021년 대비 1.3조원 증가
 - 채무증권은 주로 한국장학재단(9.8조원), 예금보험공사(6.2조원) 등에서 크게 나타나며, 차입금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8.5조원) 등 기관에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정부 부채(D2) 중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세부내역]

(단위: 조원)

구분	2021 (A)	2022 (B)	증감 (B-A)	2022년 기관별 부채금액
채무증권	22.6	21.1	△1.5	한국장학재단(9.8), 예금보험공사(6.2), 한국자산관리공사(4.1) 등
차입금	12.0	13.0	1.0	한국농어촌공사(8.5), 한국환경산업기술원(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2) 등
기타 미지급	19.7	21.0	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3), 한국농어촌공사(2.9), 서민금융진흥원(2.4), 국민건강보험공단(2.3) 등
합계	54.3	55.0	0.7	-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공공부문 부채(D3)는 2022년 1,588.7조원(GDP 대비 68.4%)이며 2021년 1,427.3조원 대비 161.4조원 증가

- 중앙 비금융공기업(KBS, EBS,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포함)의 부채는 2021년 403.6조원에서 2022년 481.4조원으로 77.9조원 증가

[공공부문 부채(D3) 총괄표]

(단위: 조원)

구분	2021(A)	2022(B)	증감(B-A)
공공부문 부채 (=①+②+③)	1,427.3	1,588.7	161.4
일반정부(①)	1,066.2	1,157.2	90.9
비금융공기업(②)	439.7	517.4	77.7
- 중앙 비금융공기업	403.6	481.4	77.9
- 지방 비금융공기업	46.1	50.9	4.8
- 내부거래	△9.9	△14.9	△5.0
내부거래(③)	△78.6	△85.9	△7.3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채무증권(회사채)은 2022년 260.1조원으로 2021년 대비 38.7조원 증가 하였으며, 2022년 차입금은 96.6조원으로 2021년 대비 29.9조원 증가, 기타 미지급부채는 2021년 115.5조원에서 2022년 124.8조원으로 9.3조원 증가

- 2022년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주로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채무증권 104.6조원, 차입금 12.2조원, 기타 미지급 43.0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채무증권 33.8조원, 차입금 47.8조원, 기타 미지급 48.6조원), 한국가스공사(채무증권 19.1조원, 차입금 25.8조원) 등의 기관에서 크게 나타남
 -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는 연료비 상승 영향으로 부족자금 조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채무증권과 차입금이 전년 대비 급증함

[공공부문 부채(D3) 중 비금융공기업(중앙) 부채 세부내역]

(단위: 조원)

구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 (B-A)	2022년 기관별 부채금액
채무증권	221.4	260.1	38.7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104.6), 한국토지주택공사(33.8), 한국도로공사(31.1), 한국철도시설공단(19.3), 한국가스공사(19.1), 한국철도공사(13.5) 등
차입금	66.7	96.6	29.9	한국토지주택공사(47.8), 한국가스공사(25.8),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12.2) 등
기타 미지급	115.5	124.8	9.3	한국토지주택공사(48.6),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43.0) 등
합계	403.6	481.4	77.9	-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3년말 부채총액은 832.9조원으로 2022년 대비 7.6조원 증가하였으며, 2023년 당기순이익은 7.0조원으로 전기 당기순손실 4.8조원 대비 11.8조원 증가

- 3개 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당기순손익은 전년도 대비

각각 11.4조원 및 0.4조원 증가한 데 비해,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나타남

-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에이치엠엠(주) 지분 손상차손 환입과 한국전력공사 지분 평가손실이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2022년 대비 11.4조원 증가함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2021~2023)]

(단위: 조원)

구분	부채				당기순이익			
	2021	2022(a)	2023(b)	증감(b-a)	2021	2022(c)	2023(d)	증감(d-c)
한국산업은행	287.7	315.8	307.9	△7.9	1.3	△7.9	3.5	11.4
한국수출입은행	86.8	107.6	108.4	0.8	0.5	0.4	0.8	0.4
중소기업은행	370.0	401.9	416.6	14.7	2.4	2.7	2.7	0.0
합계	744.5	825.3	832.9	7.6	4.2	△4.8	7.0	11.8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4년 6월 말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평균 BIS비율³⁾은 14.85%로 2023년 14.35% 대비 상승

-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시중 은행의 평균 BIS비율(총자본)은 15.76%⁴⁾로, 3개 기관의 평균 BIS비율인 14.85%는 시중 은행 대비 0.91%p 낮음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BIS비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소기업은행	12.37	12.30	12.39	12.51	13.13	14.20	14.50	14.47	14.82	14.85	14.68	14.87	14.98
한국산업은행	15.01	14.47	13.36	14.18	14.86	15.26	14.80	14.05	15.96	14.88	13.40	13.70	14.25
한국수출입은행	11.61	11.60	10.50	10.04	10.77	12.90	14.42	14.56	15.09	14.84	13.38	14.47	15.31
3개 은행 평균	13.00	12.79	12.08	12.24	12.92	14.12	14.57	14.36	15.29	14.86	13.82	14.35	1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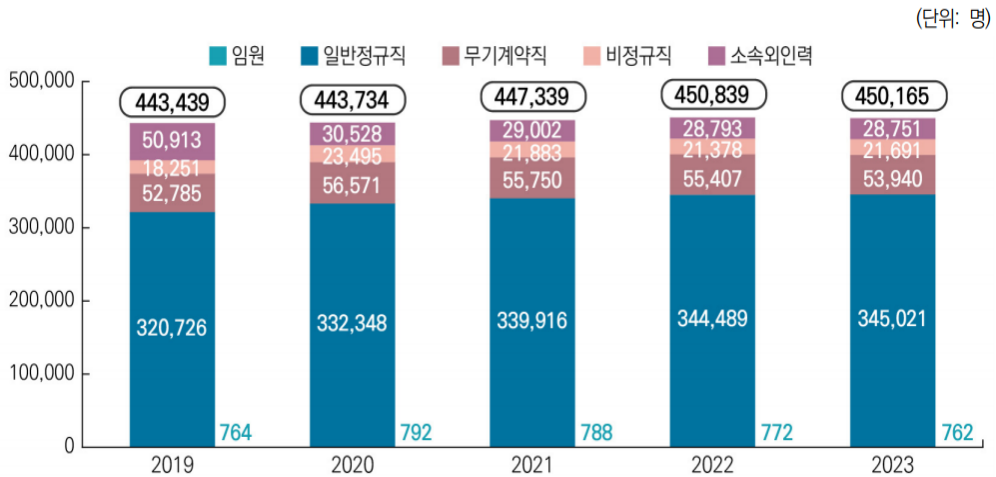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본비율

4) 금융감독원, “24.6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2024.8.28.

- 2023년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과 소속외인력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인력(현원기준)은 45만 165명임
 -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2022년 대비 674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정규직이 전년 대비 945명 감소, 비정규직은 313명 증가, 소속외인력은 42명 감소함
 - 공공기관 전체 인력 중 일반정규직 비중은 201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정규직	임원	764 (0.17)	792 (0.18)	788 (0.18)	772 (0.18)	762 (0.17)	△10	△0.07
	일반 정규직	320,726 (72.33)	332,348 (74.90)	339,916 (75.99)	344,489 (76.41)	345,021 (76.64)	532	1.84
	무기 계약직	52,785 (11.90)	56,571 (12.75)	55,750 (12.46)	55,407 (12.29)	53,940 (11.98)	△1,467	0.54
	소계	374,275 (84.40)	389,711 (87.83)	396,454 (88.63)	400,668 (88.87)	399,723 (88.79)	△945	1.66
	비정규직	18,251 (4.12)	23,495 (5.29)	21,883 (4.89)	21,378 (4.74)	21,691 (4.82)	313	4.41
소속외인력	50,913 (11.48)	30,528 (6.88)	29,002 (6.48)	28,793 (6.39)	28,751 (6.39)	△42	△13.31	
합계	443,439 (100.00)	443,734 (100.00)	447,339 (100.00)	450,839 (100.00)	450,165 (100.00)	△674	0.38	

주: ()는 비중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상임임원,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원은 42만 704명, 현원은 39만 9,723명

- 2023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8,744명 감소, 현원은 전년 대비 945명 감소
- 공공기관 임직원 정규직의 2023년 정원은 42만 704명이었으나 현원은 2만 981명 미충원된 39만 9,723명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정원에 비해 2만명 이상, 정원의 6% 이상 미충원되었으며 2023년의 경우 정원의 4.99%, 총 20,981명 미충원 되었음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현황(2019~2023)]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46,583	149,592	149,938	150,956	148,542	△2,414	0.33
시장형	72,716	74,701	75,530	76,169	75,027	△1,142	0.79
준시장형	73,867	74,891	74,408	74,787	73,515	△1,272	△0.12
준정부기관	111,041	113,340	116,440	118,339	115,727	△2,612	1.04
기금관리형	29,652	30,106	31,063	31,660	30,890	△770	1.03
위탁집행형	81,389	83,234	85,377	86,679	84,837	△1,842	1.04
기타공공기관	142,906	152,311	156,553	160,183	156,434	△3,749	2.29
은행형 공공기관	17,822	18,190	18,503	18,609	18,273	△336	0.63
기타	125,084	134,121	138,050	141,574	138,161	△3,413	2.52
합계	400,530	415,242	422,931	429,478	420,704	△8,774	1.24

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기타 기관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현원 현황(2019~2023)]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40,832	143,953	144,179	145,074	143,942	△1,132	0.55
시장형	70,334	72,686	73,191	73,860	73,192	△668	1.00
준시장형	70,498	71,267	70,988	71,214	70,749	△465	0.09
준정부기관	105,717	107,835	111,324	112,395	112,203	△192	1.50
기금관리형	28,104	28,456	29,387	29,653	29,741	88	1.43
위탁집행형	77,614	79,379	81,937	82,742	82,462	△280	1.53
기타공공기관	127,726	137,922	140,952	143,199	143,579	380	2.97
은행형 공공기관	16,578	16,868	16,964	16,914	16,794	△120	0.32
기타	111,148	121,054	123,988	126,285	126,785	500	3.35
합계	374,275	389,711	396,454	400,668	399,723	△945	1.66

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기타 기관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대비 현원 비교(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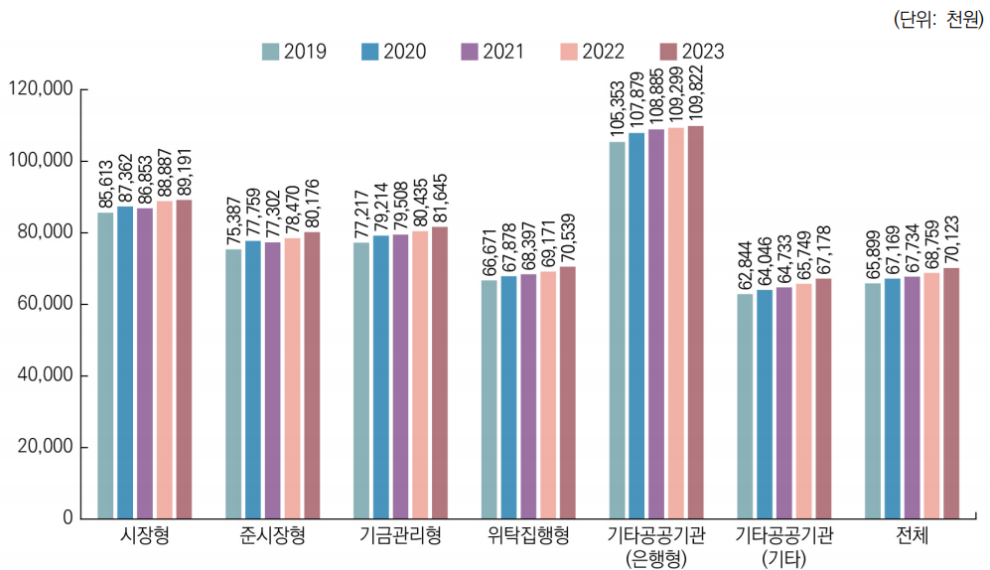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 (B-A)
정원(C)	400,530	415,242	422,931	429,478	420,704	△8,774
현원(D)	374,275	389,711	396,454	400,668	399,723	△945
차이(C-D)	26,255	25,531	26,477	28,810	20,981	-
비율[(C-D)/C]	6.56	6.15	6.26	6.71	4.99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공공기관(2024년 지정 기준)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는 약 7,012만원으로 2022년 6,876만원에 비해 약 136만원(연평균 1.57%) 증가
 - 2019년부터 2023년 동안 시장형 공기업의 보수 수준이 가장 높으며,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보수가 가장 낮음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보수가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서도 높음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 현황(2019~2023)]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80,005	82,096	81,481	83,027	84,120	1,093	1.26
시장형	85,613	87,362	86,853	88,887	89,191	304	1.03
준시장형	75,387	77,759	77,302	78,470	80,176	1,706	1.55
준정부기관	68,853	70,223	70,696	71,502	72,837	1,335	1.42
기금관리형	77,217	79,214	79,508	80,435	81,645	1,210	1.40
위탁집행형	66,671	67,878	68,397	69,171	70,539	1,368	1.42
기타공공기관	63,373	64,579	65,267	66,276	67,692	1,416	1.66
은행형 공공기관	105,353	107,879	108,885	109,299	109,822	524	1.04
기타	62,844	64,046	64,733	65,749	67,178	1,429	1.68
전체	65,899	67,169	67,734	68,759	70,123	1,364	1.5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 상위 5개 기관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치산기술협회의 2023년 일반정규직 평균보수는 1억 1,701만원이며, 이 중 성과급이 6,279만원 지급되어 기본급에 비해 과다 지급됨
 - 나머지 4개 기관은 금융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이 1억 1,300만원, 한국투자공사 1억 940만원 등임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한국치산기술협회	48,276	56,289	63,866	79,686	117,007	37,321	24.77
한국산업은행	109,888	111,999	113,703	112,890	112,999	109	0.7
한국투자공사	106,184	108,969	115,957	115,725	109,405	△6,320	0.75
중소기업은행	104,116	107,125	107,722	108,849	108,606	△243	1.07
한국수출입은행	102,055	104,514	105,231	106,157	107,862	1,705	1.39
전체 평균	65,899	67,169	67,734	68,759	70,123	1,364	1.5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일반정규직 평균보수 하위 5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서울요양원의 평균보수는 3,568만원으로 가장 낮음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 하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서울요양원	26,356	27,784	31,678	34,025	35,681	1,656	7.87
코레일관광개발(주)	35,415	33,407	39,964	39,410	40,045	635	3.1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35,504	35,416	36,867	37,985	41,266	3,281	3.83
한국보육진흥원	37,346	38,495	39,147	40,713	42,965	2,252	3.5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	43,241	42,978	43,718	43,215	△503	-0.02
전체 평균	65,899	67,169	67,734	68,759	70,123	1,364	1.5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2023년 1억 8,620만원으로 2022년(1억 8,562만원) 대비 약 580만원(연평균 1.36%) 증가
 - 2019년부터 2023년 동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보수는 매년 가장 높은 수준, 기타공공기관은 동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임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평균보수는 2023년 기준 3억 8315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시장형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보수는 2023년 1억 8,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05만원이 감소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 한국지역난방공사(△8,401만원), 한국동서발전(주) (△6,230만원), 한국전력공사(△6,158만원), 한국가스공사(△5,961만원), 한국중부발전(주) (△5,883만원) 등 주요 기관들의 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영평가 등급 하락으로 성과급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임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보수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208,464	214,900	204,324	200,240	187,723	△12,517	△2.59
시장형	229,635	231,722	221,655	216,233	180,183	△36,050	△5.88
준시장형	191,029	201,047	190,845	187,800	193,588	5,788	0.33
준정부기관	191,230	193,714	195,299	197,020	210,489	13,469	2.43
기금관리형	240,938	243,993	253,087	255,554	258,876	3,322	1.81
위탁집행형	177,359	179,682	179,172	180,685	196,985	16,300	2.66
기타공공기관	168,126	172,334	176,432	180,819	180,234	△585	1.75
은행형 공공기관	392,412	397,105	419,330	390,865	383,153	△7,712	△0.60
기타	165,011	169,297	173,193	178,019	177,575	△444	1.85
전체	176,392	180,358	182,559	185,621	186,201	580	1.3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기관장 보수 상위 5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기관장 보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2023년 3억 9,919만원임

[기관장 평균 보수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중소기업은행	408,835	413,724	423,257	431,030	399,188	△31,842	△0.51
한국투자공사	418,362	455,744	471,136	424,763	380,331	△44,432	△2.35
한국산업은행	384,201	388,795	436,979	370,782	375,135	4,353	△0.60
한국수출입은행	384,201	388,795	397,753	370,782	375,135	4,353	△0.60
국립암센터	359,856	340,367	348,156	382,361	360,704	△21,657	0.06
전체 평균	176,392	180,358	182,559	185,621	186,201	580	1.3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기관장 보수 하위 5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기관장 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 1억 570만원임

[기관장 평균 보수 하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재)예술경영지원센터	92,664	96,973	97,846	104,215	105,704	1,489	3.35
한국문화정보원	105,763	108,910	99,344	131,471	107,134	△24,337	0.32
재단법인 국악방송	106,503	107,898	110,657	110,393	112,037	1,644	1.27
강릉원주대학교차과병원	80,826	80,813	75,504	94,044	114,850	20,806	9.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18,202	126,205	127,032	117,207	115,698	△1,509	△0.53
전체 평균	176,392	180,358	182,559	185,621	186,201	580	1.3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평균보수는 2023년 1억 5,629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5만원(연평균 0.96%) 증가함

- 2019~2023년 동안 상임이사 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23년 기준 2억 421만원,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2023년 기준 1억 3,896만원임
- 시장형 공기업의 상임이사 평균보수는 2023년 1억 3,89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50만원이 감소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 한국지역난방공사(△5,538만원), 한국전력공사(△3,955만원), 한국동서발전(주) (△3,980만원), 한국가스공사(△3,783만원), 한국중부발전(주) (△3,733만원) 등 주요 기관들의 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영평가 등급 하락으로 성과급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임
- 기타공공기관의 2023년 상임이사 평균보수는 1억 5,330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보수와 비슷한 수준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평균보수는 2023년 기준 2억 8,332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음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보수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56,600	161,485	154,933	150,208	143,119	△7,089	△2.23
· 시장형	171,329	173,143	167,006	161,451	138,956	△22,495	△5.10
· 준시장형	144,470	151,885	145,544	141,463	146,357	4,894	0.32
준정부기관	152,955	155,211	157,677	159,990	170,047	10,057	2.68
· 기금관리형	188,487	191,786	201,544	202,404	204,207	1,803	2.02
· 위탁집행형	140,773	143,019	143,055	145,852	158,660	12,808	3.04
기타공공기관	146,205	147,375	149,770	153,410	153,304	△106	1.19
· 은행형 공공기관	293,190	296,789	308,937	284,561	283,319	△1,242	△0.85
· 기타	139,994	141,399	143,569	148,300	148,238	△61	1.44
· 전체	150,412	152,557	153,175	154,743	156,290	1,547	0.9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상임이사 보수 상위 5개 기관은 한국장학재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하고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상임이사 보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2023년 3억 30만원임

[상임이사 평균 보수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중소기업은행	310,761	314,576	321,908	310,496	300,300	△10,196	△0.82
한국투자공사	309,982	324,994	336,451	306,246	300,053	△6,193	△0.81
한국산업은행	292,037	295,622	318,203	278,882	282,204	3,322	△0.85
한국수출입은행	276,772	280,170	286,699	264,305	267,454	3,149	△0.85
한국장학재단	187,186	222,523	220,307	225,689	259,903	34,214	8.55
· 전체 평균	150,412	152,557	153,175	154,743	156,290	1,547	0.9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상임이사 보수 하위 5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준시장형 공기업)를 제외하고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상임이사 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9,500만원임

[상임이사 평균 보수 하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0	99,750	95,100	95,000	95,000	0	△1.61
코레일로지스(주)	89,460	73,527	93,232	94,406	95,637	1,231	1.68
코레일테크(주)	98,077	90,863	102,055	103,477	95,637	△7,840	△0.63
대한석탄공사	90,386	98,628	112,992	97,786	96,777	△1,009	1.7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20,418	124,945	128,117	98,588	97,081	△1,507	△5.24
전체 평균	150,412	152,557	153,175	154,743	156,290	1,547	0.9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평균보수는 2023년 1억 6,18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0.3만원(연평균 0.38%) 증가

- 2019~2023년 동안 상임감사 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23년 기준 2억 1,164만원,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2023년 기준 1억 4,426만원임
- 시장형 공기업의 상임감사 평균보수는 2023년 1억 4,42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78만원이 감소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한국전력공사(△5,948만원), 한국가스공사(△4,595만원), 한국동서발전(주) (△3,264만원), 한국남동발전(주)(△2,919만원), 한국중부발전(주)(△2,233만원) 등 주요 기관들의 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영평가 등급 하락으로 성과급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임
- 기타공공기관의 2023년 상임감사 평균보수는 1억 6,395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보수와 비슷한 수준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보수는 2023년 기준 2억 8,824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음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보수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59,845	163,062	157,179	151,514	144,306	△7,208	△2.52
· 시장형	174,300	176,133	172,809	163,040	144,257	△18,783	△4.62
· 준시장형	149,244	153,476	146,434	143,590	144,340	750	△0.83
준정부기관	162,982	163,728	167,963	171,411	174,602	3,191	1.74
· 기금관리형	199,180	199,210	204,835	208,961	211,641	2,680	1.53
· 위탁집행형	143,074	144,213	147,683	150,759	154,230	3,471	1.89
기타공공기관	156,033	157,901	164,570	161,408	163,946	2,538	1.24
· 은행형 공공기관	298,278	301,940	314,207	289,420	288,236	△1,184	△0.85
· 기타	142,698	144,807	150,967	150,113	153,293	3,179	1.81
· 전체	159,452	161,286	163,566	161,860	161,863	3	0.3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상임감사 보수는 상위 5개 기관은 예금보험공사(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를 제외하고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상임감사 보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2023년 3억 30만원임

[상임감사 평균 보수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중소기업은행	310,761	314,576	321,908	310,496	300,300	△10,196	△0.82
한국투자공사	312,617	326,439	337,880	306,246	297,245	△9,001	△1.25
한국산업은행	292,037	295,622	318,203	278,882	282,204	3,322	△0.85
한국수출입은행	292,037	295,621	302,510	278,881	282,204	3,323	△0.85
예금보험공사	234,790	231,966	234,033	238,592	250,795	12,203	1.66
· 전체 평균	159,452	161,286	163,566	161,860	161,863	3	0.3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상임감사 보수 하위 5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준시장형 공기업)를 제외하고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상임감사 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으로 8,900만원임

[상임감사 평균 보수 하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83,885	87,911	86,762	86,834	88,999	2,165	0.41
대한석탄공사	108,357	114,609	122,194	95,441	96,777	1,336	△2.79
부산대학교치과병원	92,488	94,885	94,708	98,586	101,246	2,660	2.29
제주대학교병원	102,645	105,027	105,882	100,255	101,904	1,649	△0.18
경북대학교치과병원	98,502	102,063	103,830	107,733	110,335	2,602	2.88
전체 평균	159,452	161,286	163,566	161,860	161,863	3	0.3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음
 -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지증진))으로 구분하여 평가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가중치 및 세부지표는 정책목표 달성 및 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라 조정
 - 각 평가 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됨

[평가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사회적 책임, 재무성과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¹⁾
 - 2022년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개편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바탕으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 대상 변경²⁾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기관평가의 대상이 되는 87개 기관(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 중 감사평가는 59개 기관 대상(상임 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23년도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

- 2022년도 평가 대상기관 13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에서 2023년도 평가 대상기관 8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로 43개 감소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2023년)]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공기업 (32)	SOC(8)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에너지(12)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진흥·서비스(12)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55)	기금관리형(10)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 형 (45)	SOC·안전(14)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진흥(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복지증진(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신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p.10

2) 변경된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중소형으로 평가 받았던 기관들이 대부분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2023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탁월(S) 없음, 우수(A) 15개(17.2%), 양호(B) 30개(34.5%), 보통(C) 29개(33.3%), 미흡(D) 11개(12.6%), 아주미흡(E) 2개(2.3%)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2019~2023년)]

(단위: 개)

구분	기관수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공기업	2019	36	-	6	14	13	3	-
	2020	36	-	6	16	10	3	1
	2021	36	1	8	9	13	4	1
	2022	36	-	5	13	12	5	1
	2023	32	-	6	10	11	4	1
준정부기관	2019	50	-	10	21	12	6	1
	2020	54	-	11	18	18	6	1
	2021	57	-	10	22	17	6	2
	2022	57	-	7	23	21	4	2
	2023	55	-	9	20	18	7	1

주: 2023년 평가부터는 변경된 공공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 수 감소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 2023년 평가대상 32개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은 6개, 양호(B) 등급은 10개, 보통(C) 등급은 11개, 미흡(D) 등급은 4개, 아주미흡(E) 등급은 1개 기관

[2023년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기업]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공기업 (32)	탁월(S)	-
	우수(A) (6)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양호(B) (10)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공단
	보통(C) (11)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미흡(D) (4)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아주미흡(E)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 2023년 평가대상 55개 준정부기관 중 우수(A) 등급은 9개, 양호(B) 등급은 20개, 보통(C) 등급은 18개, 미흡(D) 등급은 7개, 아주미흡(E) 등급은 1개 기관

[2023년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 준정부기관]

(단위: 개)

구분		기관명
준정부 기관 (55)	탁월(S)	-
	우수(A) (9)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
	양호(B)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통(C) (18)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흡(D) (7)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주미흡(E) (1)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경영실적 미흡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관장 해임건의 및 경고 등이 있음
 - 평가 결과가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 중 2023년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이상 기관장 1명(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8월 5일 기관장 해임조치함
 - 미흡(D) 등급 11개 기관 중 2023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 기관장 6명에 대해 경고조치

[경영실적 미흡에 따른 후속조치]

후속 조치사항	경영실적 미흡		후속조치 대상기관
	등급	경영실적 미흡 기관	
기관장 해임건의	아주미흡(E)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2년 연속 미흡(D)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관장 경고	미흡(D)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제작성

-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 등에 대한 성과급 삭감 등 추가조치가 있음
 - 재무위험기관(14개) 중 2023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100% 삭감
 - 20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적자 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50% 삭감³⁾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

후속 조치사항	추가 조치 기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삭감(100%)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는 D등급으로 감사만 해당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삭감(50%)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제작성

3) 발전자회사 지분을 한전이 100% 소유하며, 발전자회사의 발전 전기를 한전이 100% 구매, 구매가격에 따른 손익을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분담함

-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및 안전관련 개선계획 제출이 있음
 -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8명에 대한 경고조치 및 안전관련 개선계획 제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

후속 조치사항	추가 조치 기관
기관장 경고조치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안전관련개선계획 제출	위 8개 기관 및 국가철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황

- 금융공공기관¹⁾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16개 금융공공기관²⁾에서 741.4조원의 융자(대출) 잔액 및 935.4조원의 보증 잔액, 104.2조원의 보험잔액, 그리고 87.4조원의 투자잔액 등 총 1,868.4조원의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을 보유
- 금융공공기관의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은 2020년 1,468.6조원, 2021년 1,641.2조원, 2022년 1,782.4조원 및 2023년 1,868.4조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2023년 기준으로 총 잔액의 50.1%인 935.4조원은 보증 잔액이며, 39.7%인 741.4조원은 융자(대출) 잔액으로, 정책금융의 대부분은 보증 및 융자(대출)를 통해 공급되고 있음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별도로 금융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며, 본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금융 업무를 주요 업무로(전체 사업비의 80% 이상) 하는 공공기관을 금융공공기관으로 분류함.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임
- 2) 18개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부 위탁자산을 해외투자로 운용하므로 정책금융 공급과는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보 예금 금액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체 예금으로, 상기의 정책금융 공급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음

[금융공공기관의 각 연도별 용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8 (a)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용자(대출)	515.9	542.5	608.4	659.0	708.0	741.4	(39.7)	225.5	43.7
(전년대비 증감률)	-	(5.2)	(12.1)	(8.3)	(7.4)	(4.7)	-	-	-
보증	595.0	628.6	713.1	816.5	902.4	935.4	(50.1)	340.4	57.2
(전년대비 증감률)	-	(5.6)	(13.4)	(14.5)	(10.5)	(3.7)	-	-	-
보험	74.8	77.6	76.4	83.3	89.5	104.2	(5.6)	29.4	39.3
(전년대비 증감률)	-	(3.7)	(△1.5)	(9.0)	(7.4)	(16.4)	-	-	-
투자	56.9	59.0	70.7	82.4	82.5	87.4	(4.7)	30.5	53.6
(전년대비 증감률)	-	(3.7)	(19.8)	(16.5)	(0.1)	(5.9)	-	-	-
합계	1,242.6	1,307.7	1,468.6	1,641.2	1,782.4	1,868.4	(100.0)	625.8	50.4
(전년대비 증감률)	-	(5.2)	(12.3)	(11.8)	(8.6)	(4.8)	-	-	-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상기 각 연도별 잔액 집계액 산정 시, 금융공공기관 대출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이 보증한 일부 중복 금액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말 금융공공기관의 용자(대출) 잔액은 741.4조원이며, 2018년 대비 225.5조원(43.7%) 증가함

- 동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행의 증가 금액이 94.1조원(48.8%)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용자 잔액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용자(대출) 잔액 286.8조원은 전체 용자(대출)잔액 741.4조원의 38.7%의 비중을 차지
- 2023년 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용자(대출) 잔액이 179.7조원이며, 이는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바탕으로 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담보대출 금액임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용자(대출)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8 (a)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용자(대출)잔액 합계	515.9	542.5	608.4	659.0	708.0	741.4	100.0	225.5	43.7
중소기업은행	192.7	206.0	233.5	254.0	272.9	286.8	38.7	94.1	48.8
한국주택금융공사	116.2	122.2	140.4	151.7	156.0	179.7	24.2	63.5	54.6
한국산업은행	115.8	120.8	134.9	146.9	162.0	160.7	21.7	44.9	38.8
한국수출입은행	69.6	70.7	72.4	77.6	86.6	83.6	11.3	14.0	2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	16.6	19.4	21.9	24.0	24.5	3.3	8.7	55.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7	5.2	6.8	6.0	5.6	5.2	0.7	0.5	10.6
서민금융진흥원	0.8	0.8	0.8	0.7	0.7	0.8	0.1	0.0	0.0
주택도시보증공사	0.3	0.2	0.2	0.2	0.2	0.1	0.0	△0.2	△66.7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용자잔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사업등록업자에게 용자한 용자금으로, 1999년 전환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용자금은 상환받고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잔액은 935.4조원이며, 이 중 60.6%인 566.4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잔액임

- 2018~2023년간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잔액은 340.4조원(57.2%) 증가하였으며, 증가금액의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199.6조원, 54.4% 증가)에서 발생³⁾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23년 보증 잔액이 140.7조원으로, 대부분 주택 신용보증⁴⁾과 주택연금보증⁵⁾의 금융성 보증 금액임
-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95.7조원), 한국수출입은행(43.1조원), 기술보증기금(28.3조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23.8조원) 등에서 보증을 통해 정책금융을 제공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연도말 보증잔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공급된 전세대출특약보증은 통계 목적을 위해 중복계상으로 보증잔액에서 제외함

4) 주택신용보증은 주택수요자 또는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구입, 임차, 건설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을 말함

5) 주택연금보증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보증임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보증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8 (a)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보증잔액 합계	595.0	628.6	713.1	816.5	902.4	935.4	100.0	340.4	57.2
주택도시보증공사	366.8	384.6	426.8	494.9	549.9	566.4	60.6	199.6	54.4
한국주택금융공사	80.9	94.2	111.0	123.3	131.5	140.7	15.0	59.8	73.9
신용보증기금	61.1	63.4	78.6	91.3	96.2	95.7	10.2	34.6	56.6
한국수출입은행	34.8	32.3	28.0	30.1	39.4	43.1	4.6	8.3	23.9
기술보증기금	22.4	22.1	25.7	26.5	26.7	28.3	3.0	5.9	26.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1	11.4	21.2	22.9	24.9	23.8	2.5	13.7	135.6
한국산업은행	8.6	8.8	8.3	11.4	14.2	15.8	1.7	7.2	83.7
서민금융진흥원	4.0	4.9	5.9	6.6	8.9	9.8	1.0	5.8	145.0
중소기업은행	3.9	3.8	3.6	4.3	5.2	6.2	0.7	2.3	59.0
한국해양진흥공사	0.6	1.4	1.9	2.9	2.9	3.0	0.3	2.4	400.0
한국무역보험공사	1.8	1.7	2.1	2.3	2.4	2.4	0.3	0.6	33.3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	-	-	-	0.2	0.2	0.0	-	-

주: 1. 각 연도 말의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연도말 보증잔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공급된 전세대출특약보증은 중복계상으로 보증잔액에서 제외하였음

3.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설립되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2018년 7월 설립됨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잔액은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재보증 잔액임

5.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잔액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공급 중인 상품(햇살론 15 등)의 보증잔액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보험 업무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보험 잔액은 104.2조원으로, 이의 대부분(94.5%)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생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잔액은 2018년 70.1조원에서 2023년 98.5조원으로 28.4조원(40.5%) 증가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보험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8 (a)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보험잔액 합계	74.8	77.6	76.4	83.3	89.5	104.2	100.0	29.4	39.3
한국무역보험공사	70.1	72.6	71.3	78.1	84.1	98.5	94.5	28.4	40.5
신용보증기금	4.7	5.0	5.1	5.2	5.4	5.7	5.5	1.0	21.3

주: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 잔액은 87.4조원임

- 이의 대부분은 한국산업은행(76.7%)에서의 투자금액으로, 한국산업은행의 2023년도 말 투자잔액은 67.0조원임⁶⁾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투자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8 (a)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투자잔액 합계	56.9	59.0	70.7	82.4	82.5	87.4	100.0	30.5	53.6
한국산업은행	48.8	48.2	57.1	66.2	64.4	67.0	76.7	18.2	37.3
한국벤처투자	4.0	4.5	5.8	7.3	8.2	8.9	10.2	4.9	122.5
중소기업은행	2.3	2.7	3.2	3.7	4.9	5.5	6.3	3.2	139.1
한국해양진흥공사	1.1	2.7	3.5	3.8	3.4	4.3	4.9	3.2	290.9
한국수출입은행	0.3	0.3	0.5	0.6	0.6	0.6	0.7	0.3	100.0
신용보증기금	0.1	0.2	0.2	0.3	0.3	0.3	0.3	0.2	200.0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0.1	0.2	0.2	0.3	0.5	0.5	0.6	0.4	400.0
기술보증기금	0.2	0.2	0.2	0.2	0.2	0.3	0.3	0.1	50.0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한국벤처투자의 투자잔액은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의 각 연도 말 평균금액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6) 상기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잔액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투자잔액 16.9조원(2023년 말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보증 관련 금융공공기관은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⁷⁾
 - 2023년 기준으로 총 잔액의 50.1%인 935.4조원은 보증 잔액이며, 39.7%인 741.4조원은 용자(대출) 잔액
 - 보증은 자산 보유 비중이 낮아 관리 등의 부담이 적고, 향후 손실이 예상되는 우발채무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만 보유하면 되므로, 공급 가능한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큼
 - 해당 레버리지로 인해 금융 위기 등으로 손실 등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 규모 또한 클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공급액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 존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모는 2018~202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4.7조원을 출자함
 - 2018년 대비 2023년 보증 규모 199.6조원(54.4%) 증가
 - 특히 2023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가 급증함
 -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공급총액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음⁸⁾
 -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함

7) 국회예산정책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2022.6., pp.65~66

8) 의안번호 22015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24.7.9.

가. 현 황

-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법에 근거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며,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10개 부처 35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개
 - 준정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개
 -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2개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개수
공기업 (17)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1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6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1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8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준정부기관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
기타공공기관 (12)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5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주식회사	1
합계			3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정부출자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41조 1,144억원)이며, 한국도로공사(34조 9,194억원), 한국산업은행(26조 3,166억원), 한국수출입은행(12조 8,878억원) 순임

[정부출자액 상위 10개 공공기관]

(단위: 억원)

순위	공공기관명	출자액	순위	공공기관명	출자액
1	한국토지주택공사	411,144	6	한국석유공사	108,464
2	한국도로공사	349,194	7	한국수자원공사	103,657
3	한국산업은행	263,166	8	주택도시보증공사	69,621
4	한국수출입은행	128,878	9	인천국제공항공사	37,294
5	한국철도공사	109,560	10	한국자산관리공사	29,757

주: 2024년 7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2024년 7월 말 기준 정부 출자금은 총 182조 5,185억원이며,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에 102조 1,058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에 33조 4,069억원 등이 출자되었음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41조 1,144억원), 한국도로공사(34조 9,194억원), 한국철도공사(10조 9,560억원)에 대한 출자가 대부분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중 한국석유공사(10조 8,464억원)가,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 중 부산항만공사(2조 8,790억원)가 정부출자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음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이 26조 3,166억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았으며,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12조 8,878억원의 정부출자를 받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 5,159억원, 환경부 소관 한국수자원공사가 10조 3,657억원의 정부출자를 받고 있음

[부처별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국토교통부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	487,010	411,144	84.4
	2	한국도로공사	440,158	349,194	79.3
	3	한국철도공사	109,560	109,560	100.0
	4	인천국제공항공사	37,294	37,294	100.0
	5	한국공항공사	23,578	22,541	95.6
	6	주택도시보증공사	84,151	69,621	89.2
	7	한국부동산원	90	44	49.4
	8	주식회사 에스알	6,090	3,590	58.9
	9	새만금개발공사	14,970	14,970	100.0
	1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986	3,100	62.2
		소계		1,207,887	1,021,058
산업통상자원부 (7)	11	한국석유공사	108,464	108,464	100.0
	12	한국광해광업공단	23,378	23,351	99.9
	13	한국전력공사	32,098	5,842	18.2
	14	한국가스공사	4,616	1,207	26.2
	15	대한석탄공사	1,511	1,511	100.0
	16	한국지역난방공사	579	200	34.5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0	550	100.0
		소계		171,196	141,125
해양수산부 (5)	18	부산항만공사	32,975	28,790	87.3
	19	인천항만공사	20,677	16,680	80.7
	20	여수광양항만공사	15,523	11,053	71.2
	21	울산항만공사	4,405	3,846	87.3
	22	한국해양진흥공사	31,339	15,923	50.8
		소계		104,919	76,292
금융위원회 (4)	23	한국산업은행	263,166	263,166	100.0
	24	중소기업은행	42,114	23,722	59.5
	25	한국주택금융공사	27,374	17,424	63.7
	26	한국자산관리공사	33,469	29,757	88.9
		소계		366,123	334,069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기획재정부 (3)	27	한국조폐공사	66	66	100.0
	28	한국수출입은행	168,733	128,878	76.4
	29	한국투자공사	1,000	1,000	100.0
	소계		169,799	129,944	76.5
농림축산식품부 (2)	30	한국농어촌공사	15,159	15,159	100.0
	3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83	683	100.0
	소계		15,842	15,842	100.0
문화체육관광부(1)	32	한국관광공사	324	179	55.2
환경부(1)	33	한국수자원공사	109,741	103,657	94.5
방송통신위원회(1)	3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100.0
국가보훈부(1)	35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100.0
전체 합계(35)			2,148,849	1,825,185	84.9

주: 2024년 7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4년 7월 말 기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 182조 5,185억원 중 공기업에 대한 출자액이 125조 286억원으로 68.5%를 차지하고 있음
 - 은행형 공공기관, 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이 51조 1,146억원(28.0%)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 구성된 준정부기관에 대한 출자액이 6조 3,753억원으로 3.4%를 차지함
-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금액은 2023년 말 대비 8조 6,594억원 증가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출자액이 2023년 말 대비 4조 7,000억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액이 2조 3,9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액이 2조 1,000억원 증가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현금 0.7조원, 현물(한국도로공사 주식) 4.0조원
 - 한국산업은행 현금 0.39조원, 현물(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2.0조원
 - 한국수출입은행 현금 0.1조원, 현물(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2.0조원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출자 규모]

(단위: 억원, %, %p)

유형	납입자본금(A)			정부출자금액(B)			비중(B/A)		
	2023	2024.7.	증감	2023	2024.7.	증감	2023	2024.7.	증감
공기업	1,378,513	1,471,383 (68.5)	92,870	1,212,703	1,250,286 (68.5)	37,583	88.0	85.0	△3.0
준정부기관	73,949	77,560 (3.6)	3,611	60,142	63,753 (3.5)	3,611	81.3	82.2	0.9
기타공공기관	554,507	599,907 (27.9)	45,400	465,746	511,146 (28.0)	45,400	84.0	85.2	1.2
합계	2,006,969	2,148,850	141,881	1,738,591	1,825,185	86,594	86.6	84.9	△1.7

주: 1. 2024년 7월 31일 기준임

2. 괄호 안은 전체 금액 대비 공공기관 유형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정부출자 공공기관 35개 중 16개 기관이 2023년 정부배당을 실시했고, 배당액은 2조 1,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8,933억원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배당액은 8조 6,500억원임
 - 배당액 증가는 한국산업은행의 에이치엠엠(주) 지분 손상차손 환입과 한국전력공사 지분 평가손실 감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수요 회복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임
 - 최근 5년간 배당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2조 1,97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2조 774억원), 중소기업은행(1조 6,794억원) 순으로 많음
 - 2023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대한석탄공사)은 최근 5년간 배당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정부배당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한국토지주택공사	3,920	5,845	7,441	2,625	943	20,774
중소기업은행	1,662	2,208	3,701	4,555	4,668	16,794
한국산업은행	1,120	2,096	8,331	1,647	8,781	21,975
한국주택금융공사	0	425	451	292	0	1,168
한국수출입은행	724	277	1,315	932	1,847	5,095
한국가스공사	92	0	659	0	0	751
한국공항공사	404	0	0	0	0	404
부산항만공사	201	238	183	162	176	960
한국자산관리공사	139	142	159	272	362	1,074
울산항만공사	107	77	119	127	185	615
인천항만공사	21	213	0	27	0	2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25	15	28	30	109
한국조폐공사	39	0	0	21	33	9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	2	4	22	26	67
한국부동산원	13	10	16	22	37	98
한국농어촌공사	165	9	130	112	35	451
한국전력공사	0	1,421	0	0	0	1,421
한국관광공사	0	0	0	0	0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	0	0	0	0	0
한국수자원공사	0	0	0	619	451	1,070
한국석유공사	0	0	0	0	0	0
한국광해광업공단	0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0	0	0	0	0	0
여수광양항만공사	0	0	0	0	0	0
한국해양진흥공사	0	0	0	0	0	0
새만금개발공사	0	0	0	0	0	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0	0	0	0	0	0
한국도로공사	334	120	134	248	519	1,355
인천국제공항공사	3,994	0	0	0	2,248	6,242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주택도시보증공사	707	616	621	0	0	1,944
한국투자공사	367	580	1,176	641	944	3,708
88관광개발주식회사	0	0.2	0	0	0	0
한국지역난방공사	0	39	32	0	0	71
대한석탄공사	0	0	0	0	0	0
주식회사 에스알	0	0	0	0	0	0
합계	14,033	14,343	24,487	12,352	21,285	86,500

- 주: 1.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이며, 실제 배당금 납입은 익년도에 발생
 2. 주식회사 에스알은 2023년에 신규 출자함
 3.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위 2019~2020년간의 정부배당액은 기존의 출자기관이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정부 배당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2023년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41.72%이며,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에는 한국투자공사가 배당성향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항만공사 58.0%, 부산항만공사 57.9% 순임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배당성향(2019~2023)]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토지주택공사	20.00	20.00	20.00	20.00	19.90
중소기업은행	22.88	29.52	30.73	31.19	32.54
한국산업은행	25.12	43.00	33.84	35.43	35.00
한국주택금융공사	-	33.46	32.90	35.00	-
한국수출입은행	36.16	39.80	34.93	35.00	35.00
한국가스공사	40.80	-	39.38	-	-
한국공항공사	39.97	-	-	-	-
부산항만공사	38.50	59.80	48.90	45.90	57.90
한국자산관리공사	38.93	39.97	41.57	39.77	37.43
울산항만공사	41.01	59.90	48.90	46.00	58.00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천항만공사	20.79	30.00	-	34.8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40.00	39.45	27.00	23.08
한국조폐공사	40.75	-	-	42.00	52.3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0.67	40.00	40.00	40.00	46.32
한국부동산원	42.16	40.02	37.71	41.44	45.14
한국농어촌공사	38.95	10.30	37.60	50.37	13.81
한국전력공사	-	40.00	-	-	-
한국관광공사	-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15.79	15.89
한국석유공사	-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
한국철도공사	-	-	-	-	-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새만금개발공사	-	-	-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	-	-
한국도로공사	38.99	44.47	50.06	48.73	49.42
인천국제공항공사	46.12	-	-	-	45.75
주택도시보증공사	21.81	24.99	20.03	-	-
한국투자공사	60.00	60.00	70.00	80.00	100.00
88관광개발주식회사	-	59.65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40.00	43.00	-	-
대한석탄공사	-	-	-	-	-
주식회사 에스알	-	-	-	-	-
평균 배당성향	35.45	39.73	39.35	39.32	41.72

- 주: 1.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이며, 실제 배당금 납입은 익년도에 발생
 2. 주식회사 에스알은 2023년에 신규 출자함
 3.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위 2019~2020년간의 정부배당액은 기존의 출자기관이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정부 배당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분야별 주제





재무 분야

가. 현황

-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은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를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 계획은 다음과 같음
 - 기능 분야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은 축소하고, 비핵심 업무나 수요 감소 기능 역시 축소하며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경우 통·폐합을 통하여 일원화하거나 축소
 - 조직·인력 분야에서는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하여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
 - 예산 효율화의 경우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 복리후생 분야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자산 효율화를 위하여 비핵심부동산 매각 및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리, 과도한 청사 및 사무실 등을 정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추진방향]

(추진방향) 5대 분야 중점 효율화	
○ (기능 축소 및 조직·인력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축소 ②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기능 축소 ③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축소 ④ 기능조정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며, 정·현원차 최소화 및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한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 (예산)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함
○ (복리후생)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 점검 및 합리적으로 조정
○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정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 정비

자료: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 현황

- 총 291개 공공기관의 2023년 1분기 이행률은 96.8%로 전체 조정규모계획 △11,072명 중 △10,721명을 조정함
- 2023년 4분기 이행률은 102.7%이며, 총 △11,374명의 정원을 감축함

[2023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실적 현황]

(단위: 명, %)

2023년 계획	2023년 1분기		2023년 4분기	
	이행	이행률	이행	이행률
△11,072	△10,721	96.8	△11,374	102.7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혁신계획 '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2023.4.19. 및 「2023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2024.2.2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예산 효율화 이행 현황

- 2022년은 경상경비 0.7조원 절감 목표액 중 0.8조원을 절감하여 계획 대비 114% 이행
- 2023년엔 경상경비 0.4조원 절감 목표액 중 0.7조원을 절감하여 계획 대비 175% 이행

[2023년 예산 효율화 이행 현황(경상경비)]

(단위: 조원, %)

연도	계획(A)	이행(B)	달성률(B/A)
2022	△0.7	△0.8	114
2023	△0.4	△0.7	17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복리후생 이행 현황

- 2023년 4분기 기준 전체 계획 636건 중 478건을 개선하여 75.2%의 이행을 달성

[2023년 복리후생 개선 이행 현황]

(단위: 건, %)

2023년 계획	2023년 1분기		2023년 4분기	
	이행	이행률	이행	이행률
636	327	51.4	478	75.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혁신계획 '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2023.4.19 및 「2023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2024.2.2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자산 효율화 이행 현황

- 2023년 계획 대비 실제 이행금액은 39.1%로 이행이 저조함

[2023년 자산효율화 이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계획금액		이행수준	
	2022~2023 (A)	2022~2027	이행금액 (B)	이행률 (B/A)
비핵심 부동산·불요불급한 자산 ·출자회사 지분 합계	67,318.3	142,947.9	26,302.8	39.1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청사 효율화 실적은 2023년 4분기 기준 108개 사무실 효율화 계획 중 82개 사무실을 정비하였으며 임원사무실의 경우 총 282개 중 279개를 축소 완료

[2023년 청사 효율화 이행 현황]

(단위: 개, %)

정비 형태	2023년 계획	2023년 1분기		2023년 4분기	
		이행	이행률	이행	이행률
임대료수익 및 임대료 절감	108	46	42.6	82	75.9
임원사무실 축소	282	170	60.3	279	98.9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혁신계획 '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2023.4.19. 및 「2023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2024.2.2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률 중 자산 효율화 이행률이 저조함

- 2023년까지 비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기타 자산, 비핵심 출자회사의 지분 등 6조 7,318억원 자산을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제 이행금액은 2조 6,303억원으로 2023년 계획 대비 39.1%의 이행률로 이행이 저조한 상황임
- 비핵심 부동산 이행률은 36.8%로 타 부문에 비해 이행률이 저조함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총괄)]

(단위: 억원, %)

구분		2022~2023년			전체계획금액 (~2027년)
		계획금액 (A)	이행금액 (B)	이행률 (B/A)	
자산매각	비핵심 부동산	50,391	18,529	36.8	114,274
	불요불급한 자산	4,300	1,871	43.5	7,218
출자회사 지분		12,627	5,903	46.7	21,456
합계		67,318	26,303	39.1	142,948

주: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 중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실적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획재정부와 혁신계획 수립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전부터 매각을 시도하거나 계획하였으나 입찰수요 부진 또는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매각이 원활하지 못했던 자산을 혁신계획에 포함하여 실효성 없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06년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2010년 매각이 결정된 이후 2012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되는 등 2024년 8월까지 매각 미이행
- 공무원연금공단의 영종도 부지와 속초 설악 후생부지는 각각 2007년, 1984년 취득 이후 지속적 매각 시도에도 유찰되어 2024년 8월까지 보유 중
- 한국교육개발원은 2010년 이후 구청사 매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유찰 및 매매계약 해지로 2024년 8월까지 보유

[2024년 8월까지 자산매각 계획 미이행 주요 기관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3		미매각사유
	계획금액	이행률	
한국철도공사	39,294	18.0	용산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지연(2006)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2,380	0.1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지연 (2012)
공무원연금공단	825	5.9	영종도 부지(2007), 속초 설악(1984) 후생부지 등 매각 유찰
한국교육개발원	822.5	0.0	토지 규제로 인한 구청사 매각 지연(2010)
합계	43,322	16.4	-

주: 합계 이행률은 4개 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합계 이행률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황

-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기관 설립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기관을 말함
 -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 2023년 12월 말 설립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이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15개 기관
 -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보전(보상)한다”라고 규정한 의무적 손실보전 조항과 “정부가 보전(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의적 손실보전 조항으로 나뉠 수 있음
 - 정부의 손실보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도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9개 기관
 - 정부가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두고 있는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6개 기관

[공공기관별 손실보전 관련 법률내용]

의무 여부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의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45조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제4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36조제2항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1조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정한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제1항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의무 여부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입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은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법」 제29조제3항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제2항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주: 1)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설립되었으며, 2021년 1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각 기관 설립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을 두고 있는 12개 기관¹⁾의 2023년 당기순손익 규모는 총 △3조 9,568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4조 3,745억원 감소
 - 2023년의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손익은 △3조 2,452억원으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손익보다 7,116억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2023년 당기순이익 증감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6조 3,154억원이 감소했으며,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4조 2,434억원 감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1조 7,289억원 감소)에서 당기순이익이 감소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2023년 전세 임대 보증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위변제가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매수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데, 부동산시장 경기 악화로 인한 토지 매수자의 잔금 납부 연체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
 - 2022년 대비 2023년 당기순이익 증감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4조 3,745억원이 감소했으며,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3조 4,511억원 감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9,169억원 감소)에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함

1) 3개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분석에서 제외함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2019~2023년 당기순이익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B)	2023(C)	증감(C-A)	증감(C-B)
기술보증기금	△1,078	△184	4,511	3,869	△33	1,045	△3,9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4	63	37	102	131	77	29
대한석탄공사	△1,221	△1,099	△1,325	△1,673	△2,483	△1,262	△810
신용보증기금	468	△3,300	3,702	7,829	6,711	6,243	△1,11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14	△2,665	665	△231	△6,745	△4,331	△6,514
주택도시보증공사	3,836	2,918	3,620	△4,087	△38,598	△42,434	△34,511
한국광해광업공단	△5,081	△14,643	2,765	△181	△3,120	1,961	△2,939
한국무역보험공사	2,987	△1,155	2,989	3,722	2,624	△363	△1,098
한국장학재단	△263	33	516	645	500	763	△145
한국주택금융공사	5,525	△1,651	6,088	△282	△3,755	△9,280	△3,473
한국토지주택공사	22,447	33,029	41,633	14,327	5,158	△17,289	△9,169
한국해양진흥공사	△1,674	26,069	41,875	△19,863	42	1,716	19,905
합계(A)	23,586	37,415	107,076	4,177	△39,568	△63,154	△43,745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B)	7,636	51,668	107,787	△140,315	△32,452	△40,088	107,863

- 주: 1.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에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제외되어 있음
2. 2023년 IFRS17이 적용되어 2019년과 2023년 간에 회계기준이 상이한 기관들이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분석함
3.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2021년 이전 자료는 (구)한국광해관리공단과 (구)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합계액, 2021년은 3개 기관(1.1~9.9: (구)한국광해관리공단, (구)한국광물자원공사/ 9.10~12.31: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합계액임
4. 각 공공기관의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자산·부채를 합산한 공시 기준(Agreed Upon Procedure)(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당기순이익의 경우 재정운용순원가 기준이며 부담금수익(금융기관출연금) 미반영)
6.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만 포함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공공기관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편, 2023년 말 기준으로 손실보전조항을 두고 있는 12개 기관²⁾ 중 5개 기관의 이익잉여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및 잉여금)은 결손을 나타내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6조 9,243억원), 대한석탄공사(△1조 7,276억원), 신용보증기금(△5조 2,80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1조 4,179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3조 9,774억원)
 -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4개 기관은 2023년에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결손금 확대
 - 정부는 상기 결손금 발생 5개 기관에 대하여 최근 5년(2019~2023년)간 출자, 출연, 보조금 등을 통해 총 8조 3,486억원을 지원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 현황(2021~2023)]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A)	2023(B)	증감(B-A)
기술보증기금	△74,399	△69,210	△69,243	△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64	450	451	1
대한석탄공사	△13,346	△14,863	△17,276	△2,413
신용보증기금	△77,833	△60,353	△52,805	7,54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2,930	27,382	23,560	△3,822
주택도시보증공사	34,767	24,411	△14,179	△38,590
한국광해광업공단	△37,563	△37,160	△39,774	△2,614
한국무역보험공사	12,020	16,694	19,858	3,164
한국장학재단	8,313	8,957	9,458	501
한국주택금융공사	77,143	84,807	92,146	7,339
한국토지주택공사	227,427	233,670	235,624	1,954
한국해양진흥공사	63,888	44,023	44,065	42
합계	243,611	258,808	231,885	△26,923

- 주: 1. 2023년 IFRS17이 적용되어 2021년과 2023년 간에 회계기준이 상이한 기관들이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분석함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이전 자료는 (구)한국광해관리공단과 (구)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합계액임
3. 각 공공기관의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자산·부채를 합산한 공시 기준(Agreed Upon Procedure)(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당기순이익의 경우 재정운용순원가 기준이며 부담금수익(금융기관출연금) 미반영)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만 포함함

자료: 공공기관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3개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분석에서 제외함

- 각 기관 설립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규정된 12개 기관³⁾의 2023년 말 총 부채 규모는 242조 6,428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0조 1,718억원이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
-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2023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2023년간 약 33~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대비 2023년 부채 증감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62조 1,376억원이 증가했고,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1개 기관에서 부채가 증가했으며, 주로 보증·보험형 기관에서 주로 부채가 증가함
 - 기술보증기금의 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총당성 부채가 대부분이며, 2020년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감소하다 2023년 보증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 부채가 증가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융자사업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액이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특별만기연장,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정책에 따라 채권 발행액이 증가하여 부채가 증가하였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2022년 이후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해 대위변제액이 증가하여 보증부채가 증가함
 - 2022년 대비 2023년 부채 증감을 비교해보면, 2개 기관⁴⁾을 제외한 10개 기관에서 부채가 증가
 -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11조 2,797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6조 2,301억원)에서 부채가 증가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증자리론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주택건설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함

3) 3개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분석에서 제외함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2019~2023년 부채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B)	2023 (C)	증감 (C-A)	증감 (C-B)
기술보증기금	12,784	14,207	13,481	12,793	14,100	1,316	1,30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44	1,369	1,504	1,352	1,267	23	△85
대한석탄공사	19,813	21,010	22,628	23,917	25,020	5,207	1,103
신용보증기금	27,412	37,673	40,319	38,598	35,363	7,951	△3,2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3,328	194,986	220,346	240,391	245,139	81,811	4,748
주택도시보증공사	18,683	18,721	17,600	19,769	24,541	5,858	4,772
한국광해광업공단	68,017	71,066	72,642	74,494	80,120	12,103	5,626
한국무역보험공사	21,480	25,052	22,945	20,914	28,010	6,530	7,096
한국장학재단	111,959	107,638	103,464	100,045	101,623	△10,336	1,578
한국주택금융공사	72,837	81,244	106,914	182,327	295,124	222,287	112,797
한국토지주택공사	1,266,800	1,297,451	1,388,884	1,466,172	1,528,473	261,673	62,301
한국해양진흥공사	20,695	38,615	58,451	43,938	47,648	26,953	3,710
합계(A)	1,805,052	1,909,032	2,069,178	2,224,710	2,426,428	621,376	201,718
전체 공공기관 부채(B)	5,246,005	5,418,317	5,843,454	6,709,497	7,089,539	1,843,534	380,042
(비중)(A/B)	(34.4)	(35.2)	(35.4)	(33.2)	(34.2)	(33.7)	(53.1)

- 주: 1.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부채가 제외되어 있음
 2. 2023년 IFRS17이 적용되어 2019년과 2023년 간에 회계기준이 상이한 기관들이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분석함
 3.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이전 자료는 (구)한국광해관리공단과 (구)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합계액임
 4. 각 공공기관의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자산·부채를 합산한 공시 기준(Agreed Upon Procedure)(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당기순이익의 경우 재정운용순원가 기준이며 부담금수익(금융기관출연금) 미반영)
 6.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만 포함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공공기관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됨

□ 경영실적이 부진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수익성 개선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및 부채 증가, 결손금 시현 등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가. 현 황

-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 함)은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 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
- 수지차 보전기관의 예산을 구성하는 항목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지출예산,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사업수입 및 기관의 사업수행과는 관련 없이 발생하는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이 있음

[수지차 보전기관(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구분		내용	
지출	인건비		인건비
	경상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사업비		사업비
	결산잉여금		전 회계연도 수입에서 지출액 뺀 나머지 금액
	지출 계(A)		
수입	자체 수입	사업수입	검사료, 교육수수료, 연구개발 수입 등 기관 고유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
		사업외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기관의 사업수행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수입
	수입 계(B)		
정부지원(수지차) 예산(A-B)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023년 수지차 보전기관은 62개 기관이며, 이 중 공공기관은 57개로, 출연기관은 36개, 보조기관은 21개 기관임¹⁾²⁾

[2023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수	기관명
출연	37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동북아역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안전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조	25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독립기념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무역안보관리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입업진흥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합계	62	-

주: 1.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보조사업폐지로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제외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3년 해산된 재외동포재단은 제외함

2.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8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한국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1) 공공기관이 아닌 수지차 보전기관(5개)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임

2)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보조사업폐지로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제외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한국 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3년 해산된 재외동포재단은 제외함

- 수지차 보전기관의 출연·보조 세부사업의 2023년도 총예산은 3조 8,965억 4,6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2,804억 6,400만원 증가
 - 2023년 출연예산은 전년 대비 2,445억 6,900만원 증가한 3조 1,011억 100만원, 보조예산은 전년 대비 358억 9,500만원 증가한 7,954억 4,500만원임

[2023년도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 예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관수	2022		2023		증감 (b-a)
		예산(a)	결산	예산(b)	결산	
출연	36	2,856,532	2,782,235	3,101,101	3,045,656	244,569
보조	21	759,550	769,211	795,445	794,865	35,895
합계	57	3,616,082	3,551,446	3,896,546	3,840,521	280,464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나. 주요 쟁점

-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의 자체사업수입³⁾ 및 지출 계획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함
 - 수지차 보전기관의 정부예산 편성은 기관의 지출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의 차감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체수입 및 지출을 정확하게 계획하는 것이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함
 - 자체사업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을 과다하게 계획할 경우 정부지원예산(수지차 예산인 출연·보조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이어져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 발생
 - 자체수입을 과소하게 계획할 경우 정부지원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이어져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함

3) 자체수입에서 자체사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결산 기준 87.3%로 자체사업 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봄

- 2021년에서 2023년 동안 연례적으로 자체사업수입을 과다 편성한 기관은 10개, 과소 편성한 기관은 2개, 지출 계획을 과다편성한 기관은 1개 기관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우 2023년 자체사업수입의 예결산 편차는 17억 7,400만원으로, 실제 자체사업수입 실적보다 예산이 239.6% 과다하게 계획되었음⁴⁾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3년 자체사업수입의 예결산편차는 6억 8,500만원으로, 실제 자체사업수입 실적보다 예산이 45.5%로 과소 계획되었음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2023년 지출 예결산편차는 122억 7,300만원으로 수입 예결산편차(71억 3,900만원) 보다 큼에 따라 정부지원예산이 과다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연례적으로 편차 발생

[자체사업수입 및 지출 계획 과다/과소 편성 기관]

(단위: 백만원, %)

구분	기관명	2021	2022	2023	
		예결산편차	예결산편차	예결산편차	
자체사업 수입계획	과다편성	한국임업진흥원	1,730(236.1)	1,634(215.8)	1,774(239.6)
		대한법률구조공단	4,656(110.2)	8,027(122.2)	7,612(120.3)
		전쟁기념사업회	3,970(399.4)	21,334(1,150.4)	1,823(160.9)
		국립생태원	2,783(357.9)	1,309(151.3)	1,258(147.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9(208.9)	44(112.3)	112(138.8)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404(703.0)	337(351.5)	347(379.8)
		학교법인한국폴리텍	3,374(111.4)	4,542(116.1)	5,694(121.7)
		한국고전번역원	28(114.9)	59(137.1)	60(138.5)
		한국소비자원	1,021(158.0)	1,022(176.5)	331(124.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7(19,800.0)	198(-)	197(19,800.0)
	과소편성	한국저작권위원회	△818(62.3)	△762(58.0)	△685(45.5)
무역안보관리원		△42(86.8)	△146(62.2)	△147(70.9)	
지출계획	과다편성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4,473(105.8)	3,954(101.5)	12,273(103.8)

주: ()안은 자체사업수입 계획 대비 실적 %, 지출계획 대비 실적 %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한국임업진흥원은 시험분석수수료가 자체사업수입 재원으로, 수입계획 시 실제 분석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수지차 보전기관 중 자체수입이 저조한 경우 자체사업수익 증가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사유는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 관리가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
- 수지차 보전기관 해제사유는 ①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거나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②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중 해제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해제 기준]

구분	내용
신규지정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 중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
지정해제	①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거나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②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의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 분포 중 10% 미만 공공기관은 2023년 기준 10개 기관임
 - 일부 기관은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5% 미만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2.2%), 한국영상자료원(3.2%), 한국소비자원(4.3%), 한국고전번역원(4.9%),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4.9%)임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기관(2023년)]

(단위: 개)

자체수입 비중	기관명	개수
0% 이상 5% 미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고전번역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영상자료원	6
5% 이상 10% 미만	한국국제협력단 ,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독립기념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11

주: 볼드처리한 기관은 자체사업 수입이 없는 기관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5% 미만인 기관 중 자체사업 수입이 전무한 경우도 존재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국제협력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4개 기관임
 - 향후 위 기관의 자체사업 지속여부 및 사업수익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 공공요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임
 - 위 기관들은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관련됨
-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선정¹⁾한 재무위험기관 14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여 자기자본 대비 타인자본비중이 높은 경우,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투자보수율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는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함

[재무위험기관 중 공공요금 관련 기관]

구분	기관명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5개 발전 자회사(남동, 동서, 남부, 서부, 중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2022.6.30.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2022.6.30.

나. 주요 쟁점

-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은 5개임에도 불구하고, 자산과 부채 수준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39.3%, 45.2%를 차지함
 - 2023년 기준으로 공공요금 관련 기관의 자산 총액은 431조 2,747억원
 - 공공기관 총 자산 1,096조 3,286억원의 39.3%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
 - 2023년 기준 부채 총액은 320조 2,671억원으로, 5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총 부채 708조 9,539억원의 45.2%를 차지함
 - 특히 한국전력공사(연결)와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부채 급증에 기인
 - 2019년 대비 2023년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1.5%p 상승한 데 비해,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117.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3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연결)의 부채비율은 543.3%,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482.7%로, 500%에 가까운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23년의 당기순손실은 5조 4,370억원이며, 2019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2020년을 제외하고 전 기간 당기순손실이 발생
 - 해당 적자규모 또한 2022년까지 연도별로 확대되어 2019년 2조 220억원에서 2021년에는 5조 305억원, 그리고 2022년에는 22조 6,959억원의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후, 2023년에는 5조 4,37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총괄원가보상률은 2019~2023년간 2020년 한국전력공사의 101.3%를 제외하고 모두 100% 미만이며,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하고 2022년 석탄 및 LNG 등 연료가격 상승으로 보상률이 하락함

[총괄원가보상률(2018~2023)]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전력공사	93.1	101.3	86.3	64.2	-
한국가스공사	94.6	94.1	89.3	81.6	72.4
한국수자원공사	93.2	95.5	92.6	79.9	77.5
한국철도공사	84.5	54.3	63.2	78.9	82.8
한국도로공사	91.5	85.1	88.0	81.7	78.0

주: 1.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보상률은 예산 기준이며, '22년 및 '23년 결산 총괄원가는 검증 중임

2. 한국철도공사는 운송부문 전체의 총괄원가보상률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p)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 (b-a)	
자산	전기	한국전력공사	1,975,978	2,031,421	2,111,237	2,348,050	2,397,150	421,172
	가스	한국가스공사	393,119	359,098	436,699	624,250	572,547	179,428
	수도	한국수자원공사	222,548	229,041	234,371	232,257	229,968	7,420
	철도	한국철도공사	226,606	252,765	251,556	290,437	290,664	64,058
	도로	한국도로공사	657,814	691,876	734,021	783,082	822,418	164,604
	합계		3,476,064	3,564,200	3,767,884	4,278,076	4,312,747	836,683
	(비중)		(40.9)	(40.0)	(39.2)	(40.8)	(39.3)	(33.9)
공공기관 전체		8,494,075	8,902,189	9,618,684	10,480,328	10,963,286	2,469,211	
부채	전기	한국전력공사	1,287,081	1,324,753	1,457,970	1,928,047	2,024,502	737,421
	가스	한국가스공사	311,653	281,746	345,506	520,142	474,286	162,633
	수도	한국수자원공사	139,193	138,349	135,473	124,436	115,838	△23,355
	철도	한국철도공사	163,298	180,089	186,608	200,405	204,654	41,356
	도로	한국도로공사	294,536	311,658	332,834	358,300	383,391	88,855
	합계		2,195,762	2,236,596	2,458,390	3,131,330	3,202,671	1,006,909
	(비중)		(41.9)	(41.3)	(42.1)	(46.7)	(45.2)	(54.6)
공공기관 전체		5,246,005	5,418,317	5,843,454	6,709,497	7,089,539	1,843,534	

(단위: 억원, %, %p)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 (b-a)	
부채 비율	전기	한국전력공사	186.8	187.5	223.2	459.1	543.3	356.5
	가스	한국가스공사	382.6	364.2	378.9	499.6	482.7	100.1
	수도	한국수자원공사	167.0	152.5	137.0	115.4	101.5	△65.5
	철도	한국철도공사	257.9	247.8	287.3	222.6	237.9	△20.0
	도로	한국도로공사	81.1	82.0	83.0	84.3	87.3	6.2
	합계		171.5	168.5	187.7	273.1	288.5	117.0
	공공기관 전체		161.5	155.5	154.8	177.9	183.0	21.5
당기 순이익	전기	한국전력공사	△22,635	20,925	△52,156	△244,291	△47,161	△24,526
	가스	한국가스공사	583	△1,607	9,645	14,970	△7,474	△8,057
	수도	한국수자원공사	1,306	3,186	3,421	4,074	3,593	2,287
	철도	한국철도공사	△469	△13,427	△11,552	△2,350	△4,516	△4,047
	도로	한국도로공사	996	275	336	637	1,188	192
	합계		△20,220	9,352	△50,305	△226,959	△54,370	△34,150
	공공기관 전체		7,636	51,668	107,787	△140,315	△32,452	△40,088

주: 1. 각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6개 발전자회사의 재무현황을 포함함

2. 자산 = 부채 + 자본

3. 부채비율 = 부채 ÷ 자본 × 100

4. 공공기관 전체 금액에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이후로 부채비율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임
- 한국가스공사는 별도 기준의 부채비율이 2022년(642.9%) 대비 2023년(648.3%) 5.4%p 상승하였음
-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전기판매수익이 구입전력비는 초과하였으나, 고정비 성격의 송변전 전력설비 등 기타매출원가 및 판매비외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

-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3년 6조 5,0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차입금과 사채의 합계 금액은 89조 5,599억원으로 총자산 중 차입금 및 사채 등 외부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의존도는 64.5%로 나타남²⁾
- 2019년 대비 2023년 부채 규모가 73조 7,421억원 증가하여 2023년 부채 규모가 202조 4,502억원에 달함
-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총괄원가³⁾ 정산, 투자자산 자산손상 등으로 인해 2023년에 적자로 전환됨
 - 당기순이익이 2022년 대비 2조 2,444억원 감소한 △7,474억원으로 나타남
 - 별도재무제표 기준 금융부채 연평균잔액은 2023년 말 41조 258억원으로 2022년 32조 511억원에 비해 8조 9,747억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 또한 648.3%로 전년 대비 5.4%p 증가
 - 2019년 대비 2023년 부채 규모가 16조 2,633억원 증가하여 2023년 부채 규모는 47조 4,286억원임
- 한국철도공사는 일반여객사업에서의 영업손실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5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으며, 부채 또한 증가 추세를 보임
 - 2019년 대비 2023년 부채가 4조 1,356억원 증가함

□ 상기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과 관련이 있으므로, 악화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은행의 2023년 기업경영분석(24.6.12.)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2023년 부채비율은 102.6%, 차입금의존도는 28.8%임

3)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총괄원가 정산과 관련하여, 상기 총괄원가는 당해연도 결산 전 총괄원가를 예상치로 산정한 후 결산으로 정산하는데, 2023년에는 △3,573억원이 발생함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지분상품¹⁾ 및 채무상품²⁾ 등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들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투자 이후 수익 혹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³⁾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임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임
 -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예산을 출자, 출연, 보조 등의 형태로 지원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상품 손실액은 간접적인 예산의 낭비요소라 할 수 있음
- 전체 공공기관⁴⁾의 2023년 금융투자상품 기말잔액은 197조 6,140억원으로, 지분상품이 86조 5,819억원(43.8%), 채무상품이 111조 321억원(56.2%)임
 - 금융투자상품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 84.3% 증가함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2)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된 계약 등

3) 본 분석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중 파생상품을 제외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을 대상으로 함

4) 부설기관 5개 포함(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공공기관 금융투자상품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증감 (B-A)	증감률 ((B-A)/A)
지분상품	469,840	608,615	728,627	792,816	865,819	395,979	84.3
채무상품	602,329	782,891	917,983	1,013,571	1,110,321	507,992	84.3
합계	1,072,169	1,391,506	1,646,610	1,806,386	1,976,140	903,971	84.3

주: 각 연도 말 잔액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금융투자상품 손익분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기투자상품⁵⁾이 61조 8,885억원(31.3%), 장기투자상품⁶⁾이 135조 7,255억원(68.7%)으로 장기 투자상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기투자상품은 2019년 대비 2023년에 110.0% 증가했으며, 장기투자상품은 같은 기간 동안 74.6% 증가하여 증가율은 단기투자상품이 상대적으로 높음

[공공기관 금융투자상품 손익분류별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증감 (B-A)	증감률 ((B-A)/A)
단기투자상품	294,730	411,424	519,146	556,389	618,885	324,155	110.0
장기투자상품	777,440	980,082	1,127,464	1,249,998	1,357,255	579,816	74.6
합계	1,072,169	1,391,506	1,646,610	1,806,386	1,976,140	903,971	84.3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5)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을 위해 취득하며,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당기순손익에 반영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당기순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뜻함

6) 주로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하며,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뜻함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평가손익은 2023년 3조 4,079억원이며, 지분상품에서 1조 5,636억원, 채무상품에서 1조 8,443억원으로 나타남

[공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평가이익 및 손실(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증감 (B-A)	증감률 ((B-A)/A)
지분상품	10,931	100,021	136,108	68,775	15,636	4,705	43.0
채무상품	6,442	2,572	△600	△25,231	18,443	12,001	186.3
합계	17,373	102,593	135,508	43,544	34,079	16,706	96.2

주: 장기투자상품의 경우 이익의 감소는 손실로, 손실의 감소는 이익으로 분류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체 공공기관의 지분상품평가손익은 2019년 1조 931억원에서 2020~2021년 10조원 대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2년 이후 감소하여 2023년 1조 5,636억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투자상품평가이익이 높게 발생하여 평가이익이 손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기투자상품평가손익은 2019년, 2022년, 2023년 평가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의 손실 규모는 6,546억원으로 평가이익보다 손실이 659억원 높음
 - 장기투자상품평가손익의 경우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평가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의 평가이익 규모는 4조 1,798억원으로 평가이익이 손실보다 1조 6,295억원 높음

[공공기관의 손익분류별 지분상품 평가이익 및 손실(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증감 (B-A)	증감률 ((B-A)/A)
단기 투자 상품	평가이익(a)	2,071	35,475	54,228	4,374	5,887	3,815	184.2
	평가손실(b)	3,132	1,223	5,082	22,896	6,546	3,414	109
	평가손익(a-b)	△1,061	34,252	49,146	△18,522	△659	401	-
장기 투자 상품	평가이익(c)	26,215	71,873	91,115	128,406	41,798	15,584	59.4
	평가손실(d)	14,223	6,104	4,153	41,109	25,503	11,280	79.3
	평가손익(c-d)	11,992	65,769	86,962	87,297	16,295	4,304	35.9
합계(a-b+c-d)		10,931	100,021	136,108	68,775	15,636	4,705	43.0

주: 장기투자상품의 경우 이익의 감소는 손실로, 손실의 감소는 이익으로 분류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지분상품의 단기투자상품평가손실 6,546억원 중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4,631억원(70.8%)이 발생함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며, 2023년의 순손실 규모는 4,554억원임
 - 지분상품은 에이치엠엠(주) 전환사채7)가 대부분임8)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단기투자상품 중 지분상품 평가손익(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평가이익(a)	611	33,368	51,319	14	77	△534
평가손실(b)	1,502	0	3,586	19,688	4,631	3,129
평가손익(a-b)	△891	33,368	47,733	△19,674	△4,554	△3,663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7)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
- 8) 해당 영구채 매입은 2018년 4월 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상 국적원양선사의 경영정상화 지원 목적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전신인 한국선박해양에서 최초 취득당시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23년에는 관련 지분의 일부 매각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24년 2월에 최종 결렬되었음

- 2023년 지분상품의 장기투자상품평가손실(이익의 감소 포함) 2조 5,503억원 중 한국산업은행에서 1조 4,867억원(58.3%)이 발생함
 - 에이치엠엠(주) 영구채⁹⁾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평가이익 약 1조원이 감소하였고, 감소된 평가이익은 처분이익으로 전환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 되었으므로 기관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아님

[한국산업은행의 장기투자상품 중 지분상품 평가손익(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평가이익(a)	94	30,267	37,568	1,635	1,687	1,593
평가손실(b)	2,982	498	5	25,125	14,867	11,885
평가손익(a-b)	△2,888	29,769	37,563	△23,490	△13,180	△10,292

주: 평가이익의 감소는 손실로, 평가손실의 감소는 이익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채무상품의 경우 2021~2022년 평가손실이 이익보다 높았으며, 특히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평가손손실이 △2조 5,231억원이었으나 2023년에 1조 8,443억원의 평가순이익을 나타냄
 - 단기투자상품평가손익은 2022년을 제외하고 평가이익이 손실보다 높았으며, 2023년의 평가손익은 1조 4,285억원임
 - 장기투자상품평가손익의 경우 2021년, 2022년에 이익보다 손실이 높았으며, 특히 2022년에 2조 1,807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내어 2022년의 채무상품평가 손실은 장기투자상품에서 발생함

9)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할 수 있는 채권

[공공기관의 손익분류별 채무상품 평가이익 및 손실(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증감 (B-A)	증감률 (B-A)/A
단기 투자 상품	평가이익(a)	3,817	2,214	5,034	4,971	16,467	12,650	331.4
	평가손실(b)	1,993	2,055	1,573	8,395	2,182	189	9.5
	평가손익(a-b)	1,824	159	3,461	△3,424	14,285	12,461	683.2
장기 투자 상품	평가이익(c)	4,768	2,742	613	137	8,421	3,652	76.6
	평가손실(d)	150	329	4,674	21,944	4,263	4,113	2,742.0
	평가손익(c-d)	4,618	2,413	△4,061	△21,807	4,158	△461	△10.0
합계(a-b+c-d)		6,442	2,572	△600	△25,231	18,443	12,001	186.3

주: 장기투자상품의 경우 이익의 감소는 손실로, 손실의 감소는 이익으로 분류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채무상품의 장기투자상품평가손실 4,263억원 중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공단에서 3,675억원(86.2%)이 발생함
 - 2021~2023년에 평가순손실이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국채평가손실이
약 2,000억원 발생하였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장기투자상품 중 채무상품 평가손익(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평가이익(a)	2,265	1,884	444	41	749	△1,516
평가손실(b)	136	293	1,282	6,869	3,675	3,539
평가손익(a-b)	2,129	1,591	△838	△6,828	△2,926	△5,055

주: 평가이익의 감소는 손실로, 평가손실의 감소는 이익으로 분류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¹⁰⁾에는 모두 음(-)의 수익률을 나타냈으나,
2023년에 양(+)의 수익률로 전환하였음

10) 2022년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화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이슈, 원자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주식·채권이 모두 가치가 하락

- 2022년 수익률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4.3%로 가장 높았고, 2023년 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에서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3년은 주요국 건축 종료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기술주 실적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국내외 주식·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양호하였음

[연금기금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민연금기금	5.3	4.6	4.8	7.3	△0.9	11.3	9.7	10.8	△8.2	13.6
공무원연금기금	2.8	3.8	3.7	7.1	△1.5	8.4	10.5	8.6	△4.3	1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2.6	3.8	3.9	9.2	△2.4	11.2	11.5	12.0	△7.8	13.5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따라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상품,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채무상품¹²⁾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들은 손실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해양진흥공사의 HMM 금융자산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상 매입되었음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채무상품은 2023년 2,926억원의 평가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지분상품에서 2조 5,126억원의 평가순이익을 기록함

- 정부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ESG¹⁾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에 ESG 항목을 포함시키고²⁾ 지속적으로 ESG 관련 공시 항목을 신설 및 점검하고 있음³⁾
 - 2022년 2월에는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보호 항목을 분리·신설하고, 인권경영, 동반성장·청렴도 평가결과 등 ESG 공시항목을 확대함
 - 2023년 2월에는 ESG 등 공시강화 및 분류체계 개편 등 통합공시 기준을 전면 개편하였음
 - ESG 경영 현황⁴⁾ 및 ESG 운영위원회⁵⁾ 항목은 2023년에 신설되었으나, ESG 경영 인프라 구축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024년까지 자율공시가 적용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함

이상이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 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t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의미함
-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폭 확대한다.”, 보도자료, 2021.3.4.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ESG 등 민간 및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상 공시항목에 ①안전 및 환경 항목, ②사회공헌활동, ③상생협력, ④일가정양립 등 관련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3) ① 기후공시(E, 환경) 강화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 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② 공공기관 ESG 공시 강화를 위해 국회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S) 항목, 기관운영 투명성 및 ESG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보강이 필요한 지배구조(G) 항목을 추가 신설
 - ③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하여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 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
- 4) 각 공공기관의 ESG경영과 관련하여 기관 개요, ESG경영 목표 및 전략, ESG 추진체계, ESG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보고서 공시
- 5) 공공기관별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 자체 구성된 ESG경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ESG 운영 분류체계]

구분	2023년 2월 개정내용	현행 체계(2024.2. 개정)	
II. ESG 운영	ESG 현황	17. ESG 경영 현황 (신설)	17. ESG 경영 현황
	E(환경)	18. 환경보호	18. 대기환경(분류 세분화)
			19. 자원환경(분류 세분화)
			20. 환경보호(분류 세분화)
	S(사회)	19.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20. 사회공헌 활동 21. 인권경영 22. 알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23. 동반성장 평가결과 24. 장애인 고용현황 (신설) 25. 구매실적 (신설)	21.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22. 사회공헌 활동
			23. 인권경영
			24. 알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25. 동반성장 평가결과
			26. 장애인 고용현황
	G (지배구조)	26. 이사회 (신설) 27. 자체 감사부서 현황 28. 청렴도 평가결과	27. 구매실적
			28. 이사회
			29. 자체감사부서 현황
		30. 청렴도 평가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3.)

6-1. 공공기관 ESG 채권 현황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 마련 목적의 ESG채권 발행 규모 증가
 -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또는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지칭

[ESG채권의 구분]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자료: 한국거래소

- 2024년 7월까지의 공공기관 국내 ESG채권 발행 총 규모는 280조 3,501억 원 규모이며,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2018년 1,000억원에서 2021년 62조 2,659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잠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 다시 63조 3,161억원으로 증가

[공공기관 국내 ESG채권 신규 발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합계	비중
녹색채권	1,000	0	2,000	31,300	26,100	23,713	15,113	99,226	3.5
사회적채권	0	256,299	503,716	581,659	426,283	609,448	289,970	2,667,375	95.3
지속가능채권	0	15,500	7,100	9,700	4,600	0	0	36,900	1.2
합계	1,000	271,799	512,816	622,659	456,983	633,161	305,083	2,803,501	100.0

주: 2024년 7월말 상장채권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 각 공공기관별로 연도별 국내 ESG채권 발행액을 살펴보면, 총 27개 공공기관에서 ESG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24년 7월까지의 ESG채권 발행액은 280조 3,501억원임
 - 이 중 65.31%에 해당하는 183조 966억원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됨

[연도별 공공기관 국내 ESG채권 신규 발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총합계	(비중)
한국주택 금융공사	0	239,399	465,516	356,974	211,650	399,507	157,920	1,880,966	65.31
중소기업은행	0	9,500	4,000	64,300	68,600	70,000	40,300	256,700	9.16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	0	0	62,703	51,000	44,700	35,900	194,303	6.93
신용보증기금	0	0	0	50,982	46,554	43,056	21,147	161,739	5.77
한국장학재단	0	9,900	11,900	11,800	12,000	16,000	7,100	68,700	2.45
한국자산 관리공사	0	0	0	10,000	11,100	19,750	19,100	59,950	2.14
예금보험공사	0	0	16,300	11,500	13,900	11,700	4,700	58,100	2.07
한국토지 주택공사	0	0	0	10,700	10,300	10,700	5,100	36,800	1.31
한국산업은행	0	8,000	12,000	8,800	5,000	3,000	5,000	41,800	1.49
한국남동발전(주)	0	0	0	2,700	6,800	1,600	1,000	12,100	0.43
한국서부발전(주)	0	0	0	5,900	4,400	300	1,500	12,100	0.43
한국전력공사	0	2,000	2,000	4,000	0	2,800	0	10,800	0.39
한국남부발전(주)	1,000	0	0	2,800	3,900	1,000	1,000	9,700	0.35
한국수력 원자력(주)	0	3,000	0	2,400	1,200	2,700	0	9,300	0.33
한국동서발전(주)	0	0	0	3,800	1,800	1,700	1,700	9,000	0.32
한국지역 난방공사	0	0	0	1,600	3,500	1,000	0	6,100	0.22
기술보증기금	0	0	0	0	778	2,848	2,116	5,743	0.20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총합계	(비중)
한국중부발전(주)	0	0	1,100	1,500	2,000	500	0	5,100	0.18
부산항만공사	0	0	0	2,000	1,700	0	0	3,700	0.13
한국철도공사	0	0	0	3,000	0	0	0	3,000	0.11
한국수자원 공사	0	0	0	800	0	0	1,500	2,300	0.08
한국해양 진흥공사	0	0	0	1,500	0	0	0	1,500	0.05
인천항만공사	0	0	0	1,100	300	0	0	1,400	0.05
여수광양 항만공사	0	0	0	500	500	0	0	1,000	0.04
인천국제 공항공사	0	0	0	1,000	0	0	0	1,000	0.04
한국공항공사	0	0	0	300	0	0	0	300	0.01
국가철도공단	0	0	0	0	0	300	0	300	0.01
총합계	1,000	271,799	512,816	622,659	456,982	633,161	305,083	2,803,501	100

주: 2024년 7월말 상장채권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나. 주요 쟁점

- 신규 프로젝트 투자 중심의 ESG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차환용 또는 기존 사업 투입으로 발행되는 금액은 별도 관리하여 공개할 필요
 - 공공기관이 2023년에 발행한 ESG채권 중에서 차환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거나 조달된 자금이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12조 4,898억원으로, 녹색채권이 7,300억원, 사회적채권이 11조 7,598억원 규모임

[2023년 공공기관 발행 ESG채권 중 차환용 및 기존 사업 투입용 현황]

(단위: 백만원)

채권 종류	발행기관	발행금액	사용처	구분
녹색 채권	한국토지주택공사	530,000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개발·운영 등	기존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200,000	친환경건축(보건복지행정타운(2단계) 개발사업, 수원법원청사 개발사업)	차환
소계		730,000		
사회적 채권	기술보증기금	87,521	중소·중견기업 차환발행 회사채 매입	차환
	신용보증기금	2,200,900	중소·중견기업 차환발행 회사채 매입	차환
	예금보험공사	1,170,000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자금 조달	차환
	한국토지주택공사	540,000	건설임대주택 공사비	기존
	한국장학재단	1,600,000	학생 학자금대출 지원, 만기도래 채권 원리금 상환	차환 /기존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470,000	정책자금용자	기존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650,000	금융취약계층 연체채권 인수, 유동성 위기 기업 등	차환
		865,000		기존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	176,400	정책모기지 공급 및 공사 유동화사업 재원	기존사업	
소계		11,759,821		
전체 합계		12,489,821		

자료: 각 공공기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정부가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⁶⁾은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에 대하여 사용처를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조달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차환에 사용되는 경우 신규 투자와 차환의 예상 비율과 해당 녹색프로젝트 및 대상기간에 대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차환에 사용되는 자금의 경우 신규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과는 환경적으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조달자금 중 차환에 사용되는 비율과 신규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비율을 나눔으로써 해당 녹색채권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실제 2023년에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의 2,000억원이 차환용으로 발행되었으며, 사회적채권의 경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4조 1,084억원의 사회적채권이 차환용으로 사용되었음⁷⁾
- 차환은 신규로 채권을 발행하여 기존에 발행되었거나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존에 조달된 자금을 대체하거나 채권의 기간 변경, 전환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됨
- 즉, 차환용으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ESG와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새로이 창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ESG채권으로 조달된 금액 중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역시 차환용과 같이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ESG와 관련된 환경적, 사회적 효과를 신규 창출하는 효과가 제한적임

6) 환경부 및 금융위원회,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2.12.)」, p.12~13

7)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사회적 채권 중 1조 6,000억원도 차환 및 기존사업 투입에 사용되었는데, 양자의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 규모임

- 공공기관이 발행한 ESG 채권 중 사회적 채권 비중이 약 95.3%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상 발행 채권의 대부분이 사회적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채권 발행 규모 자체를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성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
 - 2024년 7월까지의 공공기관 국내 ESG채권 발행 총 규모는 280조 3,501억 원 규모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채권이 266조 7,375억원으로 전체 ESG 채권의 95.3%를 차지하고 있음

[공공기관 국내 ESG채권 신규 발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합계	비중
녹색채권	1,000	0	2,000	31,300	26,100	23,713	15,113	99,226	3.5
사회적채권	0	256,299	503,716	581,659	426,283	609,448	289,970	2,667,375	95.3
지속가능채권	0	15,500	7,100	9,700	4,600	0	0	36,900	1.2
합계	1,000	271,799	512,816	622,659	456,983	633,161	305,083	2,803,501	100.0

자료: 한국거래소

- 사회적 채권이란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대부분이 사회적 채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채권의 발행 규모 및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예금보험공사의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⁸⁾은 서민·중소기업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점 등을 인정받아 사회적 가치 채권(Social Bond) 인증을 취득하였는바,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채권 전액을 사회적 가치 채권으로 발행하고 있음

8) 특별계정은 서민 및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계정임을 감안

- 또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공공기관(은행형 공공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역시 사회적 채권으로 분류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임대주택 공사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지원 등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 및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이 모두 사회적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채권 발행 목적]

기관명	사회적채권 발행 목적
예금보험공사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이 사회적 가치 채권(Social Bond) 인증을 취득하여 채권 전액을 사회적 가치 채권으로 발행
한국산업은행	일자리창출 기업, 코로나19피해 기업, 고용불안정 해소
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일자리 창출(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중견선사 회사채 인수사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ESG 참여 유도의 일환으로 특정 기업 ¹⁾ 의 회사채 발행 지원 용도
신용보증기금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용자 사업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취약계층 연체채권 인수, 유동성 위기 기업 금융지원, 공공자산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 및 유동화사업 재원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주택 공사비 투입 목적 발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원 및 만기도래 채권 원리금 상환

주: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소셜벤처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위기업, 기후·기술사업 영위기업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즉, 공공·사회적 가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대부분이 사회적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채권 발행 규모 증가 자체만으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6-2. 금융공공기관의 ESG 보증, 대출, 투자 현황

가. 현황

- 정책금융기관⁹⁾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등(이하 “금융공공기관등”이라 함)의 ESG 보증, 대출, 투자 규모는 2019년 139.4조원에서 2023년 267.9조원으로 92.1% 증가함
 - 2023년 말 기준으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ESG 보증이 111.8조원, ESG 대출이 104.6조원, ESG 투자가 51.4조원임
 - 2019년에는 ESG 보증, 대출, 투자 합계액 139.4조원 중 보증이 70.6조원으로 50.6%, 대출이 60.1조원으로 43.1%, 투자가 8.7조원으로 6.3%를 차지함
 - 2023년에는 ESG 보증과 대출의 합이 216조원을 넘어섰으며, 투자액은 51.4조원으로 ESG 보증, 대출, 투자 전체 합계액 267.9조원의 19.2%로 비중이 확대됨

[금융공공기관등의 ESG 보증, 대출,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보증	70,599,623	83,769,579	88,934,322	110,338,113	111,844,877	41,245,254
대출	60,071,031	69,284,297	69,343,838	73,777,848	104,602,330	44,531,299
투자	8,736,495	22,035,269	39,832,621	43,269,003	51,405,386	42,668,891
합계	139,407,149	175,089,145	198,110,781	227,384,964	267,852,593	128,445,444

자료: 금융공공기관 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9)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금융공공기관등의 전체 ESG 보증 규모는 2019년 70.6조원에서 2023년 111.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23년도 S 분야 보증 규모가 97.1조원으로 2023년도 ESG 보증의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E 분야 보증은 2023년 13.8조원으로 2019년 대비 약 197.5% 증가하였고, G 분야 보증은 2019년에는 보증 실적이 아예 없었으나 2023년 기준 2,442억원까지 증가하였음

[금융공공기관등의 ESG 보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E	4,639,147	7,087,223	9,077,539	14,313,487	13,800,293	9,161,146
S	65,704,486	76,072,765	79,331,437	95,367,016	97,097,569	31,393,083
G	-	61,571	43,136	121,603	244,201	244,201
ESG	255,990	548,020	482,210	536,007	702,814	446,824
합계	70,599,623	83,769,579	88,934,322	110,338,113	111,844,877	41,245,254

주: ESG는 E, S, G 중 특정 항목으로만 구분되지 않는 보증

자료: 금융공공기관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금융공공기관등의 전체 ESG 대출 규모는 2019년 60.1조원에서 2023년 104.6.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S 분야 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S 분야 대출은 69.3조로 전체 ESG 대출의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E 분야 대출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35.3조원으로 전체 ESG 대출의 3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공공기관등의 ESG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E	11,010,681	14,653,780	21,776,625	31,821,943	35,307,453	24,296,772
S	49,060,350	54,630,517	47,559,713	41,955,905	69,294,877	20,234,527
G	-	-	-	-	-	-
ESG	-	-	7500	-	-	-
합계	60,071,031	69,284,297	69,343,838	73,777,848	104,602,330	44,531,299

주: ESG는 E, S, G 중 특정 항목으로만 구분되지 않는 대출

자료: 금융공공기관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금융공공기관등의 전체 ESG 투자 규모는 2019년 8.7조원에서 2023년 51.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전체 ESG 투자 중 S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2023년 S 분야 투자 규모는 33.7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ESG 투자의 65.5%이며, 다음으로 ESG 분야 투자 규모가 10.8조원으로 21.1%를 차지함

[금융공공기관등의 ESG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E	793,610	1,252,066	3,256,112	3,731,405	4,100,575	3,306,965
S	5,457,167	13,476,504	23,299,710	25,497,471	33,677,828	28,220,661
G	339,492	969,573	2,868,338	3,411,077	2,778,997	2,439,505
ESG	2,146,226	6,337,126	10,408,461	10,629,050	10,847,986	8,701,760
합계	8,736,495	22,035,269	39,832,621	43,269,003	51,405,386	42,668,891

주: ESG는 E, S, G 중 특정 항목으로만 구분되지 않는 투자

자료: 금융공공기관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탈석탄 선언과 관련하여 석탄투자의 기준이나 투자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가이드라인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석탄산업과 관련한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탈석탄 선언(2021년 5월) 이후 석탄투자의 기준 및 석탄기업 분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탈석탄 선언 이후 그 이행을 위해 석탄채굴이나 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마련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2022년 5월부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석탄채굴 발전산업 투자제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2024년 8월까지 미이행 중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¹⁰⁾의 탈석탄 선언 이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금지하였고, 투자제한은 기금위의 결정 사항으로서, 공단은 탈석탄 등 투자제한에 대해서 기금위의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임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2021.5.28.)]

Ⅲ. 향후 계획

- 석탄채굴·발전산업 범위 및 기준(안) 등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1.하, 잠정)
- 「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TF 구성·운영 ('21.하~)
- 투자제한전략 단계적 시행방안 수립 (~'22.상, 잠정)
- 자산별 이행시기, 성과평가 기준(벤치마크지수) 등 세부사항

자료: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 2021.12.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10)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위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 중 해외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목표가 미이행되고 있음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제102조제4항¹¹⁾),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함(제103조의3제2항제2호¹²⁾)
- 한편, 2019년 11월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¹³⁾를 기금 전체 자산군인 국내외 주식·채권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내용과 기존 투자방식에 ESG요소를 융합시키는 ESG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 동 방안에 기반하여 기금위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 위탁 운용 책임투자 내실화 및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세부이행방안을 수립하였으나, 기금위는 2024년 8월 현재까지 해외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¹⁴⁾의 마련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1)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2)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13) 책임투자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이하 'ESG') 등 투자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를 의미

14) 해외주식의 운용특성과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이 해외주식에 대해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

- 국민연금기금은 2023.1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해외증권 책임투자 적용방안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기금위의 논의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임¹⁵⁾
-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점차 국내에서 해외주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바, 국민연금기금의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의 범위 및 운용 규모'를 보면 2023년 기준 해외주식의 비중이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ESG 해외주식 수탁자 책임 강화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¹⁶⁾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구분	추진과제 및 세부이행방안	추진계획		
		'20	'21	'22
①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	① ESG 통합전략 강화 및 확대			
	(1) 국내주식 직접 '액티브 ESG통합전략 강화' 및 '패시브 ESG 통합전략 적용'	0		
	(2) 국내채권 ESG 통합전략 적용		0	
	(3) 해외주식·채권 ESG 통합전략 적용		0 ¹⁾	
	② 기업과의 대화 전략 확대			
	(1) 국내주식 환경(E)·사회(S) 관련 중점관리사안 선정		0 ¹⁾	
	(2) 해외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0 ²⁾	
③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도입 검토		0		
② 위탁운용 책임투자 내실화	① 책임투자 유형 위탁펀드 내실화 * 국내주식 위탁운용 BM 개발 및 적용	0		
	②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체계 개선			
	(1) 국내주식 책임투자 위탁펀드 책임투자보고서 제출 의무화	0		
	(2)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책임투자보고서 제출 의무화			0
	(3)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시 책임투자 요소 고려			0
(4)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모니터링 등 강화			0	

15) 국민연금기금은 2024.7월 기금운용위원회에 '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완료함

16) “살인기업에 투자확대 논란’ 국민연금, 해외투자시 ESG 평가는 ‘뒤틀린 왜’, 브릿지경제, 2022.8.9.
“국민연금 해외투자 늘리는데…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은 60여개뿐”, 뉴시스, 2024.7.4.

구분	추진과제 및 세부이행방안	추진계획		
		'20	'21	'22
③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구성	① 책임투자 원칙 등 지침 제·개정	0		
	② 기업 ESG 정보 공시 제도 개선			
	(1)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발간 (매년 발간)	0		
	(2) 거래기관 평가시 비재무적 요인 포함 여부 반영			0
	③ 책임투자 담당 조직 역량 강화			
	(1) 책임투자 관련 해외 이니셔티브 추가 참여	0		
	(2) 해외사무소 책임투자 인력 파견		0	
	④ ESG 평가체계 개선 * 국내주식 ESG평가체계 개선		0	

주: 1) 2023년 마련 완료

2) 마련 중(2024년 8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021.2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의 범위 및 운용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3 비중
국내주식	32,167,911	101,343,594	91,998,724	125,351,099	148,037,765	(25.2)
직접	26,976,900	93,376,618	84,279,446	61,987,412	72,630,419	
위탁	5,191,011	7,966,976	7,719,278	63,363,687	75,407,346	
국내채권	0	0	38,041,836	83,297,580	82,918,529	(14.1)
직접	0	0	38,041,836	37,661,463	34,665,272	
위탁	0	0	0	45,636,117	48,253,257	
해외주식	0	0	0	142,606,399	320,093,460	(54.5)
직접	0	0	0	-	138,504,442	
위탁	0	0	0	142,606,399	181,589,019	
해외채권	0	0	0	32,786,218	36,078,749	(6.1)
직접	0	0	0	0	0	
위탁	0	0	0	32,786,218	36,078,749	
합계	32,167,911	101,343,594	130,040,560	384,041,296	587,128,503	(100.0)

주: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공시 기준에 따라 2024년 현재 공시된 2023년 말까지로 작성

자료: 국민연금공단



조직 · 인사 분야

가. 현 황

- 노동이사제¹⁾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로 기업 발전을 위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운영중인 제도
 -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는 기업 구성원의 한축인 노동자가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임

-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3항(공기업) 및 제26조3항(준정부기관)에 따르면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임
 - 기타공공기관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없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음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근로자이사제라고도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

구분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	제25조제3항(공기업) 제26조제3항(준정부기관)
추천방식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추천대상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근로자	
이사정수 및 임원유형	1명 선출,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현행 이사의 선임 절차와 동일	
임기	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현행 이사의 임기와 동일)	제28조제1항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는 노동이사의 자격요건, 겸직 조항, 보수 등 관련 세부 지침을 명시하고 있음
 - 노동이사에 선출되면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근로자위원 혹은 고충처리위원 등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함
 - 노동이사는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인정함
 -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사내직원이 겸직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가 지급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

구분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노동이사 자격요건	노동조합 조합원,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탈퇴 필요	제47조의4제2항
노동이사 겸직 조항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입	제47조의10
노동이사 보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음	제47조의11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비상임이사) 선임 현황(2024.8.26.)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를 선임한 기관은 14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17개, 9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0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시장형 공기업은 14개 기관 모두 노동이사 선임을 완료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노동이사 선임을 완료하였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 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준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광해광업공단만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임

[공공기관 노동이사 선임 현황]

(단위: 개)

기관유형	선임 여부	기관수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선임 완료	14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선임 완료	17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PS(주),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DN(주), 한국마사회
	선임 절차 진행중	1	한국광해광업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선임 완료	9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선임 절차 진행중	3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선임 완료	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석유관리원, 국립생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선임 절차 진행중	13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직급은 3급이 27명으로 가장 많음
 - 4급은 21명, 2급은 12명으로 전체 70개 기관 중 60개 기관이 2~4급 직원을 노동이사로 선임함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직급 현황]

(단위: 명)

기관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기타
시장형 공기업(14)	-	1	4	8	-	1
준시장형 공기업(17)	-	1	7	6	1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9)	-	1	5	2	-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0)	2	9	11	5	-	3
총합계(70)	2	12	27	21	1	7

주: 기타는 연구직 등 직급이 없는 경우를 기타로 산입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보직은 차장급이 19명으로 가장 많음
 - 과장급 9명, 부장급 9명, 팀장급 5명, 수석 3명임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보직 현황]

(단위: 명)

기관 유형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차장	5	6	3	5	19
과장	3	4	-	2	9
부장	1	3	2	3	9
팀장	1	-	1	3	5
수석	-	-	-	3	3
책임	-	-	-	1	1
처장	-	-	-	1	1
고객부장	-	-	1	-	1
기장	-	1	-	-	1
시니어	1	-	-	-	1

(단위: 명)

기관 유형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부팀장	-	-	1	-	1
소장	-	-	-	1	1
선임전문위원	1	-	-	-	1
선임조사위원	-	-	-	1	1
수석위원	-	-	-	1	1
연구위원	-	-	-	1	1
전문위원	-	-	-	1	1
책임연구원	-	-	-	1	1
연구원	-	-	-	1	1
기타	2	3	1	5	11
총합계	14	17	9	30	70

주: 기타는 보직이 없는 경우 등을 기타로 산입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평균 근속연수는 시장형 공기업이 28년으로 가장 오래 재직한 것으로 파악됨
 - 평균근속연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3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0년, 준시장형 공기업 18년임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근속연수 현황]

(단위: 년)

기관 유형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평균근속연수	28	18	20	23	23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직무 유형 중 사무직이 40명으로 가장 많음
 - 기술직 14명, 발전직 5명, 연구직 3명 등임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직무유형 현황]

(단위: 명)

기관 유형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사무직	6	8	8	18	40
기술직	2	5	-	7	14
발전직	5	-	-	-	5
연구직	-	-	-	3	3
종합직	-	-	1	-	1
기타	1	4	1	2	8
총합계	14	17	9	30	70

주: 기타는 역무직, 검사직, 서비스직, 생산직, 축산물품질평가직, 기장 등임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수의 기관이 근로자 대표 추천을 통해 선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외의 기관은 근로자 투표 및 과반수 동의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임하였음
 -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주)은 근로자 투표 및 과반수 동의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임함

나. 주요 쟁점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에게 단독 사무실을 지원하는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7개, 준시장형 공기업 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비상임이사의 안건 검토를 위해 시설, 인력, 사내 정보망 이용의 보장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지침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노동이사에게 비상임이사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시설을 지원해야 하지만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 등 13개 기관은 노동이사에게 단독 사무실을 제공함

[노동이사 단독 사무실 제공 공공기관]

기관유형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7)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준시장형 공기업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전KDN(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전력기술(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립생태원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상위법 개정 지연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기관은 노동이사 선임이 지연됨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절차 진행 이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절차 진행 이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노동이사 도입을 위해 주무부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8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연 중²⁾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사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사례 등을 검토하여 도입을 위한 공단 내규 개정(안)을 마련 중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 이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임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제반 규정 개정 완료 후 노동조합에서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 중

2)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 자동 폐기

[주요 공공기관 노동이사 선임 지연 사유]

기관유형	기관명	지연사유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	제반규정 개정 완료 후 노동조합에서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 진행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상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절차 진행 이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24.10.30)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예정
	국민연금공단	「상위법(국민연금법)」 개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노동이사 선임 지연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8조 개정 지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간 도입 협의 및 관련 내규 개정(안) 마련 중
	한국산업단지공단	노동조합 협의절차 진행중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 지연으로 선임 절차 지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법·내규 개정 추진 및 노사협의 등 도입 절차 진행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반 규정 개정 완료 후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 진행중
	한국장학재단	경영진(기관장) 신규 임명('23.1월) 및 노동조합 집행부 변동(신규 선출, '23.7월)을 고려하였으며, 이후 임기가 도래된 임원이 없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음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24.12.29)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우체국물류지원단	2024년 6월 비상임이사 임기 종료 후 선임 절차 진행중
	국토안전관리원	노동이사 선임절차 진행 중(4분기 중 선임 예정)
한국도로교통공단	2024년 7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노동이사 공모절차 진행 예정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 황

- 정부는 최근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일·가정양립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부모 맞돌봄 지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등
 - 근로환경 유연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 등
 - 긴급돌봄 지원 및 기업 부담 경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단기 육아휴직, 긴급돌봄 채용 프로그램 등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현행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¹⁾ 등에도 명시되어 있음
 - 육아휴직 사용자 수, 출산휴가 사용자 수,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 수, 유연근무 현황(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자 수 등

-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4. 5. 10.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시항목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1)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확대,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운영, 가족친화인증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임신·육아기 근로자 대상 특별휴가 및 난임휴직 도입·운영, 근무지 전보 시 임신·육아 중인 직원 우선 고려,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의 검토 방향을 고려하여, 2024. 6. 5.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

- 공공기관이 임신·육아기 근로자 대상 특별휴가 및 난임휴직 도입·운영,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을 추가
- 본래 공공기관은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할 수 없으나, 출산축하금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복 지출 가능하도록 개정
- 본래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출산축하금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주요 쟁점

□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되는 각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본 결과, 지침에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2023년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낮은 수준

-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24.1%로, 2023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약 28.0%)의 약 86.2% 수준

[2023년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공공기관 재직자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사용자 수	23,039	17,475	5,564	126,008	90,672	35,336
사용률	100.0	75.9	24.1	100.0	72.0	28.0

자료: 고용노동부 및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153개 공공기관 중 연내 남성육아 휴직 사용률이 10.0% 미만인 기관은 총 19개
 - 사용률이 저조한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육아휴직 대상자에 관한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
 - 육아휴직 대상자에 관한 자료를 보유·관리 중인 9개 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실제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휴직 대상자 중 남성의 비율 대비 낮았음
 - 2개 공공기관은 성별 간 80%p 이상의 격차가 발생

[2023년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10.0% 미만인 19개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

기관명	임직원 정원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 사용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B/[A+B])
		여성	남성	여성(A)	남성(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930	976	238	701	48	6.4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4,230	관련자료 미보유		225	11	4.66
국립중앙의료원	1,822	251	104	148	14	8.64
노사발전재단	301	59	26	23	1	4.17
부산대학교병원	6,703	관련자료 미보유		700	30	4.11
서울대학교병원	8,452	관련자료 미보유		608	48	7.3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514	관련자료 미보유		409	27	6.1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72	관련자료 미보유		51	2	3.77
전남대학교병원	5,654	관련자료 미보유		407	21	4.91
전북대학교병원	3,289	관련자료 미보유		202	16	7.34
중소기업은행	13,642	3,036	1,841	1,497	49	3.17
충남대학교병원	5,067	관련자료 미보유		390	24	5.80
충북대학교병원	2,674	관련자료 미보유		166	12	6.74
한국무역보험공사	806	91	93	42	1	2.33
한국보육진흥원	368	65	5	45	1	2.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378	관련자료 미보유		629	64	9.24
한국산업은행	3,419	406	578	220	20	8.3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42	83	88	75	8	9.64
한국특허정보원	423	32	59	30	3	9.09

주: 1. 2023년 임직원 정원(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
 2.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우,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여 휴직 사용이 가능했던 인원 수를 의미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육아휴직 대상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 현황]
(단위: 명, %, %p)

기관명	임직원 정원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			성별 간 격차 (=A-B)
		대상 자	사용 자	비율 (A)	대상 자	사용 자	비율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930	976	701	71.8	238	48	20.2	51.7
국립중앙의료원	1,822	251	148	59.0	104	14	13.5	45.5
노사발전재단	301	59	23	39.0	26	1	3.8	35.1
중소기업은행	13,642	3,036	1,497	49.3	1,841	49	2.7	46.6
한국무역보험공사	806	91	42	46.2	93	1	1.1	45.1
한국보육진흥원	368	65	45	69.2	5	1	20.0	49.2
한국산업은행	3,419	406	220	54.2	578	20	3.5	50.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42	83	75	90.4	88	8	9.1	81.3
한국특허정보원	423	32	30	93.8	59	3	5.1	88.7

주: 1. 2023년 임직원 정원(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
2.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우,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여 휴직 사용이 가능했던 인원 수를 의미
3. 비율 및 성별 간 격차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점검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해당 공공기관은 사용률 저조 원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 잔존 및 직원들의 관심 부족(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성 근로자들의 휴직 신청률 저조(노사발전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등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한국산업은행), 급여 차이의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장려 영상 게재, 제도 안내 확대 등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임

-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되는 각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본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관련 제도 운영 실적이 없음
 - 출산휴가의 경우 2023년 임직원이 300명 이상인 153개 공공기관은 모두 연내 출산휴가 실적이 1건 이상 있었으며, 노사발전재단을 제외하면 모두 연내 배우자출산휴가 실적이 1건 이상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
 -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제의 경우 2023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153개 공공기관 중 연내 임신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이 6개, 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은 27개

[2023년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명(2023년 임직원 정원 수)
임신기 단축 근무제 실적이 없는 기관 (6개)	우체국물류지원단(1,485), 코레일로지스(주)(543), 코레일테크(주)(5,267), 한국교육과정평가원(351), 한국소비자원(547), 한전MCS(주)(4,361)
육아기 단축 근무제 실적이 없는 기관 (27개)	(주)공영홈쇼핑(381), 국방기술품질원(69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67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342), 주식회사 에스알(678), 예술의전당(378), 전북대학교병원(3,289), 정보통신산업진흥원(45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58), 코레일로지스(주)(54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314), 한국관광공사(766), 한국교육과정평가원(351), 한국농업기술진흥원(323), 한국동서발전(주)(2,52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1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384), 한국산림복지진흥원(453), 한국산업인력공단(1,876), 한국서부발전(주)(2,784), 한국수자원공사(6,364), 한국수출입은행(1,213), 한국전력거래소(536), 한국중부발전(주)(2,840), 한국지역난방공사(2,13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405)

주: 2023년 임직원 정원(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의 경우 2023년 임직원 정원 300명 이상인 153개 기관 중 연내 유연근무제 사용자가 없는 기관 수는 시간선택제 11개, 탄력근무제 9개, 재량근무제 145개, 원격근무제 33개 등

[2023년 유연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명(2023년 임직원 정원 수)
시간선택제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11개)	경상국립대학교병원(4,23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4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342), 예술의전당(378), 전남대학교병원(5,654), 제주대학교병원(1,998), 주택관리공단(2,5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312), 한국장애인개발원(382), 한국콘텐츠진흥원(52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320)
탄력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9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290), 경북대학교병원(5,539), 경상국립대학교병원(4,230), 국립중앙의료원(1,822), 노사발전재단(3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672), 전남대학교병원(5,654), 제주대학교병원(1,998), 충북대학교병원(2,674)
재량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145개)	기초과학연구원(439), 예금보험공사(839), 신용보증기금(2,907), 한국개발연구원(472), 한국도로공사서비스(5,27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44), 한국서부발전(2,784), 한국조세재정연구원(364)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원격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33개)	(주)강원랜드(3,680), 경북대학교병원(5,539), 경상국립대학교병원(4,230), 국립생태원(623), 국립중앙의료원(1,822), 노사발전재단(301), 부산대학교병원(6,703), 서민금융진흥원(339), 서울대학교병원(8,452), 분당서울대학교병원(5,5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672), 예술의전당(378), (재)우체국금융개발원(844), 전남대학교병원(5,654), 전북대학교병원(3,28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58), 제주대학교병원(1,998), 주택관리공단(2,512), 중소기업은행(13,642), 충남대학교병원(5,067), 충북대학교병원(2,674), 코레일관광개발(1,303), 한국국방연구원(512), 한국도로공사서비스(5,27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384), 한국사회보장정보원(748), 한국산업기술시험원(902), 한국수산자원공단(343), 한국장애인고용공단(1,442), 한국철도공사(32,1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741), 한전MCS(4,361),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1,171)

주: 2023년 임직원 정원(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의 경우, 2023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153개 공공기관 중 연내 가족돌봄휴가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이 3개, 가족돌봄 휴직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은 27개

[2023년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사용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명(2023년 임직원 정원 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3개)	대한석탄공사(633), 학교법인한국폴리텍대학(2,740), 한국수산자원공단(343)
가족돌봄휴직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27개)	(주)공영홈쇼핑(381), 국립중앙의료원(1,822), 국방기술품질원(694), 노사발전재단(301),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42), 서민금융진흥원(339), 신용보증기금(2,907),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392), 전남대학교병원(5,654), 주택도시보증공사(1,123), 충북대학교병원(2,674), 코레일로지스(주)(543), 한국가스안전공사(1,714), 한국광해광업공단(8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351), 한국농업기술진흥원(32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4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384), 한국보건산업진흥원(4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430), 한국소방산업기술원(312), 한국수산자원공단(3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626), 한국원자력환경공단(420), 한국토지주택공사(8,545), 한국해양과학기술원(741)

주: 2023년 임직원 정원(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도의 경우 제도 자체의 활용 유인 부족, 기관의 업무 환경과의 호환성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등에 따르면 육아기 단축 근무제의 경우 급여 감소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 유인이 부족하며, 유급 육아시간제도 등과 같은 대체 제도를 운영 중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및 병원형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현장 근무의 중요성이 높은 기관의 특성상 원격근무제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사용 실적이 부재하였다는 입장임

- 정부는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각 기관의 근무 환경 전환에 기여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이 처한 환경 및 구성원들의 유인구조 등에 부응하는 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추가로, 기획재정부는 2024.6.5. 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직원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 불임·난임직원 등과 같이 본인의 선택만으로 임신 및 육아를 결정하기 어려운 직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 공무원의 경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이 2024.1.1. 부터 시행되면서 다자녀 양육 직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대상을 8급 이하 직원의 승진에 한정하고 있음

가. 현 황

-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채용을 추진
 -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대상자를 채용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졸업 및 졸업 대상자를 채용¹⁾

[이전지역인재와 비수도권 지역인재채용 간 비교]

채용 형태	채용 대상 기관	지역인재 대상	근거 법률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수도권 공공기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주: 2024년 공공기관 9개가 지정해제되어 이전지역인재 채용 대상기관은 116개

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지방대학육성법」

제13조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 간 상이함

- 「혁신도시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연도별로 18~30% 비율 이상이 되도록 채용해야 함²⁾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2조³⁾에 규정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22년 이후 30% 이상을 채용해야 함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2조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연차별 18~30%로 의무화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채용비율]

(단위: %)

2018년 이전 이전한 공공기관		2019년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	
해당연도	비율	해당연도	비율
2018년	18	1년차	18
2019년	21	2년차	21
2020년	24	3년차	24
2021년	27	4년차	27
2022년 이후	30	5년차	30

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 「지방대육성법」 제13조제2항이 개정되어 2024.8.14.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함⁴⁾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1에 비율이 명시되어 있음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 이전지역인재는 이전지역 규정에 따라 권역별로 채용

- 이전지역의 범위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해 대구·경북, 울산·경남, 충청권 등으로 나뉨
 -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졸업 예정)한 사람이 지원 가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의2제6항 이전지역범위]

이전 지역	이전지역범위	법적규정
공동혁신도시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제1호
대구 혹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제2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제3호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제5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2024년 기준)은 116개

- 권역별로 부산 12개, 대구 9개, 전라남도·광주 13개, 울산 9개, 강원도 10개, 충청북도 11개, 전라북도 6개, 경상북도 7개, 경상남도 10개, 제주도 2개, 충청남도 2개, 세종시 19개, 대전 8개
 - 2023년 말 127개 공공기관 중 지정해제된 9개 공공기관⁵⁾과 부처 소속 기관 2개⁶⁾를 제외한 116개 공공기관이 대상

4) 2024.2.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이 추가되었음

5)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23년 지정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4년 지정해제)

6) 한국예탁결제원(금융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12,817명으로 2022년 15,380명 대비 2,563명 감소(△12.9%)
 - 공기업의 2023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 규모는 2,894명으로, 2022년 대비 427명 감소(△12.9%)하였으며 이 중 준시장형 공기업은 2023년 1,866명으로 전년 대비 299명 감소(△13.8%)하였음
 - 준정부기관의 2023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 규모는 3,405명으로, 2022년 대비 769명 감소(△18.4%)하였으며 이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023년 2,685명으로 전년 대비 546명 감소(△16.9%)
 - 기타공공기관의 2023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 규모는 6,519명으로, 2022년 대비 1,367명 감소(△17.3%)하였으며 이 중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은 2023년 6,362명으로 전년 대비 1,343명 감소(△17.4%)

[공공기관 유형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 현황(2019~2023)]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6,674	4,518	3,527	3,321	2,894	△427	△12.9
· 시장형	2,706	2,049	1,660	1,156	1,028	△128	△11.1
· 준시장형	3,968	2,469	1,867	2,165	1,866	△299	△13.8
준정부기관	4,817	3,794	4,357	4,174	3,405	△769	△18.4
· 기금관리형	872	789	936	943	720	△223	△23.7
· 위탁집행형	3,945	3,006	3,421	3,231	2,685	△546	△16.9
기타공공기관	7,451	7,235	7,682	7,886	6,519	△1,367	△17.3
· 은행형	170	97	140	181	157	△24	△13.3
· 기타	7,281	7,138	7,542	7,705	6,362	△1,343	△17.4
전체	18,942	15,547	15,566	15,380	12,817	△2,563	△16.7

주: 공공기관 부설기관 12개 제외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지역 인재 채용 관련하여 지역인재 선발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소재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계류중인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채용범위와 채용비율 확대 등에 관해 논의
 - 이전지역 비수도권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대학원)으로 진학하였을 때에도 이전지역인재로 혜택을 부여하며, 40~50%의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이에 미달시 채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 관련「혁신도시법」계류의안]

제안일자	발의자	주요 내용
2024.6.7	강대식 의원 등 11인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
2024.8.3	전재수 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
2024.9.3	김태호 의원 등 10인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계류중인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채용범위 확대 등에 관해 논의
 -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된 지방인재채용 범위를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진학한 사람들까지 확대하도록 논의 중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관련「지방대육성법」계류의안]

제안일자	발의자	주요 내용
2024.6.28	이종배의원 등 10인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권역별 의무화 대상 채용 규모를 고려하여 채용 규모가 적은 권역은 타 권역과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통합 채용이 가능한 대구·경북(533명), 충청권(543명), 울산·경남(353명), 광주·전남(357명)에 비해 강원(286명), 부산(258명), 전북(52명), 제주(19명)의 채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음
- 전라북도는 전체 의무화 대상 지역인재 채용인원 규모는 52명으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작으므로 권역 통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권역별 이전지역인재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 비중(2023)]

(단위: 명, %)

지역	대구·경북	울산·경남	충청권	부산	광주·전남	전북	제주	강원	합계
규모	533	353	543	258	357	52	19	286	100
권역별 비중	22.2	14.7	22.6	10.7	14.9	2.2	0.8	11.9	2401

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2023년 지역·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률」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권역 통합은 또한 특정 대학 출신의 지역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 중 상위 2~4개 대학의 채용 비중이 전체 70~86%⁷⁾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소재 대학 이전지역인재채용 비중(2018~2023)]

(단위: 개, 명, %)

지역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규모	채용규모 상위대학		
			대학수	규모	비중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147	2	118	70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283	2	243	86
대구	신용보증기금	211	2	147	70
경북	한국도로공사	286	2	236	83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681	2	525	77
전북	국민연금공단	280	1	208	74
충청권	한국가스안전공사	148	4	111	75
강원	한국관광공사	45	2	36	80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2024.2.19. 2p 재인용

7)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2024.2.19.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함) 제24조의 2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임명 목표 수립 및 이행 의무를 규정하면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공공기관 운영법」 상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상의 여성임원 임명 노력 의무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여성이 임원 직위에 선임되는 데 제도적, 사실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제34조),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할 의무(제43조)를 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상 여성 임원 선임 관련 규정]

구분	규정 내용
제9조 (인사 운영의 기본원칙)	3.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지방인재·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이 되도록 노력
제34조 (임원선임의 원칙)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장애인·지역인재·여성·청년 등이 임원 직위에 선임되는 데 제도적, 사실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임원 구성 시에 다양한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의 평가지표로서 양성평등실현 내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경영관리 범주		
안전 및 책임경영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세부평가 내용	④ 여성임원·관리자 및 여성채용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른 목표 및 이행계획 적정성, 목표대비 실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등 * 임원: 본부직제상 기관장·이사·감사 관리자: 본부직제상 부서장 임용이 가능한 직급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2023년 12월), p.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165조의20에서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
 - 이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에 최소 1인의 여성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중 4개 공기업¹⁾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음

[「자본시장법」 상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제165조의20(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주)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나. 주요 쟁점²⁾

-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여성임원 임명 비율이 저조하고, 경영지침 상 여성 임원 비율 20% 준수 노력 의무가 적용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오히려 여성임원 비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공공기관(327개)의 53.2%에 해당하는 174개 공공기관이 여성 임원비율 20%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기관 분류로 살펴보면, 여성임원 비율 20%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25개, 준정부기관은 33개, 기타공공기관은 116개임
 -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78.1%, 준정부기관의 60%에 해당하는 기관이 여성임원 비율 2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여성임원 비율 20% 이상 기준 미준수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기관 수(A)	여성임원 비율 20% 미만 기관 수(B)	여성임원 비율 20% 미만 기관 비중(B/A)
공기업	32	25	78.1
준정부기관	55	33	60.0
기타공공기관	240	116	48.3
전체	327	174	53.2

주: 여성임원 현황은 2024년 2분기 현원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또한 전체 327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총 59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약 18% 비중을 차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42개임

2) 본 분석의 기관별 여성임원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상의 기관별 2024년 2분기 현원을 기준으로 함

[여성임원이 없거나 임원비율 20% 이하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단위: 개)

구분	여성임원이 없는 기관	여성임원 비율 20% 이하 기관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0	25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33
기타 공공기관	42	116
합계	59	174

주: 여성임원 현황은 2024년 2분기 현원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 운영법」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의 경우 각 기관별로 수립한 목표 수준 자체가 낮거나,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조함
 - 「공공기관 운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여성 임원임명과 관련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실제로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87개 기관)이 제출한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관별로 수립한 2023년도 여성 임원 임명 목표치 자체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의 권고 기준인 20%에 미달하는 기관이 18개이고, ② 자체적으로 수립한 2023년도 여성 임원 임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도 51개로 나타남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3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 설정 및 미달성 현황]
(단위: 개)

구분	여성임원 임명 목표치가 20% 미만으로 설정된 기관	2023년도 여성임원 임명 자체 수립 목표 미달성 기관
공기업 (32)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주)
	7	25

(단위: 개)

구분	여성임원 임명 목표치가 20% 미만으로 설정된 기관	2023년도 여성임원 임명 자체 수립 목표 미달성 기관
준정부 기관 (55)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근로복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11	26
합계	18	51

주: 기관별 2023년도 수립 목표 및 달성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또한 여성 임원이 기관장, 상임 이사, 상임 감사 등의 상임직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는 더욱 저조함

- 2024년 기준 전체 327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여성인 기관은 23개³⁾로 전체 공공기관의 약 7.0%임
 - 공공기관 분류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21개
- 또한 공공기관에서 여성임원을 임명하더라도 대부분의 역할이 외부인사인 비상임직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327개 공공기관의 752명의 여성임원 중 기관장직을 포함한 상임직에 임명된 여성임원은 총 50명으로 전체 6.6%에 불과하고, 비상임직에 임명된 여성임원이 전체 여성임원의 93.1%의 비중을 차지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동북아역사재단, 세종학당재단, 정부법무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식진흥원

[전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기타	합계
인원	23	27	700	2	752
(비중)	(3.0)	(3.6)	(93.1)	(0.3)	(100.0)

주: 2024년 2분기 현원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공기업의 경우 여성 이사를 두고 있으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음

- 2024년 기준 327개 공공기관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4개 공기업임
- 4개 공기업 모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두고 있어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규정을 준수하고는 있으나, 여성 구성 비율 자체는 낮음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이사회의 여성 인원이 각각 2명, 3명으로 그 비율이 20% 이상인 반면, (주)강원랜드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 중 여성이 1명으로 「자본시장법」 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여성이사 비중이 각각 7.7%, 7.1%로 매우 낮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적용을 받는 공기업 이사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기관명	구분	이사회 구성		
		남성	여성	전체
(주)강원랜드	인원	12	1	13
	비중	92.3	7.7	100.0
한국전력공사	인원	13	1	14
	비중	92.9	7.1	100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원	8	2	10
	비중	80	20	100
한국가스공사	인원	10	3	13
	비중	76.9	23.1	100.0

주: 2024. 8월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 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 중임
 -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의무고용률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함
 -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불이행 기관 및 기업은 명단을 공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3.8%임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19~2024)]

(단위: %)

구분		2019~2021	2022~2023	202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4	3.6	3.8
	비공무원	3.4	3.6	3.8
공공기관		3.4	3.6	3.8
민간기업		3.1	3.1	3.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2023년 평균 3.93%로, 2023년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3.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유형별로 기타공공기관이 3.59%로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형 공기업은 3.93%, 준시장형 공기업은 4.1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4.02%임

[공공기관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단위: 명, %, %p)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증감 (B-A)	
공기업	의무고용인원	4,973	5,080	5,117	5,445	5,390	417	
	고용인원	5,070	5,716	5,643	5,834	6,070	1,000	
	고용률	3.45	3.81	3.74	3.84	4.04	0.59	
시장형	시장형	의무고용인원	2,188	2,219	2,287	2,387	2,363	175
		고용인원	2,156	2,308	2,364	2,477	2,585	429
		고용률	3.34	3.53	3.5	3.72	3.93	0.59
	준시장형	의무고용인원	2,785	2,861	2,830	3,058	3,027	242
		고용인원	2,914	3,408	3,279	3,357	3,485	571
		고용률	3.55	4.03	3.93	3.94	4.13	0.58
준정부기관	의무고용인원	4,114	4,487	4,356	4,654	4,241	127	
	고용인원	4,709	5,416	5,657	5,785	5,100	391	
	고용률	3.84	4.06	4.36	4.43	4.3	0.46	
기타공공기관	기금관리형	의무고용인원	1,022	1,007	1,039	1,084	1,071	49
		고용인원	1,164	1,221	1,179	1,294	1,202	38
		고용률	3.85	4.1	3.83	4.27	4.02	0.17
	위탁집행형	의무고용인원	3,092	3,480	3,317	3,570	3,170	78
		고용인원	3,545	4,195	4,478	4,491	3,898	353
		고용률	3.84	4.05	4.53	4.47	4.4	0.56
기타공공기관	의무고용인원	5,015	5,382	5,852	6,254	6,469	1,454	
	고용인원	3,768	4,225	6,069	6,183	6,582	2,814	
	고용률	2.51	2.62	3.47	3.50	3.59	1.08	
전체	의무고용인원	14,102	14,949	15,325	16,353	16,100	1,998	
	고용인원	13,547	15,357	17,369	17,802	17,752	4,205	
	고용률	3.23	3.46	3.81	3.88	3.93	0.70	

주: 1. 2024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각 연도말 기준임
 3.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은 중증2배수제 적용
 4. 장애인고용률은 구분별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을 구분별 전체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주요 쟁점

- 2023년 말 기준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총 88개 기관
 - 공공기관 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 2개, 준시장형 공기업 4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74개 기관임
 - 2023년 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인 기관은 APEC기후센터,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7개 기관임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2023년)]

(단위: 개, %)

유형		기관명
공기업 (6)	시장형(2)	한국공항공사(3.53), 한국전력공사(3.46)
	준시장형(4)	(주)한국가스기술공사(3.16), 한국광해광업공단(2.64), 그랜드코리아레저(주)(3.41), 한국전력기술(주)(3.32)
준정부 기관 (8)	기금관리형(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19)
	위탁집행형(7)	(재)우체국금융개발원(3.15), 우체국물류지원단(3.05), 한국국제협력단(3.14), 한국국토정보공사(2.5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3.25), 한국산업인력공단(3.49), 한국전기안전공사(2.94)
기타공공기관(74)		(재)APEC기후센터(0.0),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0.0), 국립박물관문화재단(0.0), 영상물등급위원회(0.0), 한국문화정보원(0.0), 한국제품안전관리원(0.0), 한국항로표지기술원(0.0)
		기초과학연구원(0.91), 세종학당재단(0.34),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0.5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0.95), 한국기상산업기술원(0.7), 한국원자력의학원(0.76), (재)한국통계정보원(0.79)
		(재)예술경영지원센터(1.43), 국방과학연구소(1.53), 국방기술품질원(1.56), 국제식물검역인증원(1.4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73), 대한체육회(1.5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18), 서울대학교치과병원(1.72),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1.12),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1.53),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1.6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55), 한국보건의료정보원(1.22), 한국산업은행(1.9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64), 한국원자력안전재단(1.09),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19), 한국지식재산보호원(1.94), 한국투자공사(1.92), 한국해양과학기술원(1.36)

(단위: 개, %)

유형	기관명
	(주)공영흡쇼핑(2.43), (재)국제방송교류재단(2.17), (재)우체국시설관리단(2.62), 건축위생방역지원본부(2.3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2.76), 경북대학교병원(2.19), 경북대학교치과병원(2.58),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2.69), 국립중앙의료원(2.63), 부산대학교병원(2.94), 서울대학교병원(2.69), 전남대학교병원(2.2), 전북대학교병원(2.63), 충남대학교병원(2.92), 충북대학교병원(2.28), 태권도진흥재단(2.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2.85), 한국국방연구원(2.8), 한국국제교류재단(2.7),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2.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2.86), 한국문화예술위원회(2.74), 한국수산자원공단(2.84), 한국수출입은행(2.3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2.7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03), 한국재정정보원(2.9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11), 한전엠씨에스(주), 한전원자력원료(2.25) 강원대학교병원(3.32), 경상국립대학교병원(3.3), 국립해양생물자원관(3.08), 대한법률구조공단(3.33), 대한적십자사(3.38), 서민금융진흥원(3.33), 제주대학교병원(3.07), 중소기업은행(3.48), 코레일로지스(주)(3.16), 코레일유통(주)(3.22)

주: 1. 연도말 기준

2. 2024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준은 고용의무인원의 총족 여부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총 47개 기관

- 공공기관 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 1개,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 기타공공기관 43개 기관임
- 장애인고용률 5년 평균 2.0%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
 - (재)APEC 기후센터(0.00), 한국통계정보원(0.33), 한국문화정보원(0.54), 태권도진흥재단(0.66), 한국원자력안전재단(0.67), 기초과학연구원(0.68), (재)예술경영지원센터(0.73), 한국원자력의학원(0.81), 국립박물관문화재단(0.85),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0.89),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0.89) 등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2019~2023)]

(단위: 개, %)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평균
공기업	시장형(1)	한국전력공사	3.09	3.27	3.12	3.57	3.46	3.30
	준시장형(1)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35	2.26	2.65	3.04	3.15	2.69
준정부 기관	위탁	우체국금융개발원	3.15	3.06	2.47	2.99	3.15	2.96
	집행형(2)	한국국토정보공사	2.5	2.71	2.73	2.76	2.58	2.66
기타 공공기관 (43)		(재)APEC기후센터	0	0	0	0	0	0.00
		(주)공영홈쇼핑	2.79	2.59	2.43	2.28	2.43	2.5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0	0	2.2	0	1.43	0.73
		(재)우체국시설관리단	2.56	2.95	2.88	2.75	2.62	2.7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15	2.59	2.47	2.64	2.37	2.64
		강원대학교병원	2.86	2.69	2.54	3.52	3.32	2.99
		경북대학교병원	1.06	1.84	2.18	2.22	2.19	1.90
		경북대학교치과병원	1.2	1.81	2.33	2.17	2.58	2.02
		국립박물관문화재단	0.82	0.88	1.17	1.38	0	0.85
		국립중앙의료원	3.13	2.64	3.08	2.54	2.63	2.80
		국방과학연구소	1.62	1.56	1.49	1.51	1.53	1.54
		국방기술품질원	1.03	1.1	0.98	1.26	1.56	1.19
		기초과학연구원	0.55	0.43	1.07	0.43	0.91	0.68
		대한체육회	2.15	2.45	2.88	1.94	1.51	2.19
		부산대학교병원	2.82	3.01	2.68	2.85	2.94	2.86
		서울대학교병원	1.75	2.06	2.16	2.58	2.69	2.25
		세종학당재단	1.06	0.91	1.59	1.18	0.34	1.02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0.98	1.71	1.64	1.61	1.53	1.49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0.71	0.62	0.53	2.06	0.53	0.89
		전남대학교병원	2.53	2.39	2.27	2.3	2.2	2.34
		전북대학교병원	2.6	2.35	2.43	2.81	2.63	2.56
		제주대학교병원	2.4	3.08	2.66	3.52	3.07	2.95
		중소기업은행	2.9	3.09	3.38	3.44	3.48	3.26
		충남대학교병원	1.77	1.49	2.97	2.81	2.92	2.39
		충북대학교병원	1.9	1.47	2.24	2.48	2.28	2.07
		코레일로지스(주)	1.41	2.03	2.24	2.79	3.16	2.33
		태권도진흥재단	0	0	0	1.16	2.13	0.6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81	0.97	0.96	1.69	0.95	1.08

(단위: 개, %)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평균
	한국국방연구원	1.96	1.9	1.71	3.19	2.8	2.3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0	0	1.18	1.04	2.25	0.8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7	0.72	2.07	1.85	2.74	1.69
	한국문화정보원	1.41	1.3	0	0	0	0.5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71	2.31	2.17	1.53	1.81	2.11
	한국산업은행	1.51	2.07	1.96	2.04	1.94	1.90
	한국수출입은행	2.37	2.78	2.27	2.33	2.39	2.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2.26	1.51	1.37	1.64	1.96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0	1.15	1.11	1.09	0.67
	한국원자력의학원	0.64	0.9	0.9	0.87	0.76	0.8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5	1.46	2.56	2.68	2.72	2.18
	(재)한국통계정보원	0	0	0	0.88	0.79	0.33
	한국투자공사	1.48	2.95	2.64	2.31	1.92	2.2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3	1.33	1.16	1.22	1.36	1.32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24	2.37	2.07	2.34	2.25	2.25

- 주: 1. 2019~2021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4%, 2022~2023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6%
 2.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기준은 고용의무인원의 충족 여부
 3. 2024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4. 볼드처리한 기관은 2019~2023년 장애인고용률이 2.0% 미만인 기관임
 5. 연도말 기준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장애인고용률이 3.6%(2022~2023년) 미만인 경우 사전예고대상이 되며, 이후 장애인고용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공표¹⁾에서 제외됨
 - 2023년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관(2022년 기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없으나, 2024년 1월에 공공기관 지정해제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기관으로 공표됨

1) 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기관·기업 공표는 2022년도 기준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표로, ①공표 대상임을 사전 예고하고 ②이행지도 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노력을 기울인 곳은 제외하며, ③최종 대상을 확정하함. 공공기관의 사전예고 기준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3.6% 미만(전년도 월평균 의무고용률의 100%)

□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달 되는 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계산하여 납부액을 산정²⁾
- 2023년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92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900만원 감소
 - 기타공공기관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으며(47억 7,100만원 감소), 준시장형 공기업도 13억 8,400만원 감소
 - 시장형 공기업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시장형 공기업 1억 4,200만원 증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억 2,300만원 증가)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2019~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액 (B-A)
공기업	4,733	4,715	3,345	3,461	2,219	△1,242
시장형	1,842	1,539	1,032	695	837	142
준시장형	2,891	3,176	2,313	2,765	1,381	△1,384
준정부기관	3,018	3,140	1,144	1,627	2,115	487
기금관리형	707	665	179	253	218	△36
위탁집행형	2,311	2,475	966	1,374	1,897	523
기타공공기관	14,769	14,773	13,514	15,534	14,890	△4,771
전체	22,520	22,628	18,003	20,622	19,223	△1,399

주: 1. 2024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연도말 기준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말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47개 기관이 총 192억 2,300만원을 납부함
 - 가장 많이 납부한 공공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23억 6,200만원 납부함
 -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전남대학교병원(10억 6,100만원), 경북대학교병원(7억 8,900만원), 충북대학교병원(4억 4,600만원), 충남대학교병원(4억 5,400만원), 전북대학교병원(4억 1,200만원) 등 국립대학병원의 부담금 납부액이 크게 나타남

2) 월 단위로 산정하므로 장애인고용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2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납부 기관수	납부액	기관명(금액)
공기업	16	2,219	-
시장형	3	837	한국전력공사(417), ㈜강원랜드(370), 한국공항공사(50)
준시장형	13	1,381	한국토지주택공사(582), 한국수자원공사(190), 한국전력기술(주)(180) 등
준정부기관	19	2,115	-
기관관리형	7	218	신용보증기금(89) 예금보험공사(26)등
위탁집행형	12	1,897	한국국토정보공사(561), 한국전기안전공사(47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12) 우체국물류지원단(194) 등
기타공공기관	112	14,890	서울대학교병원(2,364), 국방과학연구소(1,280), 전남대학교병원(1,061), 한국원자력의학원(889), 경북대학교병원(789), 한국산업은행(7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770), 기초과학연구원(486), 충남대학교병원(454), 충북대학교병원(446), 국방기술품질원(412), 전북대학교병원(412) 등
전체	147	19,223	-

주: 1. 2024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연도말 기준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최근 5년간(2019~2023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누적액은 1,029억 9,500만원이며, 서울대학교병원이 133억 7,200만원(13.0%)으로 가장 많이 납부함

-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누적액이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 5개(시장형 2개, 준시장형 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16개로 총 24개 기관임
- 24개 기관의 5년간 납부누적액이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누적액의 71%를 차지함
- 최근 5년간 납부액이 증가한 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5억 1,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4억 8백만원), 국방과학연구소(3억 5,30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1억 5,700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억 3,20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1억원)로 11개 기관임

[장애인고용부담금 5년 누적납부액 10억원 이상 기관]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유형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5년 누적액	증감 (b-a)
서울대학교병원	기타	2,763	2,748	2,694	2,803	2,364	13,372	△399
국방과학연구소	기타	927	1,032	994	1,242	1,280	5,476	353
경북대학교병원	기타	976	1,008	781	789	789	4,342	△187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	915	854	689	882	889	4,229	△26
전남대학교병원	기타	548	558	704	1,041	1,061	3,912	513
한국산업은행	기타	866	846	611	720	774	3,817	△92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777	581	739	1,087	582	3,767	△195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849	940	792	342	417	3,340	△432
충남대학교병원	기타	527	953	565	515	454	3,015	-7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	362	477	573	691	770	2,874	408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집행형	404	502	420	500	561	2,386	157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475	626	703	350	190	2,344	△285
기초과학연구원	기타	421	454	430	491	486	2,283	65
충북대학교병원	기타	347	509	585	396	446	2,283	99
중소기업은행	기타	989	628	31	305	203	2,156	△786
국방기술품질원	기타	322	370	404	459	412	1,966	90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379	542	289	464	46	1,719	△333
전북대학교병원	기타	343	303	328	301	412	1,686	69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집행형	373	397	102	318	473	1,663	100
(주)강원랜드	시장형	543	271	230	233	370	1,647	△17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	280	444	56	270	412	1,461	132
부산대학교병원	기타	356	166	191	303	257	1,273	△99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기타	274	134	168	235	307	1,117	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261	294	297	152	20	1,024	△241
소계(A)		15,277	15,637	13,376	14,889	13,975	73,152	△1,302
전체 공공기관 납부액(B)		22,520	22,628	18,003	20,622	19,223	102,995	△3,297
비중(A/B)		67.8	69.1	74.3	72.2	72.7	71.0	-

주: 5년 누적납부액 큰 순위로 정렬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³⁾의 경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따라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가 수지차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5개 기관은 지출예산에서 수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2억 9,500만원이며 장애인고용을 위반으로 인해 국가의 비용 보전이 이루어짐⁴⁾
- 법 위반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비용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관 자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음

[수지차 보전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2019~2023)]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A)	2023(B)	5년 누적액
국민체육진흥공단	0	0	0	9	7	16
한국소비자원	4	0	0	0	5	9
한국산업인력공단	40	0	0	0	4	4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	0	16	7	11	3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47	0	3	0	19	69
국립박물관문화재단	49	29	53	64	51	247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7	0	0	0	6	2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부존재	부존재	0	3	30	33
대한법률구조공단	63	33	17	3	19	136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1	33	7	5	13	8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	17	24	21	27	8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	0	0	27	4	3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5	33	39	103	127	31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9	8	4	20	23	7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0	16	36	41	5	98
합계	291	171	200	303	329	1,295

주: 1. 2024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연도말 기준

3. 부존재의 경우 고용의무 비대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자료 부존재 의미

4. 단위 조정에 따른 단수 차이 발생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수지차 보전기관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출연 또는 보조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함

4)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일부기관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비용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9~2023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액(누적)은 309억 5,100만원임

-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기타공공기관이 263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수급했으며, 시장형 공기업이 31억 6,600만원을 수급함
 -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가장 많이 수급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총 221억 3,000만원을 수급함
- 2023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이 수급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63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500만원 증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2억 3,200만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시장형 공기업도 1억 1,900만원 증가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 현황(2019~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5년 누적액
공기업	266	1,138	1,584	54	176	122	3,218
시장형	264	1,138	1,553	46	165	119	3,166
준시장형	2	-	31	8	11	3	52
준정부기관	49	141	444	230	509	279	1,374
기금관리형	19	30	111	22	70	48	252
위탁집행형	30	111	334	208	440	232	1,122
기타공공기관	2,891	6,192	6,082	5,570	5,624	54	26,359
전체	3,206	7,472	8,110	5,854	6,309	455	30,951

- 주: 1. 2024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장려금 지급은 기준연도 기준(실제 지급한 회계연도가 아닌 장려금 지급사유 발생 연도)
 3. 단위 변환에 따른 반올림으로 단수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54개 기관이 총 63억 1,000만원을 수급함
 - 가장 많이 수급한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48억 3,600만원을 수급함
 - 유형별로, 공기업은 4개 기관이 1억 7,600만원, 준정부기관은 20개 기관이 5억 1,000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급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30개 기관이 56억 2,400만원을 수급

[202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수급 기관수	수금액	기관명(금액)
공기업	4	176	-
시장형	2	165	한국남동발전(주)(106), 한국동서발전(주)(59)
준시장형	2	11	한국부동산원(9), 주식회사 에스알(2)
준정부기관	20	510	-
기금관리형	2	70	기술보증기금(16), 한국주택금융공사(54)
위탁집행형	18	440	국민건강보험공단(228), 한국승강기안전공단(25), 한국에너지공단(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6) 등
기타공공기관	30	5,624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4,836), 대한장애인체육회(85), 한국장애인개발원(52), 한국저작권보호원(537) 등
전체	54	6,310	-

- 주: 1. 2024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장려금 지급은 기준연도 기준(실제 지급한 회계연도가 아닌 장려금 지급사유 발생 연도)
 3. 단위 변환에 따른 반올림으로 단수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 황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로 규정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할 것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6조 및 제68조에서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할 것을 명시

- 상기한 내용 중 일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역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각 기관의 징계 관련 인사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정직처분 대상자와 관련하여 49개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에도 불구하고 정직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처분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관리를 하였음

[공공기관 정직처분 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 인원	지급 금액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1	2,679	○ (2022.12.22.)
국립공원공단	2	3,991	○ (2024.3.8.)
국립생태원	2	5,004	○ (2023.6.21.)
국민건강보험공단	14	102,750	○ (2023.12.27.)
국방과학연구소	3	31,526	○ (2023.1.1.)
기술보증기금	6	42,003	X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3	10,655	○ (2023.10.5.)
대한적십자사	2	5,229	○ (2023.1.1.)
대한체육회	1	2,868	○ (2023.12.27.)
부산대학교병원	2	968	○ (2024.3.13.)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 인원	지급 금액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서울대학교병원	2	5,009	X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	3,562	X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12,035	X
신용보증기금	3	26,767	X
에너지경제연구원	1	417	X
예술의전당	1	791	X
전략물자관리원	1	10,697	X
전북대학교병원	1	1,519	X
제주대학교병원	1	4,068	X
주택관리공단(주)	3	12,137	X
중소기업은행	8	146,802	X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	7,087	X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8,202	O (2023.11.28.)
충북대학교병원	1	10,166	X
코레일네트웍스(주)	4	6,597	X
코레일테크(주)	4	7,343	O (2023.3.15.)
한국가스공사	4	37,579	X
한국고전번역원	1	5,084	O (2023.11.2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	3,706	O (2021.12.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14,878	X
한국나노기술원	1	7,713	X
한국도로공사	8	19,659	O (2024.1.29.)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7	27,677	O (2023.9.22.)
한국마사회	1	2,321	O (2022.7.2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	4,959	O (2023.2.2.)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 인원	지급 금액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한국부동산원	1	1,622	X
한국산업은행	3	18,009	X
한국석유공사	2	20,407	O (2023.9.2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904	O (2023.12.27.)
한국수자원공사	4	14,843	O (2022.10.31.)
한국언론진흥재단	1	4,205	X
한국원자력의학원	1	8,970	O (2023.1.25.)
한국자산관리공사	2	9,515	X
한국주택금융공사	1	6,593	O (2023.10.31.)
한국지역난방공사	1	12,826	O (2023.6.30.)
한국철도공사	14	35,551	X
한국토지주택공사	30	33,488	O (2023.9.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2,239	X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1,974	X

주: 1. 2023.1.1.~2024.7.31. 기준

2. 사유의 경중 및 내용 등과 무관하게 보수를 미지급한 경우에만 'O'로 표시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일부 공공기관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평가 시 최하위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액을 지급하였음

[징계대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였고, 관련 제도가 잔존한 공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부여 등급 및 인원
재산 관련 비위	한국전력기술(주)	S등급 1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S등급 1명
성 관련 비위	신용보증기금	A등급 1명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A등급 1명
	중소기업은행	1등급 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S등급 1명
	한국장애인개발원	A등급 1명
음주운전 관련 비위	신용보증기금	A등급 1명
	중소기업은행	2등급 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S등급 1명, A등급 3명
채용 관련 비위	국가철도공단	A등급 1명
	한국콘텐츠진흥원	S등급 1명, A등급 1명
	해양환경공단	A등급 1명

주: 1. 2019.1.1.~2024.7.31. 기준

2. 성과급의 범위에는 경영평가 성과급뿐만 아니라 내부평가급도 포함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징계대상자에게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성과급액을 지급한 공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부여 및 지급 내용	제도 개선여부 (개선일)
재산 관련 비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1,690천원 지급	○ (2022.12.29.)
	국립공원공단	S등급 2명, 성과급액 총 1,266천원 지급	○ (2024.5.17.)
	국립부산과학관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393천원 지급	○ (2021.3.31.)
	국민건강보험공단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110천원 지급	○ (2021.8.30.)
	대한석탄공사	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8,194천원 지급	X
	대한체육회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8,643천원 지급	○ (2022.12.26.)

구분	기관명	부여 및 지급 내용	제도 개선여부 (개선일)
	신용보증기금	B등급 2명, 성과급액 총 1,459천원 지급	X
	우체국물류지원단	A 1명, B 2명, 성과급액 총 6,101천원 지급	O (2023.10.5.)
	중소기업은행	3등급 1명, 성과급액 총 7,943천원 지급	X
	코레일유통(주)	B 3명, C+D 1명, 기타 1명, 성과급액 총 43,405천원 지급	O (2023.11.16.)
	한국가스공사	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7,656천원 지급	O (2022.7.27.)
	한국국토정보공사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5,315천원 지급	O (2021.8.17.)
	한국마사회	기타 1명, B 2명, D 1명, 성과급액 총 67,387천원 지급	O (2022.9.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C등급 1명, 성과급액 미지급	O (2022.2.28.)
	한국석유공사	등급 없음 2명, 성과급액 총 5,780천원 지급	O (2023.9.26.)
	한국수력원자력(주)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6,984천원 지급	O (2020.12.16.)
	한국수자원공사	B 1명, C 4명, D 11명, 미확정 1명, 성과급액 총 340,978천원 지급	O (2022.10.31.)
	한국자산관리공사	C/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5,871천원 지급	X
	한국전력기술(주)	S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2,013천원 지급 (최하위 등급 부여 없이 감점 조치만 시행)	X
	한국지역난방공사	A 2명, B 4명, C 1명, 성과급액 총 41,132천원 지급	O (2021.12.2.)
	한국토지주택공사	C/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6,751천원 지급	O (2022.8.3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S 1명, B 1명, 성과급액 총 23,785천원 지급	X
	한국환경보전원	A 3명, B 4명, 성과급액 총 54,387천원 지급	O (2021.2.26.)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A 1명, B 1명, 성과급액 총 27,878천원 지급	O (2021.3.9.)
성 관련 비위	88관광개발(주)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706천원 지급 ※ 평가예외자: 임금피크제 대상자 1명	O (2022.12.27)

구분	기관명	부여 및 지급 내용	제도 개선여부 (개선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9,800천원 지급	○ (2022.12.29.)
	(주)강원랜드	B/C 1명, C/C 1명, 성과급액 총 23,659천원 지급	○ (2021.10.21.)
	국가철도공단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208천원 지급	○ (2020.12.22.)
	국립공원공단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117천원 지급	○ (2024.5.17.)
	국립생태원	B 2명, D 1명, 성과급액 총 20,160천원 지급	○ (2023.6.21.)
	국민건강보험공단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956천원 지급	○ (2021.8.30.)
	국민연금공단	A등급 1명, 성과급액 총 933천원 지급	○ (2020.12.29.)
	국방과학연구소	1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9,638천원 지급	○ (2022.1.1.)
	국방기술품질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3,552천원 지급	○ (2020.12.22.)
	국제방송교류재단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498천원 지급	○ (2020.12.29.)
	국토안전관리원	1명, 성과급액 총 796천원 지급	○ (2021.7.29.)
	국토연구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미지급	X
	기초과학연구원	B+등급 1명, 성과평가 미실시 1명, 성과급액 총 5,560천원 지급	X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3,288천원 지급	○ (2020.12.2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 2명, C 1명, 성과급액 총 73,771천원 지급	○ (2022.3.23.)
	대한법률구조공단	B등급 1명, 3등급 1명, 성과급액 4,434천원 지급	○ (2021.4.1.)
	독립기념관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5,169천원 지급	○ (2021.12.14.)
	새만금개발공사	B 1명, C 1명, 성과급액 총 19,924천원 지급	○ (2021.11.23.)
	식품안전정보원	C등급 1명, 성과급 지급 내역 없음	X

구분	기관명	부여 및 지급 내용	제도 개선여부 (개선일)
	신용보증기금	A 1명, B 4명, C 1명, 성과급액 총 20,006천원 지급	X
	에너지경제연구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4,178천원 지급	X
	우체국물류지원단	A 1명, B 1명, C 1명, 성과급액 총 2,716천원 지급	O (2023.10.5.)
	인천국제공항공사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9,132천원 지급	O (2024.1.24.)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A등급 1명(2건), 성과급액 미지급	X
	중소기업은행	1등급 1명, 성과급액 총 5,818천원 지급	X
	학교법인한국폴리텍	B 3명, C 1명, 성과급액 총 8,152천원 지급	O (2023.7.18.)
	한국가스공사	D등급 5명, 성과급액 총 43,359천원 지급	O (2022.7.2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501천원 지급	X
	한국공항공사	A 1명, D 1명, 성과급액 총 40,715천원 지급	O (2022.2.9.)
	한국관광공사	S 1명, C 1명, D 1명, 성과급액 총 67,196천원 지급	O (2021.4.14.)
	한국교육개발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미지급	X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7,168천원 지급	X
	한국국제교류재단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5,042천원 지급	O (2022.12.7.)
	한국국토정보공사	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650천원 지급	O (2021.8.17.)
	한국도로공사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4,858천원 지급	O (2021.4.28.)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4,689천원 지급	O (2023.10.4.)
	한국디자인진흥원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4,301천원 지급	O (2021.9.16.)
	한국마사회	S 1명, B 2명, D 2명, 기타 1명, 성과급액 총 65,075천원 지급	O (2022.9.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A등급 1명, 성과급액 총 3,252천원 지급	O (2021.2.24.)

구분	기관명	부여 및 지급 내용	제도 개선여부 (개선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B등급 2명, 성과급액 총 1,854천원 지급	○ (2021.12.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등급 3명, 성과급액 총 7,851천원 지급	X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S 2명, D 1명, 성과급액 총 10,216천원 지급	○ (2021.5.28.)
	한국부동산원	D/D/B 1명, 성과급액 총 10,300천원 지급	X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S 1명, B 1명, C 1명, 미부여 1명, 성과급액 총 12,234천원 지급	○ (2023.10.18.)
	한국산업인력공단	D등급 2명, 성과급액 총 4,420천원 지급	○ (2021.10.28.)
	한국서부발전(주)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5,227천원 지급	○ (2021.2.3.)
	한국석유공사	등급 없음 1명, 등급 미정 2명, 성과급액 총 44,376천원 지급	○ (2023.9.26.)
	한국세라믹기술원	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0,909천원 지급	X
	한국수력원자력(주)	A 1명, C 2명, 수 등급 4명, 우 등급 1명, 성과급액 총 98,022천원 지급	○ (2020.12.16.)
	한국수자원공사	B 5명, C 3명, D 4명, 미확정 1명, 성과급액 총 215,511천원 지급	○ (2022.10.3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3,123천원 지급	○ (2021.2.26.)
	한국언론진흥재단	B등급 2명, 성과급액 총 2,501천원 지급	X
	한국여성인권진흥원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3,838천원 지급	○ (2023.12.21.)
	한국자산관리공사	B/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1,288천원 지급	X
	한국장애인개발원	A 1명, C 1명, 성과급액 총 1,599천원 지급	X
	한국장애인고용공단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872천원 지급	○ (2020.12.29.)
	한국장학재단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2,539천원 지급	○ (2022.5.4.)
	한국전력기술(주)	B 1명, C 1명, 성과급액 총 15,993천원 지급 (최하위 등급 부여 없이 감점 조치만 시행)	X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B등급 3명, 성과급액 총 6,594천원 지급	○ (2022.2.8.)
	한국지역난방공사	B등급 2명, 성과급액 총 640천원 지급	○ (2021.12.2.)

구분	기관명	부여 및 지급 내용	제도 개선여부 (개선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등급 1명, 성과급액 총 5,344천원 지급	O (2022.12.26.)
	한국철도공사	C 1명, D 1명, 성과급액 총 22,472천원 지급	O (2023.4.28.)
	한국콘텐츠진흥원	A 1명, C 1명, 성과급액 총 2,326천원 지급	O (2023.11.24.)
	한국한의학진흥원	C등급 2명, 성과급액 총 3,556천원 지급	X
	한국해양진흥공사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3,948천원 지급	O (2021.11.4.)
	한전KDN(주)	A 1명, B 1명, 성과급액 총 135,926천원 지급	O (2022.10.31.)
	한전KPS(주)	B 2명, C 1명, 성과급액 총 12,706천원 지급	O (2021.10.29.)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5,303천원 지급	O (2021.3.9.)
음주운전 관련 비위	(주)강원랜드	C/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3,164천원 지급	O (2021.10.21.)
	국립공원공단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271천원 지급	O (2024.5.1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132천원 지급	X
	국민건강보험공단	A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528천원 지급	O (2021.8.30.)
	국민연금공단	A 1명, B 1명, 성과급액 총 2,499천원 지급	O (2022.6.30.)
	국방과학연구소	1등급 3명, 2등급 5명, 성과급액 총 89,985천원 지급	O (2022.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5,036천원 지급	O (2023.12.27.)
	국토연구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미지급	X
	기초과학연구원	B+등급 2명, 성과급액 총 11,568천원 지급	X
	신용보증기금	A 1명, B 2명, C 1명, 성과급액 총 18,724천원 지급	X
	우체국물류지원단	A 1명, B 1명, C 1명, 성과급액 총 2,710천원 지급	O (2023.10.5.)
	중소기업은행	2등급 1명, 성과급액 총 897천원 지급	X
	학교법인한국폴리텍	S 1명, A 1명, B 2명, C 1명, 성과급액 총 12,724천원 지급	O (2023.7.18.)

구분	기관명	부여 및 지급 내용	제도 개선여부 (개선일)
	한국가스공사	C 1명, B 2명, 성과급액 총 31,548천원 지급	○ (2022.7.27.)
	한국고용정보원	'다'등급 1명, 성과급액 미지급	X
	한국공항공사	B 2명, C 1명, D 1명, 성과급액 총 46,121천원 지급	○ (2022.2.9.)
	한국관광공사	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2,687천원 지급	○ (2021.4.14.)
	한국국토정보공사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731천원 지급	○ (2021.8.1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A등급 1명, 성과급액 총 32,011천원 지급	○ (2021.4.30.)
	한국디자인진흥원	D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3,150천원 지급	○ (2021.9.1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A 1명, B 1명, 성과급액 총 6,981천원 지급	○ (2021.7.30.)
	한국산업단지공단	S등급 1명, 성과급액 총 6,361천원 지급	○ (2021.4.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S 1명, A 3명, B 9명, C 5명, 성과급액 총 44,227천원 지급	○ (2023.10.18.)
	한국석유공사	등급 미정 2명, 성과급액 총 37,739천원 지급	○ (2023.9.26.)
	한국석유관리원	C등급 1명, 성과급액 미지급	○ (2021.10.22.)
	한국세라믹기술원	D등급 4명, 성과급액 총 50,658천원 지급	X
	한국수력원자력(주)	우 등급 3명, 미 등급 1명, 성과급액 총 48,006천원 지급	○ (2020.12.16.)
	한국수자원공사	B 2명, C 1명, D 1명, 성과급액 총 43,620천원 지급	○ (2022.10.31.)
	한국수출입은행	3등급 1명, 성과급액 총 6,817천원 지급	X
	한국인터넷진흥원	B 1명, C 1명, 성과급액 총 12,063천원 지급	X
	한국장애인개발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043천원 지급	X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484천원 지급	○ (2020.12.29.)
	한국지역난방공사	A 2명, B 1명, C 1명, 성과급액 총 27,376천원 지급	○ (2021.12.2.)

구분	기관명	부여 및 지급 내용	제도 개선여부 (개선일)
	한국콘텐츠진흥원	A등급 1명, 성과급액 미지급	O (2023.11.24.)
	한전KDN(주)	A 6명, B 3명, C 2명, 성과급액 총 539,874천원 지급	O (2022.10.31.)
	한전KPS(주)	B 22명, C 11명, D 1명, 성과급액 총 94,992천원 지급	O (2021.10.29.)
채용 관련 비위	국가철도공단	A 1명, B 1명, D 1명, 성과급액 총 5,404천원 지급	X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3,395천원 지급	X
	국립해양과학관	C등급 2명, 성과급액 총 11,650천원 지급	X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B등급 2명, 성과급액 총 11,388천원 지급	X
	서민금융진흥원	B등급 2명, 성과급액 총 2,820천원 지급	O (2021.4.29.)
	중소벤처기업연구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902천원 지급	X
	한국가스공사	C등급 1명, 성과급액 총 9,753천원 지급	O (2022.7.27.)
	한국국토정보공사	B 1명, C 3명, D 1명, 성과급액 총 11,817천원 지급	O (2021.8.17.)
	한국기상산업기술원	B등급 2명, 성과급액 총 3,573천원 지급	X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B등급 2명, 성과급액 총 1,672천원 지급	X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미지급	X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S등급 1명, 성과급액 총 3,968천원 지급	O (2021.5.28.)
	한국산업단지공단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7,134천원 지급	X
	한국소방산업기술원	A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858천원 지급	O (2024.1.3.)
	한국수력원자력(주)	수 등급 1명, 성과급액 총 11,841천원 지급	O (2020.12.16.)
	한국수자원공사	B등급 4명, 성과급액 총 65,540천원 지급	O (2022.10.31.)
	한국장학재단	B 3명, C 1명, 성과급액 총 60,127천원 지급	O (2022.5.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A 2명, B 2명, C 2명, 성과급액 총 9,646천원 지급	O (2023.9.7.)	
한국콘텐츠진흥원	S 1명, A 1명, 성과급액 미지급	X	

구분	기관명	부여 및 지급 내용	제도 개선여부 (개선일)
	한국토지주택공사	C/D 1명, B/A 1명, B/D 1명, 성과급액 총 53,968천원 지급	O (2022.8.31.)
	한국한의학진흥원	B등급 2명, 성과급액 총 7,925천원 지급	X
	한국해양수산개발원	B등급 1명, 성과급액 총 2,178천원 지급	X
	해양환경공단	B 1명, A 1명, 성과급액 총 56,295천원 지급	X

주: 1. 2024.7.31. 기준 관련 지침이 개선되었어도, 2019년 이후 성과급을 지급하였거나 최하위보다 높은 성과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면 작성 대상에 포함하였음
 2. 성과급의 범위에는 경영평가 성과급뿐만 아니라 내부평가급도 포함
 3. 사유의 경중 및 내용 등과 무관하게 보수를 미지급한 경우에만 'O'로 표시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2개 공공기관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지 않았음
 -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은 2019년 이후 구성된 모든 징계위원회에서 위원 성별 구성이 편중되었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성별 구성이 편중된 기관 현황]
(단위: 건, %)

기관명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횟수(A)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미만이었던 횟수(B)	비율(B/A)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	1	33.3
국방과학연구소	7	4	57.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	1	50.0
대한적십자사	7	1	14.3
한국도로교통공단	8	4	50.0
예금보험공사	1	1	100.0
중소기업은행	7	7	100.0
코레일네트웍스(주)	2	2	100.0
한국가스공사	3	2	66.7

(단위: 건, %)

기관명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횟수(A)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미만이었던 횟수(B)	비율(B/A)
한국관광공사	3	2	66.7
한국남부발전(주)	1	1	100.0
한국농어촌공사	3	3	100.0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4	1	25.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2	3	25.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1	100.0
한국석유공사	3	1	33.3
한국수자원공사	14	5	35.7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	1	100.0
한국원자력의학원	5	3	60.0
한국토지주택공사	9	2	22.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1	50.0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3	1	33.3

주: 2019.1.1.~2024.7.31. 동안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기준으로 작성(재심 등 포함)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36개 공공기관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한 징계 과정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하지 않음

[재산 관련 징계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기관명	재산 관련 징계자 수	기관명	재산 관련 징계자 수
(주)강원랜드	2	한국마사회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7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
국민건강보험공단	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국민연금공단	1	한국산업은행	2
국방과학연구소	1	한국석유공사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	2

(단위: 명)


기관명	재산 관련 징계자 수	기관명	재산 관련 징계자 수
대한적십자사	1	한국수자원공사	23
한국도로교통공단	1	한국원자력의학원	3
새만금개발공사	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신용보증기금	2	한국인터넷진흥원	2
예금보험공사	1	한국자산관리공사	3
중소기업은행	25	한국전력거래소	1
코레일네트웍스(주)	3	한국전력공사	35
코레일로지스(주)	1	한국전력기술(주)	1
코레일유통(주)	5	한국중부발전(주)	6
한국가스공사	9	한국철도공사	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	한국콘텐츠진흥원	1
한국관광공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	3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
한국국제협력단	7	한국환경공단	10
한국국토정보공사	5	한국환경보전원	8
한국남동발전(주)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한국농어촌공사	15	한전KDN(주)	4
한국도로공사	11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

주: 1. 징계자 수의 경우 2019.1.1.~2024.7.31. 동안 징계 내용 등이 확정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

2. 2024.7.31. 현재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들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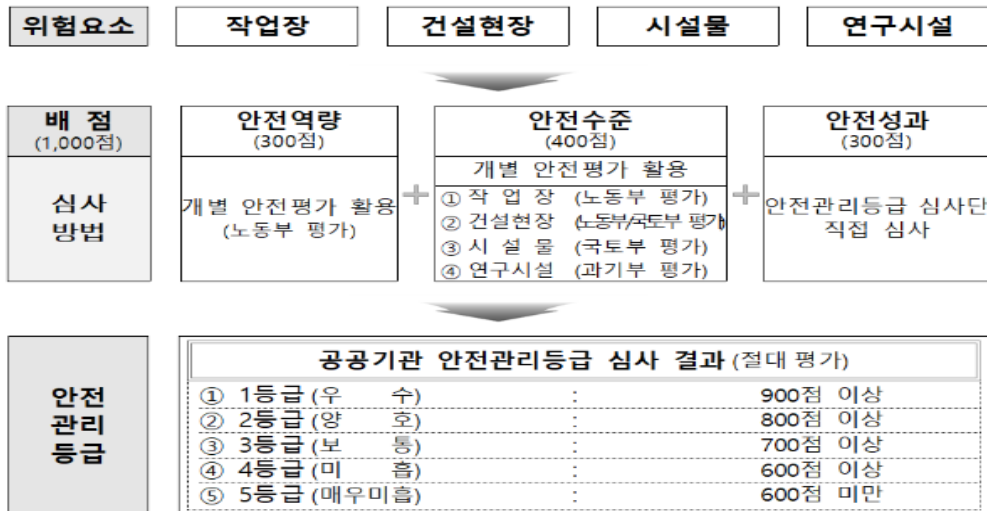


안전 분야

가. 현 황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¹⁾로 2020년부터 시행
-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사고율 감소를 목적으로 함
 -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보유 또는 운영하여 종사자 및 시설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을 심사(2023년 기준 90개 공공기관 심사)
 - 유형별: 공기업(27개), 준정부기관(23개), 기타공공기관(40개)
 -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실시 등 후속조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및 후속조치」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374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심사함

나. 주요 쟁점

-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는 2(양호) 등급 28개(31.1%), 보통(3등급) 58개(64.5%), 미흡(4등급) 4개(4.4%), 1등급(우수) 및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음
 - 2023년도는 2022년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 3개 증가, 미흡이하 기관 3개 감소
 - 시행 첫 해인 2020년 3(보통) 등급 이상(2·3등급) 비중이 66.4%에서 2023년 95.6%로 증가

[종합 안전관리등급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기관수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2020	98	-	8(8.2)	57(58.2)	31(31.6)	2(2.0)
2021	99	-	11(11.1)	59(59.6)	26(26.3)	3(3.0)
2022(A)	90	-	28(31.1)	55(61.1)	6(6.7)	1(1.1)
2023(B)	90	-	28(31.1)	58(64.5)	4(4.4)	-
증감(B-A)	-	-	-	3	△2	△1

주: 2022년도 기관수는 2023년 심사 제외기관(공공기관 지정해제 기관 및 부설기관) 미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및 후속조치」

-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는 평가 대상 90개 기관 중 86개 기관이 보통 이상 등급(2·3등급)에 해당
 -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27개 기관 모두 보통 이상(2·3등급)에 해당
 - 준정부기관은 심사대상 23개 기관 중 22개 기관이 보통 이상(2·3등급) 등급에 해당
 - 기타공공기관은 심사 대상 40개 기관 중 37개 기관이 보통(2·3등급)에 해당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단위: 개소)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명	개소	기관명	개소	기관명	개소
1등급	-		-		-	
2등급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9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5
3등급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8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8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22

(단위: 개소)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명	개소	기관명	개소	기관명	개소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4등급	-		한국에너지공단	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	3
5등급	-		-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보도자료

- 2022년 대비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의 변화가 이루어진 기관은 24개소로,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주)강원랜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14개소, 하락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10개 기관임

[2022년 대비 2023년 등급 변화(종합등급)]

(단위: 개소)

등급 상승		등급 하락	
기관명	개소	기관명	개소
(주)강원랜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석탄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	국민연금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10

등급 유지	
기관명	개소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근로복지공단, 기초과학연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코레일유통(주),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행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전KDN(주), 해양환경공단	66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4등급 이하(미흡 및 매우미흡)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새만금개발공사로 4개 기관임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첫 해부터 지속적으로 4(미흡)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새만금개발공사는 2022년 5(매우미흡) 등급에서 2023년 4(미흡)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
 - 한국에너지공단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2년 3(보통)등급에서 2023년 4(미흡) 등급으로 하락

[2023년 안전관리등급 4등급 이하 기관의 연도별 평가 등급]

(단위: 등급)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한국에너지공단	3(보통)	4(미흡)	3(보통)	4(미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4(미흡)	4(미흡)	4(미흡)	4(미흡)
시청자미디어재단	3(보통)	3(보통)	3(보통)	4(미흡)
새만금개발공사	-	-	5(매우미흡)	4(미흡)

주: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산재사고 미 발생,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 준수 등 안전성과 범주에 서는 양호하였으나, 실제 작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관리 활동이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등이 미흡

[2023년 안전관리등급 4등급 이하(미흡·매우미흡) 기관 현황]

(단위: 등급)

종합 등급	기관명	세부 심시기준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종합	작업장	건설 현장	시설물	연구 시설	
미흡 4등급	한국에너지공단	5	4	D	-	-	-	2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5	5	E	-	-	-	2
	시청자미디어재단	4	4	D	-	-	-	2
	새만금개발공사	5	5	-	E	-	-	3

주: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자료: 기관별 안전관리등급 결과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건설기계 등의 안전 검사²⁾ 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작업장(검사소 등) 안전수준은 5(매우미흡) 등급으로, 검사소의 안전수준 개선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작업장은 총 22개소로 본원 1개소 및 지역검사소 18개소(출장소 3개소)를 두고 있으며, 동 작업장에 대한 안전수준은 5(매우미흡) 등급으로 매우 취약
 - 건설기계 등의 안전검사를 통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의 검사,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의 안전수준이 매우 취약하고 오히려 2022년 4(미흡) 등급에서 하락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

(단위: 점, 등급)

범주	심사분야	안전수준 지표	배점	등급	
				'22	'23
안전수준 (400점)	작업장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40	C	D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C	D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80	D	D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E	D
		⑤ 수급업체 안전 보건 관리	100	E	E
			400	4	5

주: 1등급(A) 90점 이상, 2등급(B) 80점 이상, 3등급(C) 70점 이상, 4등급(D) 60점 이상, 5등급(E) 60점 미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와 성능평가, 형식승인·신고, 타워 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관리를 위탁받아 수행

□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 공시 필요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되고 있는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와 함께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보고서 함께 공시 필요
 - 안전관리등급의 세부 심사지표 중 하나인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의 측정지표인 안전경영책임보고서도 공시하고 있음
 -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보고서의 공시가 기관별로 상이함에 따라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와 함께 심사결과보고서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심사 결과 4(미흡)등급 기관의 경우 어떤 분야의 안전관리가 취약한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및 결과보고서 공시 현황(2023년 기준)]

기관명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결과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	유	무
시청자미디어재단	유	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유	유
새만금개발공사	유	유

주: 2024년 8월 19일 검색 기준, 2023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및 결과보고서 공시 유무
 자료: 기관별 홈페이지 검색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황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을 공시함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영의 사회(S) 부문의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1분기에 공시함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대분류	중분류	공시항목	기준	갱신주기
II. ESG운영	S(사회)	21.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관리현황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 안전사고 사망자수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안전관리등급	정기공시: 연1회(4월말) * 안전관리등급(7월말)

자료: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2023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30명, 최근 5년간(2019~2023년) 누적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76명¹⁾
 - 2020년 45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30명으로 4명 증가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사망자를 의미하며, 업무상 사고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산업재해 승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 발생기준과 산업재해 승인기준에 따라 연도별 사망자 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집계 유형별²⁾ 2023년도 산업재해 승인현황은 건설발주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25명, 83.3%), 최근 5년 누적 사망자 수도 건설발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148명, 84.1%)하였음
 - 2022년 대비 건설발주에서 6명, 도급에서 1명 증가하였으며, 직영에서 3명 감소함
- 공공기관 유형별 2023년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승인현황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17명 발생하여 전체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누적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46.0%(8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시장형 공기업은 2022년 대비 9명 증가, 준시장형 공기업은 6명이 감소하였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명 증가, 기타공공기관은 1명 감소

[연도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5년 누적	증감 (B-A)
공기업	소계	28	36	27	18	21	130	3
	건설발주	21	32	25	13	18	109	5
	도급	4	2	1	1	1	9	-
	직영	3	2	1	4	2	12	△2
시장형	소계	15	24	17	8	17	81	9
	건설발주	13	21	16	7	16	73	9
	도급	2	2	1	-	1	6	1
	직영	-	1	-	1	-	2	△1
준시장형	소계	13	12	10	10	4	49	△6
	건설발주	8	11	9	6	2	36	△4
	도급	2	-	-	1	-	3	△1
	직영	3	1	1	3	2	10	△1

2) 산업재해 사망자 집계 구분인 건설발주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사고사망자 수이며, 도급은 모든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임. 직영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함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5년 누적	증감 (B-A)
준정부기관	소계	6	7	8	4	6	31	2
	건설발주	6	7	7	4	6	30	2
	도급	-	-	1	-	-	1	-
	직영	-	-	-	-	-	-	-
위탁집행형	소계	6	7	8	4	6	31	2
	건설발주	6	7	7	4	6	30	2
	도급	-	-	1	-	-	1	-
	직영	-	-	-	-	-	-	-
기타공공기관	소계	2	2	4	4	3	15	△1
	건설발주	2	1	3	2	1	9	△1
	도급	0	0	0	1	2	3	1
	직영	0	1	1	1	0	3	△1
전체	소계	36 (100)	45 (100)	39 (100)	26 (100)	30 (100)	176 (100)	4 (100)
	건설발주	29 (80.5)	40 (88.9)	35 (89.7)	19 (73.1)	25 (83.3)	148 (84.1)	6 (150)
	도급	4 (11.1)	2 (4.4)	2 (5.1)	2 (7.7)	3 (10)	13 (7.4)	1 (25)
	직영	3 (8.3)	3 (6.7)	2 (5.1)	5 (19.2)	2 (6.7)	15 (8.5)	△3 (△75)

주: 5년 누적은 2019~2023년까지의 합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이며,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순으로 많이 발생함
 - 한국전력공사의 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9명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6명 발생하여 두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의 88.2%를 차지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모두 건설발주에서 발생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3명)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50.0% 차지
 - 한국농어촌공사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모두 건설발주에서 발생

[2023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승인) 기관]

(단위: 명)

구분	기관별 산업재해 발생(승인) 현황
시장형 공기업(17)	한국전력공사(9), 한국도로공사(6), 한국가스공사(1), 한국중부발전(주)(1)
준시장형 공기업(4)	한국철도공사(2), 한국토지주택공사(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	한국농어촌공사(3), 국가철도공단(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 한국환경공단(1)
기타공공기관(3)	국방과학연구소(2), 한국어촌어항공단(1)
합계	30

주: 산업재해 승인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인 10개 기관은 기관장 경고 조치 및 안전 관련 개선 계획 제출 등 경영실적 평가 후속조치가 취해짐
 - 경영실적 평가 후속조치가 취해진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
 -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2개 기관은 '24년 임명 및 공석으로 기관장 경고 조치 제외

-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승인)³⁾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이며,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으로 많이 발생함
-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최다 발생
 - 공공기관 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35명)와 한국전력공사(34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중이 최근 5년간 시장형 공기업 누적 사망사고자(81명)의 85.2% 차지
 -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29명)와 한국철도공사(10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중이 최근 5년간 준시장형 공기업 누적 사망사고자(49명)의 79.6% 차지
 - 준정부기관의 경우 지난 5년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만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31명), 한국농어촌공사(12명)와 국가철도공단(11명)이 74.2%를 차지함

[최근 5년 누적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승인) 기관]

(단위: 명)

구분	기관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승인) 현황
시장형 공기업 (81)	한국도로공사(35), 한국전력공사(34), 한국중부발전(주)(3), 한국수력원자력(주)(2), 한국가스공사(2), 한국공항공사(2), 인천국제공항공사(1), 한국남동발전(주)(1), 한국서부발전(주)(1)
준시장형 공기업 (49)	한국토지주택공사(29), 한국철도공사(10), 대한석탄공사(5), 한국수자원공사(3), 한전KPS(주)(1), 해양환경공단(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1)	한국농어촌공사(12), 국가철도공단(11), 한국환경공단(6), 국립공원공단(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
기타공공기관 (15)	국방과학연구소(3), 새만금개발공사(2), 한국수산자원공단(2), 한국어촌어항공단(2), 부산항만공사(1), 인천항만공사(1), 충남대학교병원(1), 한국국방연구원(1), 한국산업기술시험원(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1)
합계	176

주: 산업재해 승인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3) 산업재해 승인기준임

- 최근 5년간(2019~2023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승인)⁴⁾(10명 이상)한 주요 공공기관의 사망사고 승인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 기관인 한국도로공사(35명)는 건설발주에서 매년 8~9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2022년 3명으로 급감, 2023년 다시 6명으로 증가
 - 2023년 승인된 6건의 사고 사망은 작업차량(굴삭기) 전도 사고 1건, 부딪힘 사고 1건, 주행차량에 치임 사고(교통사고) 3건, 가설벤트 해체 중 벤트 전도 사고 1건임
 - 한국전력공사의 5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34명으로 이 중 31명이 건설발주에서 발생
 - 공사는 최근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9명 발생으로 전년 대비 5명 증가
 - 2023년 승인된 9건의 사고 사망은 부딪힘 3건, 감전 2건, 떨어짐 1건, 항공교통 1건 및 교통 1건임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5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29명으로 이 중 28명이 건설발주에서 발생하였으며, 2010년 10명 발생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3년 2명 발생
 - 2023년 승인된 2건의 사고 사망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맞음 사고 1건 및 떨어짐 사고 1건임
 - 한국농어촌공사의 최근 5년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2명으로 모두 건설발주에서 발생
 - 2023년 승인된 3건의 사고 사망은 철근 하차 중 로프 풀림으로 철근다발이 운전기사를 덮침에 따라 사고발생,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인부 확인 미흡으로 굴착기와 수로관 사이 협착에 따른 사고발생, 수상데크 안전난간 작업 중 익사사고로 발생함

4) 산업재해 승인기준임

- 국가철도공단의 최근 5년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1명으로 모두 건설발주에서 발생하였으며, 2020년 4명의 사망자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1명 발생
 - 2023년 승인된 사고 사망은 구조물 철거 현장에서 무너짐에 따라 발생
-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10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건설발주에서 4명, 직영에서 6명 발생
 - 2023년 승인된 2건의 사고 사망은 차량관리원 열차 끼임, 수송원 화차접촉사고에 따름⁵⁾

[기관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승인 기준) 현황]

(단위: 명)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누적
한국도로공사	건설발주	9	8	9	3	6	35
	도급	-	-	-	-	-	-
	직영	-	-	-	-	-	-
	소계	9	8	9	3	6	35
한국전력공사	건설발주	4	9	5	4	9	31
	도급	-	1	-	-	-	1
	직영	-	1	-	1	-	2
	소계	4	11	5	5	9	34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발주	4	10	6	6	2	28
	도급	-	-	-	1	-	1
	직영	-	-	-	-	-	-
	소계	4	10	6	7	2	29
한국농어촌공사	건설발주	1	3	2	3	3	12
	도급	-	-	-	-	-	-
	직영	-	-	-	-	-	-
	소계	1	3	2	3	3	12

5) 2023년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2년 발생한 2건이 2023년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정됨

(단위: 명)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누적
국가철도공단	건설발주	3	4	2	1	1	11
	도급	-	-	-	-	-	-
	직영	-	-	-	-	-	-
	소계	3	4	2	1	1	11
한국철도공사	건설발주	2	1	1	-	-	4
	도급	-	-	-	-	-	-
	직영	1	-	1	2	2	6
	소계	3	1	2	2	2	10
합계	건설발주	23	35	25	17	21	121
	도급	-	1	0	1	0	2
	직영	1	1	1	3	2	8
	소계	24	37	26	21	23	13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하였으나,⁶⁾ 최근 사고사망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사고사망자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⁷⁾ 사고사망자 다수 발생 기관의 안전성과 등급이 3(보통) 등급 이상(양호·보통)으로 나타남

- 안전관리등급제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안전역량) 구축을 통해 해당기관이 어떻게 위험 작업현장별로 안전활동을 이행(안전수준)하고, 그 결과 산재 사고율이 감소했는가(안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⁸⁾
 - 안전관리등급제는 안전역량(300점), 안전수준(400점), 안전성과(300점) 부문으로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

6)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도입(2020년 6월)

7) 안전관리등급제 도입전(2016~2019년) 평균 사고사망자 50명에서 도입 후 (2020~2023년) 평균 사고사망자가 36명으로 감소하여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고 예방에 안전관리등급제가 기여한 측면이 있음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발표,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및 후속조치」, 2021.8.26

- 사고사망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하위지표의 배점은 100점으로 다른 영역의 득점으로 만회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사고 발생기관에 대한 패널티 적용 미흡
- 다만, 업무특성상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이 있어 사망사고 감축 성과 관련 지표 배점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안전성과 세부지표 및 배점]

(단위: 점)

범주	안전성과 세부지표	배점
안전성과(300점)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	40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자료: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제 결과보고서

- 2023년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 기관인 한국전력공사(9명)는 2022년도 5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안전성과는 3(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2022년 3명에서 2023년 6명으로 사고사망자 발생이 증가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안전성과에서 2(우수)등급으로 나타남
 - 2022년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3년 1명씩 발생하여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역시 안전성과에서 2(양호)등급으로 나타남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기관의 안전관리등급 현황(2023년)]

(단위: 명, 등급)

기관명	사망자수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22	'23	종합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한국전력공사	5	9	3(보통)	3(보통)	3(보통)	3(보통)
한국도로공사	3	6	3(보통)	3(보통)	2(우수)	2(양호)
한국농어촌공사	3	3	3(보통)	4(미흡)	3(보통)	3(보통)
한국철도공사	2	2	3(보통)	4(미흡)	3(보통)	3(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	7	2	3(보통)	4(미흡)	3(보통)	3(보통)
국방과학연구소	-	2	3(보통)	4(미흡)	2(우수)	3(보통)
한국가스공사	-	1	3(보통)	3(보통)	3(보통)	3(보통)
한국중부발전(주)	-	1	3(보통)	3(보통)	3(보통)	3(보통)
국가철도공단	1	1	3(보통)	4(미흡)	3(보통)	3(보통)
한국환경공단	-	1	3(보통)	3(보통)	3(보통)	2(양호)
한국어촌여항공단	-	1	3(보통)	3(보통)	3(보통)	2(양호)

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3년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부터 안전관리등급심사 안전관리등급 본심사를 받아 제외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2022년 이후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이라 함)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현재 재판진행 중)는 대한석탄공사의 2022년 9월 채탄작업장(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사망건 1건임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함)

9)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건설공사 발주에서 발생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대검찰청의 해설서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는 직영에서 발생한 사고로, 2022년 9월 14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장성생산부 채탄작업장에서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안전점검 중 직원(장성생산부장) 매물 사망
 - 2022년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기소대상은 기관, 기관장,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임

-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생략)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 8. (생략)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친환경 · 상생 분야

가. 현황

□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대기·물환경(수질)·폐기물 분야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을 분석

- 대기·물환경(수질)·폐기물 분야의 구체적 환경법규는 대기환경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수질) 관련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폐기물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및 「폐기물관리법」
 - 대기 분야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례는 동법 제5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 의무에 대한 위반
 - 물환경(수질) 분야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사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기준 위반(제53조제6항), 폐수배출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제32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사항 위반(제33조) 등에 대한 위반이며, 「하수도법」 위반사례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제7조)
 - 폐기물 분야의 「건설폐기물」 위반사례는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제13조), 배출자 신고 관련 사항 위반(제17조)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관련 사항 위반(제15조·제18조) 등
 -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은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위반을 제외한 대기·물환경, 폐기물 분야의 법규위반은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위탁업체 포함)의 위반사항을 포함함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내역(2023년)]

(단위: 건)

분야	위반법	위반 건수	위반내역
대기환경	「대기환경보전법」	10	제58조의5제1항
물환경		19	
비점오염원	「물환경보전법」	1	제53조제6항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5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13	제34조, 제7조제1항
폐기물		10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법」	85	제13조, 제17조 18조, 제28조, 제34조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19	제8조, 제15조, 제18조
합계		13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총 133건
 - 2023년 공공기관의 환경법규 위반건수는 총 133건이며, 최근 3년간 누적된 위반건수는 357건임
 - 2023년에는 폐기물 관련 법규 위반이 104건으로 78.2%를 차지하며, 물 환경 관련 환경법규 위반이 19건으로 1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이 32건, 준시장형 공기업이 55건으로 공기업의 위반건수가 87건으로 전체 위반 중 65.4%를 차지, 준정부기관의 경우 32건 모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나타났으며, 기타공공기관은 1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7건 증가, 기타공공기관 7건 증가)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2021~2023)]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3년 누적
공기업	95	81	87	263
시장형	17	20	32	69
준시장형	81	63	55	199
준정부기관	14	15	32	61
기금관리형	-	2	-	2
위탁집행형	14	15	32	61
기타공공기관	12	7	14	33
전체	121	103	133	357

주: 1.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함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집계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2023년 기준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환경법규 위반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순임

- 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한국도로공사(12), 한국전력공사(11) 등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위 두 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임
-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40), 한국수자원공사(7), 한국철도공사(5) 등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위 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1%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19), 국가철도공단(8), 한국환경공단(6) 등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위 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2%임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산항만공사(4) 등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2023년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위반 건수	기관명(위반건수)
시장형 공기업	32	한국도로공사(12), 한국전력공사(11), 한국서부발전(주)(4), 한국지역난방공사(2) 한국중부발전(주)(1), 한국수력원자력(주)(1), 한국석유공사(1)
준시장형 공기업	55	한국토지주택공사(40), 한국철도공사(5), 한국수자원공사(7), 대한석탄공사(1) 해양환경공단(1), 그랜드코리아레저(주)(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2	한국농어촌공사(11), 국가철도공단(8), 한국환경공단(6), 한국산업단지공단(2), 국민건강보험공단(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 축산물품질평가원(1), 한국석유관리원(1), 국립공원공단(1)
기타 공공기관	14	부산항만공사(4), 울산항만공사(1), 한국원자력의학원(1), 대한법률구조공단(1) ¹⁾ 한국문화예술위원회(1), 코레일로지스(주)(1), 중소기업유통센터(1), 정보통신정책연구원(1), 분당서울대학교병원(1), 경상국립대학교병원(1), 한국어촌어항공단(1)

주: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가환경보전법」 위반(1건)은 현재 법정 다툼 중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분야별 환경 법규위반 사항과 분야별 공공기관(하도급업체 포함)의 위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
-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비점오염저감시설¹⁾ 관리·운영기준 위반,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 「하수도법」 위반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부적정,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오류 등
-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토지소유자 청결유지의무 불이행, 폐기물 전자정보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오류, 실적보고 미이행 등

1)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의미함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분야별 환경법규 위반 현황(2023년)]

(단위: 건)

분야	위반법	위반 현황	
		유형	기관명
대기환경			
대기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준시장형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위탁집행형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레일로지스(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물 환경			
비점오염원	「물환경보전법」	준시장형	한국토지주택공사(1)
		시장형	한국도로공사(1), 한국수력원자력(주)(1)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준시장형	한국수자원공사(2)
		위탁집행형	한국석유관리원(1)
		시장형	한국지역난방공사(1), 한국중부발전(주)(1), 한국서부발전(주)(1), 한국도로공사(1)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준시장형	한국철도공사(3), 한국토지주택공사(1)
		위탁집행형	국립공원공단(1)
		기타공공기관	울산항만공사(1)
		시장형	한국지역난방공사(1), 한국중부발전(주)(1), 한국서부발전(주)(1), 한국도로공사(1)
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법」	시장형	한국전력공사(8), 한국도로공사(8)
		준시장형	한국토지주택공사(37), 한국철도공사(2), 한국수자원공사(3)
		위탁집행형	국가철도공단(8), 한국농어촌공사(6), 한국환경공단(4), 한국산업단지공단(2), 국민건강보험공단(1)
		기타공공기관	부산항만공사(4), 분당서울대학교병원(1), 한국어촌어항공단(1)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장형	한국전력공사(3), 한국도로공사(2), 한국석유공사(1), 한국지역난방공사(1)
		준시장형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토지주택공사(1), 해양환경공단(1)
		위탁집행형	한국농어촌공사(5), 한국환경공단(2)
		기타공공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1)

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모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 위반으로, 기관마다 1건씩 위반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최근 3년간 환경법규 위반사항 최다 발생 기관(하도급업체의 위반사항 포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순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3년간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총 149건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위반한 환경법규는 「건설폐기물법」으로, 최근 3년간 총 149건의 위반사항 중 129건
 - 동 위반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환경법규 위반 건으로 위반행위자는 하도급업체인 시공사, 폐기물업체 등이나 행정처분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²⁾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26건), 한국도로공사(22건) 순으로 많았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149건), 한국수자원공사(32건) 순으로 많았음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23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한국환경공단(10건)이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음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 환경법규 위반 주요 발생기관(최근 3년 누적)]

(단위: 건)

기관명	유형	2021	2022	2023	3년 누적
1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공기업	61	48	40	149
2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공기업	17	8	7	32
3 한국전력공사	시장형공기업	3	12	11	26
4 국가철도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6	9	8	23
5 한국도로공사	시장형공기업	5	5	12	22
6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	3	11	16
7 한국환경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	2	6	10
전체 공공기관		121	103	133	357

주: 1.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함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위반 대한 집계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건설폐기물법」 위반자인 시공사 등이 실제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태료 납부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 수질 개선 및 환경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3년간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각각 32건과 10건으로 공공기관의 3년 누적 환경법규 위반 건수의 11.8%를 차지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수질 관련 환경법규 위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목적과도 배치되므로 철저한 관리 필요
 -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의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폐기물관련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관련 위반사항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 필요

[최근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

기관명	2021	2022	2023	3년 누적
한국수자원공사	17	8	7	32
한국환경공단	2	2	6	10
소계(A)	19	10	13	42
전체 공공기관(B)	121	103	133	357
비중(A/B)	15.7	9.7	9.8	11.8

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집계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균 구매비율은 1.28%임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 324개²⁾ 중 222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102개 기관은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미달성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공공기관(324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324개 기관	24,537,487	315,276	1.28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전체 327개 공공기관(부설기관 제외) 중 신규 편입된 (재)한국통계정보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 (102)	한국전력기술(주) (0.9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0.95), 국가유산진흥원(0.9), 한국지식 재산보호원(0.9), 한국국방연구원(0.89),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89), 한국 수자원조사기술원(0.8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88), 한국잡월드(0.88), 한국원 자력통계기술원(0.87), 한국사학진흥재단(0.8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0.86),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0.86), 한국문학번역원(0.85), 한국콘텐츠진흥원(0.84), 한국조폐공사 (0.82), 강원대학교병원(0.81), 대한체육회(0.81), 기술보증기금(0.8), 한국수출입은행 (0.79), 한국가스공사(0.79), 주택도시보증공사(0.78), 영상물등급위원회(0.77), 코레일테크 (주)(0.76), 국가철도공단(0.72), APEC기후센터(0.68), 해양환경공단(0.67), 한국문화예 술큐위원회(0.67), 국립해양과학관(0.64), 정보통신산업진흥원(0.64), 한국기상산업기술 원(0.62), 게임물관리위원회(0.61), 한국자산관리공사(0.6), 부산대학교치과병원(0.6),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59), 한국로봇산업진흥원(0.57), 한국지역난방공사(0.57), 한국공정거래조정원(0.56), 전쟁기념사업회(0.56), 한국석유공사(0.56), 한국나노기술원(0.54), 시청자미디어재단(0.53), 정부법무공단(0.5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0.5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51), 국립대구과학관(0.5), 한국저작권보호원(0.49), 한국광해광업공단(0.48), 영화진흥위원회(0.4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0.42),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0.4), 한국과학창의재단(0.36), 서울대학교치과병원(0.35), 충남대학교병원(0.34), 제주대학교병원(0.34), 국립해양생물자원관(0.32), 충북대학교병원(0.32), 새만금개발공사(0.3), 국립해양박물관(0.29), 태권도진흥재단(0.29), 한국원자력의학원(0.29), 한국교육학술정보원(0.27), 한국교통연구원(0.25), 한국해양조사협회(0.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0.22), 재단법인 국악방송(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0.2), 한국문화정보원(0.17), 한국세라믹기술원(0.17), 전북대학교병원(0.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0.17), 한국어촌어항공단(0.17), 전남대학교병원(0.16), 대한법률구조공단(0.16),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0.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15), 한국산업은행(0.15),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0.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0.13),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0.12), 88관광개발(주)(0.11), 한국탄소산업진흥원(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0.1), 한국국제교류재단(0.1), 코레일관광개발(주)(0.09), 경상국립대학교병원(0.09), 코레일로지스(주)(0.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0.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0.07), 국제방송교류재단(0.06), 서울대학교병원(0.06), 국방과학연구소(0.06), 항공안전기술원(0.05), 국방기술품질원(0.04),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0.03), 예술경영지원센터(0.03), 부산대학교병원(0.0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0.02), 기초과학연구원(0.01), 경북대학교병원(0.01)

주: ()안의 숫자는 각 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비율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주요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임
 -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기관 전체 구매액 494억 6,900만원 중 2억 7,7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56%에 불과
 -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관 전체 구매액 400억 7,800만원 중 1억 9,4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48%에 불과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관 전체 구매액 885억 5,400만원 중 1억 3,1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15%에 불과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관 전체 구매액 4,290억 2,624만원 중 8억 6,378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2%에 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 미달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기관 유형	기관명	총 구매액 (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B)	구매비율 (B/A)
시장형 공기업 (3)	한국석유공사	49,469	277	0.56
	한국지역난방공사	198,082	1,123	0.57
	한국가스공사	338,808	2,677	0.79
준시장형 공기업 (5)	한국광해광업공단	40,078	194	0.48
	해양환경공단	86,543	580	0.67
	주택도시보증공사	33,934	265	0.78
	한국조폐공사	52,218	429	0.82
	한국전력기술(주)	62,198	622	0.9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8,554	131	0.15
	한국자산관리공사	31,422	189	0.60
	기술보증기금	13,598	108	0.8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29,026	864	0.20
	국가철도공단	704,873	5,110	0.72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미달성한 89개의 기타공공기관 중 하위 10개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안전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임
- 경북대학교병원은 기관 전체 구매액 274억원 중 4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13%에 불과
 - 기초과학연구원은 기관 전체 구매액 955억 6,800만원 중 1,300만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14%에 불과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기관 전체 구매액 104억 7,700만원 중 2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17%에 불과
 - 부산대학교병원은 기관 전체 구매액 4,334억 4,000만원 중 9,1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21%에 불과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기관 전체 구매액 265억 3,100만원 중 7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26%에 불과
 -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은 기관 전체 구매액 503억 6,000만원 중 1,7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34%에 불과
 - 국방기술품질원은 기관 전체 구매액 444억 4,600만원 중 1,9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42%에 불과
 - 항공안전기술원은 기관 전체 구매액 92억 3,000만원 중 5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55%에 불과
 - 국방과학연구소는 기관 전체 구매액 2,536억 6,900만원 중 1억 4,2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56%에 불과
 - 서울대학교병원은 기관 전체 구매액 8,446억 4,300만원 중 4억 8,6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58%에 불과

[의무 구매 비율 미달성 기타공공기관의 구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기관 유형	기관명	총 구매액 (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 (B)	구매비율 (B/A)
기타 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27,400	4	0.013
	기초과학연구원	95,568	13	0.01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0,477	2	0.017
	부산대학교병원	433,440	91	0.021
	예술경영지원센터	26,531	7	0.026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50,360	17	0.034
	국방기술품질원	44,446	19	0.042
	항공안전기술원	9,230	5	0.055
	국방과학연구소	253,669	142	0.056
	서울대학교병원	844,643	486	0.058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 황

- 공공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기획재정부 훈령 제58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제674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혁신조달제품을 구매해야 함
 -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혁신제품 지정 및 목표 설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및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 절차를 운영·관리함
 -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3년 연간 총 물품구매액의 2% 이상을 혁신조달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혁신제품 구매 관련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기획재정부 훈령 제58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구매 증대)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혁신제품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실적 점검) 기획재정부장관은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2021년 1.8%, 2022년 2%, 2023년 2%이며 2023년의 경우 목표금액은 2021년 총구매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제6조(혁신제품) ① 법 제27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심의하여 지정한다.

기획재정부 훈령 제674호「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혁신제품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3.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주요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 논의
3.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

...

- 혁신제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 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을 지정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탄소중립 관련 제품 등이 지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3년 혁신조달제품 평균구매비율은 총 구매액의 2.5%임

[공기업·준정부기관 혁신조달제품 구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혁신제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10,448,164	260,626	2.5

주: 총 구매액은 2021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57개 기관은 혁신조달제품 구매 비율(2%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30개 기관은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시장형 공기업 3개, 준시장형 공기업 1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개,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14개 기관 등 30개 기관은 혁신조달제품 구매 비율을 미달성하였음

[혁신조달제품 구매비율 달성 및 미달성 기관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기관 유형	공기업·준정부기관
혁신제품 구매 완료 공공기관 (57)	시장형 공기업(11)	한국남동발전(주) (7.08), 한국석유공사(7.76), 한국서부발전(주) (4.87), 한국남부발전(주) (4.83), 인천국제공항공사(4.55), 한국수력원자력(주) (4.26), 한국동서발전(주) (3.28), (주)강원랜드(2.89), 한국지역난방공사(2.4), 한국중부발전(주) (3.52), 한국도로공사(3.36)
	준시장형 공기업(8)	주택도시보증공사(16.6), 한국마사회(9.18), 해양환경공단(5.96), 한국가스기술공사(3.8), 한국수자원공사(3.35), 한전KD(주) (2.8), 한국전력기술(주)(2.31), 한국철도공사(2.0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9)	근로복지공단(23.18), 공무원연금공단(18.45), 한국자산관리공사(19.46), 국민연금공단(29.66), 한국무역보험공사(3.82), 중소기업진흥공단(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6.96), 한국주택금융공사(2.77), 신용보증기금(2.7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9)	한국산업단지공단(48.19), 한국인터넷진흥원(21.58), 한국전기안전공사(16.12), 한국국제협력단(1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9.4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23), 한국환경산업기술원(9.1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8.61), 한국환경공단(7.8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 한국원자력환경공단(7.04), 한국산업인력공단(6.45), 한국가스안전공사(5.83), 한국사회보장정보원(5.06), 국립공원공단(4.8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4.4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4.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3.44), 국민건강보험공단(3.35), 한국석유관리원(3.2), 국토안전관리원(2.9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82), 한국교통안전공단(2.74), 국가철도공단(2.67), 한국연구재단(2.52), 한국에너지공단(2.48), 한국국토정보공사(2.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7), 축산물품질평가원(2.07)

(단위: 개, %)

구분	기관 유형	공기업 · 준정부기관
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 (30개)	시장형 공기업(3)	한국전력공사(1.43), 한국공항공사(1.5), 한국가스공사(1.9),
	준시장형 공기업(10)	대한석탄공사(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 주식회사 에스알(0.0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01), 한국조폐공사(0.09), 한국광해광업공단(0.22), 한국토지주택공사(0.34), 한국부동산원(0.55), 한전KPS(주) (1.3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	예금보험공사(0), 국민체육진흥공단(0.88), 기술보증기금(1.7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	(재)우체국금융개발원(0), 한국소비자원(0), 한국승강기안전공단(0), 한국장학재단(0), 한국관광공사(0.3), 한국도로교통공단(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0.44), 국립생태원(0.51), 한국고용정보원(0.67), 한국전력거래소(0.71), 한국농어촌공사(0.88), 한국산림복지진흥원(0.97), 우체국물류지원단(1.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1.72)

주: ()안의 숫자는 각 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혁신조달제품 구매 비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나. 주요 쟁점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중 혁신조달제품의 구매비율이 0%인 기관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8개

[혁신조달제품 미구매 기관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기관 유형	기관명	총 구매액(A)	혁신제품 구매액(B)	구매비율 (B/A)
준시장형 공기업 (3)	대한석탄공사	20,098	0	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868	0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498	0	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	예금보험공사	2,172	0	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201	0	0
	(재)우체국금융개발원	2,415	0	0
	한국소비자원	2,321	0	0
	한국장학재단	1,509	0	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혁신조달제품 구매 비율(2%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임

- 혁신조달제품 구매비율이 저조한 기관은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조폐공사,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교통공사 등임
 - 주식회사 에스알은 기관 전체 구매액 200억 9,400만원 중 100만원의 혁신조달제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1%에 불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관 전체 구매액 136억 3,200만원 중 200만원의 혁신조달제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1%에 불과
 - 한국조폐공사는 기관 전체 구매액 726억 5,900만원 중 6,600만원의 혁신조달제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9%에 불과
 - 국립생태원 기관 전체 구매액 61억 3,700만원 중 3,100만원의 혁신조달제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51%에 불과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기관 전체 구매액 194억 500만원 중 6,800만원의 혁신조달제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35%에 불과

[혁신조달제품 구매 비율(2%) 미달성 기관의 혁신조달제품 구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기관 유형	기관명	총 구매액(A)	혁신제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시장형 공기업 (3)	한국전력공사	3,120,391	44,766	1.43
	한국공항공사	115,717	1,735	1.50
	한국가스공사	81,914	1,558	1.90
준시장형 공기업 (7)	주식회사 에스알	20,094	1	0.0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3,632	2	0.01
	한국조폐공사	72,659	66	0.09
	한국광해광업공단	14,005	31	0.22
	한국토지주택공사	1,098,966	3,694	0.34
	한국부동산원	13,135	72	0.55
	한전KPS(주)	124,477	1,705	1.3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	국민체육진흥공단	24,046	212	0.88
	기술보증기금	8,487	146	1.7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	한국관광공사	8,804	26	0.30
	한국도로교통공단	19,405	68	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2,519	852	0.44
	국립생태원	6,137	31	0.51
	한국고용정보원	4,962	33	0.67
	한국전력거래소	8,555	61	0.71
	한국농어촌공사	687,338	6,036	0.8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670	55	0.97
	(재)우체국물류지원단	3,116	41	1.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426	214	1.72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계획액을 달성하지 못한 4개 기관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의 구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 (A)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B)	구매비율 (B/A)
기타 공공 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164	7,280	42.4
	새만금개발공사	85,574	36,699	42.9
	한국수출입은행	83,485	35,995	43.1
	건설기술교육원	3,489	1,629	46.7

자료: 중소기업유통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이행하지 못한 4개 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건설기술교육원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관 전체 구매액 171억 6,400만원 중 72억 8,000만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42.4%에 불과
 - 새만금개발공사는 기관 전체 구매액 855억 7,400만원 중 366억 9,900만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42.9%에 불과
 -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관 전체 구매액 834억 8,500만원 중 359억 9,500만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43.1%에 불과
 - 건설기술교육원은 기관 전체 구매액 34억 8,900만원 중 16억 2,900만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46.7%에 불과

가. 현 황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제품²⁾을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계획금액을 환경부에 제출함
- 전체 공공기관의 2023년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324개³⁾ 공공기관의 총 계획액 대비 녹색제품 이행 비율은 118.3%임

[공공기관(324개) 녹색제품 구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구매이행계획 (A)	녹색제품 구매실적 (B)	계획 대비 실적 (B/A)
324개 공공기관	733,543	867,720	118.3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 324개 중 216개 기관은 녹색제품 계획액을 이행하였지만, 108개 기관은 계획액을 이행하지 못하였음
 - 108개 계획액 미이행 기관 중 기타공공기관(96개)이 대부분을 차지함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함
- 3) 전체 327개 공공기관(부설기관 제외) 중 신규 편입된 (재)한국통계정보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미달성 기관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

기관 유형		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3)		주택도시보증공사(85.9), 한국전력기술(주) (68.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8.2)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3)	국민연금공단(92.5), 한국주택금융공사(90.2), 기술보증기금(74.4)
	위탁집행형 (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8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87.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77.7), 한국사회보장정보원(66.8), 우체국물류지원단(52.3), 한국국토정보공사(44)
기타 공공기관 (9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93.7), 한국사학진흥재단(9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90.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90.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88.6), (재)한국에너지재단(88.2), 인천항만공사(87.1), 한국수출입은행(86.1), 울산항만공사(85.5), 에너지경제연구원(84.6), 한국교육학술정보원(84), 아동권리보장원(83.8), 기초과학연구원(83), 건설근로자공제회(8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77.4), 국방기술품질원(77.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75.7), 국가생명윤리정책원(75.6),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7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73.1), 국립해양생물자원관(73.1), (재)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73), 서울대학교치과병원(71.6), 공간정보품질관리원(70.3), 한국소방산업기술원(69.3), 국립중앙의료원(68.7), 한국저작권위원회(67.2), 한국탄소산업진흥원(66.2), 한국예술인복지재단(65.5), 한국향로표지기술원(64.7), 부산대학교병원(64.7), 충북대학교병원(64.4), 코레일테크(주)(63.8), 한국문화예술위원회(63.4), (재)우체국시설관리단(63.2), 경제인문사회연구회(62.5), 신용보증재단중앙회(60.8), 정보통신산업진흥원(60.7), 건설기술교육원(60.1), 동북아역사재단(60),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6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58.7), 한국해양조사협회(58.1), 중소벤처기업연구원(55.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54.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53.5), 한국보건의료연구원(53.4),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53.4), 세종학당재단(50), 재단법인 국악방송(50), 국립항공박물관(50), 한국법제연구원(49.3), 독립기념관(49.1), 경상국립대학교병원(48), 여수광양항만공사(47.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47.1), 한국교육개발원(46.5), 한국고전번역원(45.2), 한국한의학진흥원(42.3), 한국과학창의재단(42), 제주대학교병원(4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40), 전북대학교병원(40), 전남대학교병원(39.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38.8),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38.8),

(단위: 개, %)

기관 유형	공공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35.9),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35.8), 한국여성정책연구원(35.7), 한국해양수산개발원(3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33.3), 한국문화정보원(33.3), (재)APEC기후센터(33.3),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30.4), 영화진흥위원회(28), 국립대구과학관(27.5), 한국고용노동교육원(26.9), 한국재정정보원(24.6), 의료기관평가인증원(23.8), 한국세라믹기술원(22.5), 한국디자인진흥원(18.7), 예술의전당(16.6), 국방전직교육원(14.3), (주)공영홈쇼핑(12.4), 경북대학교병원(1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10.9), 부산대학교치과병원(10.7), 코레일관광개발(주)(10), 한국영상자료원(9.1), 한국벤처투자(9.1), 태권도진흥재단(5.7),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4.5), 중소기업유통센터(2.3),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0), 한국문화진흥(주)(0), 코레일로지스(주)(0)

주: ()안의 숫자는 각 기관의 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 이행 비율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녹색제품 계획액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술보증기금,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기관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관 전체 구매액 20억원 중 13억 6,4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68.2% 수준임
 - 기술보증기금은 기관 전체 구매액 13억 2,800만원 중 9억 8,8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74.4% 수준임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기관 전체 구매액 2억 5,6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52.3% 수준임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기관 전체 구매액 23억 3,400만원 중 10억 2,6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44%에 불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미달성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기관 유형		기관명	구매이행계획 (A)	녹색제품 구매실적 (B)	계획 대비 실적 (B/A)
공 기 업	준시장형 (3)	주택도시보증공사	1,036	890	85.9
		한국전력기술(주)	1,050	719	68.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0	1,364	68.2
준 정 부 기 관	기금 관리형 (3)	국민연금공단	2,592	2,397	92.5
		한국주택금융공사	1,629	1,470	90.2
		기술보증기금	1,328	988	74.4
	위탁 집행형 (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842	735	8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14	361	87.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802	2,176	77.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693	463	66.8
		우체국물류지원단	256	134	52.3
		한국국토정보공사	2,334	1,026	44.0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 중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코레일로지스(주)임

[기타공공기관 중 녹색제품 미구매 기관(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구매이행계획 (A)	녹색제품 구매실적 (B)	계획 대비 실적 (B/A)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7	0	0.0
코레일로지스(주)	4	0	0.0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1	0	0.0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 중 녹색제품 계획액을 달성하지 못한 하위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구매이행계획 1억 7,400만원 중 4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2.3%에 불과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구매이행계획 2,200만원 중 1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4.5%에 불과
- 태권도진흥재단은 구매이행계획 5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5.7%에 불과
- 한국벤처투자는 구매이행계획 1억 2,100만원 중 1,1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9.1%에 불과
- 한국영상자료원은 구매이행계획 1,100만원 중 1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9.1%에 불과
- 코레일관광개발(주)은 구매이행계획 1,000만원 중 1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10%에 불과
-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구매이행계획 7,500만원 중 8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10.7%에 불과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구매이행계획 1억 1,000만원 중 1,2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10.9%에 불과
- 경북대학교병원은 구매이행계획 1억 4,300만원 중 1,6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11.2%에 불과
- (주)공영홈쇼핑은 구매이행계획 1억 3,700만원 중 1,700만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이행률은 계획 대비 12.4%에 불과

[기타공공기관 중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하위 10개 기관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구매이행계획(A)	녹색제품 구매실적 (B)	계획 대비 실적 (B/A)
중소기업유통센터	174	4	2.3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2	1	4.5
태권도진흥재단	530	30	5.7
한국벤처투자	121	11	9.1
한국영상자료원	11	1	9.1
코레일관광개발(주)	10	1	10.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75	8	10.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10	12	10.9
경북대학교병원	143	16	11.2
(주)공영홈쇼핑	137	17	12.4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복리후생 분야

가. 현 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1)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하면, 1인당 기금누적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상한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되, 다른 특별출연은 불가함
 -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복리후생 사업 소요재원 등을 감안

[기금 누적액별 출연액 기준]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자료: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정부지원액 및 영업외 이익(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과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서는 안 됨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 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1,680억원으로 2022년 1,645억원 대비 35억원 증가

- 공기업의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32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34억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준시장형 공기업은 2023년 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 증가하였음
- 준정부기관의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5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3년 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1억원 증가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의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7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원 감소
 -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출연액은 2023년 683억원으로 기타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89%를 차지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 (B-A)
공기업	1,111	922	995	454	320	△134
시장형	223	321	777	235	79	△156
준시장형	888	601	218	220	241	21
준정부기관	181	165	131	318	595	277
기금관리형	121	125	91	269	550	281
위탁집행형	60	40	39	49	45	△4
기타공공기관	905	670	486	872	765	△108
은행형 공공기관	827	535	396	743	683	△60
기타	77	135	90	129	82	△47
전체	2,197	1,757	1,611	1,645	1,680	3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은 2조 3,437억원으로 2022년 2조 3,032억원 대비 405억원 증가
 - 공기업의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잔액은 1조 5,624억원으로, 2022년 대비 522억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은 2023년 9,9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원 감소하였음
 - 준정부기관의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잔액은 3,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559억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3년 1,993억원으로 전년 대비 525억원 증가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의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잔액은 4,399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억원 증가
 -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기금잔액은 2023년 3,651억원으로 기타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83%를 차지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당해연도말 기금잔액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 (B-A)
공기업	16,740	16,489	16,612	16,146	15,624	△522
시장형	11,287	10,789	10,841	10,349	9,958	△391
준시장형	5,453	5,700	5,771	5,797	5,666	△131
준정부기관	2,410	2,525	2,596	2,854	3,413	559
기금관리형	1,109	1,195	1,241	1,469	1,993	525
위탁집행형	1,301	1,330	1,355	1,386	1,420	34
기타공공기관	3,444	3,627	3,620	4,031	4,399	368
은행형 공공기관	2,974	3,077	3,021	3,335	3,651	316
기타	470	550	599	696	748	52
전체	22,593	22,641	22,828	23,032	23,437	40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1)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의한 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문제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출연한 문제가 발생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임

- 두 기관은 2019~20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증가 추세가 가장 큼
 - 기술보증기금은 2019~2021년에는 기금에 출연하지 않다 2022년에 90억원, 2023년에 116억원을 출연하여 최근 5년 동안 총 206억원을 출연함
 -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19억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에 74억원, 2023년에 312억원을 출연하여 최근 5년 동안 총 405억원을 출연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합계
기술보증기금	-	-	-	90	116	206
신용보증기금	-	19	-	74	312	405

자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최근 10년간 손익을 살펴보면, 2014~2020년까지는 손실 또는 소액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익 규모가 2021년, 2022년에 크게 증가하였음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2021~2022년 동안의 일시적인 이익확대는 주로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사고율, 대위변제율 등의 하락으로 관련 준비금 등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²⁾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결과(2014~2023)]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술보증기금	2,011	△265	1,596	2,109	3,651	1,078	184	△4,511	△3,869	33
신용보증기금	4,114	3,929	6,104	130	1,878	△468	3,300	△3,702	△7,829	△6,711

주: 재정운영결과 값이 양(+)인 경우 적자, 음(-)인 경우 흑자를 의미함

자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타 연도 대비 2021년과 2022년에 프로그램총원가는 감소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완화 등 유동성 공급 정책 및 상환 유예 조치에 기인함
 -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 4,511억원, 2022년 3,869억원의 이익,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3,702억원, 2022년 7,829억원의 이익이 발생함

2)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며, 연장·유예 조치는 만기 시점을 지연하여 이익과 손실 발생 시기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 보증 규모 변동은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손익 효과는 적다는 입장임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완화조치로 보증사고율 감소에 따라 대위변제준비비 등의 일시 감소로 프로그램총원가 감소
- 보증충당부채가 감소하여 보증충당부채환입(수익) 발생, 대위변제준비금 환입으로 인한 프로그램수익 증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표(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술 보증 기금	프로그램총원가(A)	10,409	10,026	6,916	6,785	12,130
	프로그램수익(B)	△3,397	△3,197	△5,024	△4,199	△3,906
	프로그램순원가(A-B)	7,012	6,829	1,892	2,587	8,225
	재정운영결과	1,078	184	△4,511	△3,869	33
신용 보증 기금	프로그램총원가(C)	16,581	22,605	15,627	13,992	21,504
	프로그램수익(D)	△6,879	△7,718	△8,415	△11,503	△12,744
	프로그램순원가(C-D)	9,702	14,887	7,211	2,489	8,760
	재정운영결과	△468	3,300	△3,702	△7,829	△6,711

주: 재정운영결과 값이 양(+)인 경우 적자, 음(-)인 경우 흑자를 의미함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두 기관의 보증사고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금융완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2021년과 2022년에 감소한 후 2023년에는 다시 2019년 수준으로 상승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사고율(2019~2023)]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술보증기금	4.5	3.4	2.5	2.7	4.2
신용보증기금	3.3	2.4	2.0	2.0	3.3

주: 1.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은 직접보증 기준임

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은 일반보증 대상이며, 해당연말 보증잔액 대비 연초부터 해당 연말까지의 부실금액 비율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술보증기금은 전체 보증액 중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의 비율이 2020년 49.8%에서 2021년 이후 70%대로 상승,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48.6%에서 2021년 이후 60%대로 상승함

-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의 증가로 인한 보증사고율(부실률) 감소에 따라 프로그램충원가는 감소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함

[기술보증기금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a)	-	126,619	187,895	198,074	202,175
전체 보증액(b)	-	254,453	262,684	265,029	279,176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 비율 (a/b)	-	49.8	71.5	74.7	72.4

주: 1.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은 정책금융기관 특별만기연장이 '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해당연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건의 연말 기준 잔액임

2. 전체 보증액은 직접보증 기준(유동화회사보증 및 재보증 제외)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신용보증기금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a)	-	267,047	368,200	406,970	406,667
전체 보증액(b)	472,231	549,536	591,461	613,961	618,214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 비율 (a/b)	-	48.6	62.3	66.3	65.8

주: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은 코로나19 시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뜻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즉, 2014~2020년에 손실 또는 소액의 이익이 발생했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2022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금융완화조치 등으로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2022년,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

-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90억원을 출연했고, 2023년 출연가능금액은 약 116억원(3,871억원×3%)이며, 최대금액을 출연함

-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74억원을 출연했고, 2023년 출연가능금액은 약 312억원(7,812억원×4%)이며, 최대금액을 출연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가능금액 및 출연액(2023년)]
(단위: 억원)

구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조정 세전순이익(A)	3,871	7,812
출연율(B)	3%	4%
출연가능금액(A×B)	116	312
출연액	116	312

주: 조정 세전순이익은 세전순이익에서 유형자산 재평가, 처분 등을 제외한 이익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획재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결정 시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이 정책적 고려에 따른 보증공급으로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 정부 정책의 적극적 이행 및 기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20년간 신용보증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금융정책이 시행됐던 4회에 그침 ('12년, '20년, '22년, '23년)

[금융위기 시기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잔액과 재정운영결과]
(단위: 억원, %)

구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2009	201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보증 증가액 (증가율)	151,701 (47.8)	4,196 (8.9)	114,357 (17.0)	47,751 (6.0)	△17,412 (△2.0)
재정운영결과	△5,955	△1,129	△3,702	△7,829	△6,711

주: 재정운영결과 값이 양(+)인 경우 적자, 음(-)인 경우 흑자를 의미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요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복리후생비를 충당하므로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2) 조정 세전순이익 산출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세전순이익에서 자체노력에 의하지 않은 이익 및 미실현이익 등은 차감하고 미실현비용 등은 가산하여 조정순이익을 산출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조정 세전순이익에 출연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일부 기관에서 조정 세전순이익 산출 시 차감해야 할 이익을 차감하지 않아 세전순이익 산정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함
 - 한국동서발전(주)는 2018, 2020, 2022년 보상 및 배상금 수익 413.96억원을 차감하지 않음
 - 한국마사회는 2020년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77.98억원을 차감하지 않음
 -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자산수증이익 213.09억원을 차감하지 않음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8년 무형자산처분이익과 금융상품평가이익 5.87억원, 2020년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과 금융상품평가이익 154.73억원을 차감하지 않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보상 및 배상금수익 109.08억원을 차감하지 않음
 - 한국가스공사는 2019~2020년 정부보조금수익 28.3억원을 차감하지 않음⁴⁾
 - 한국남동발전(주)는 2018~2019년 정부보조금수익, 2020년 정부보조금수익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13.02억원을 차감하지 않음

4) 공사는 조정 세전순이익보다 적은 당초 세전순이익으로 출연함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액(2018~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동서 발전(주)	당기순이익	△8,069	141,494	△44,167	38,984	105,661	176,956
	출연금	6,535	-	826	-	26	-
	미차감이익	12,777	-	7,215	-	21,404	-
한국 마사회	당기순이익	182,757	144,900	△436,828	△348,036	97,286	100,593
	출연금	4,000	4,000	3,000	-	-	2,000
	미차감이익	-	-	7,798	-	-	-
한국 전력 공사	당기순이익	△1,174,498	△2,263,535	2,092,469	△5,215,581	△24,429,108	△4,716,144
	출연금	43,054	-	-	52,799	-	-
	미차감이익	-	-	-	21,309	-	-
한국수력 원자력(주)	당기순이익	△101,993	246,548	617,942	294,478	△61,987	122,139
	출연금	17,430	-	5,480	24,000	10,290	-
	미차감이익	587	-	15,473	-	-	-
한국 수자원 공사	당기순이익	240,174	130,574	318,641	342,131	407,411	359,335
	출연금	6,758	14,594	9,416	11,556	9,436	10,000
	미차감이익	10,908	-	-	-	-	-
한국 가스 공사	당기순이익	526,744	58,269	△160,683	964,522	1,497,008	△747,429
	출연금	-	4,924	3,038	-	10,518	-
	미차감이익	-	1,531	1,299	-	-	-
한국 남동 발전(주)	당기순이익	29,672	32,609	△144,754	△4,482	169,643	227,353
	출연금	4,180	727	767	-	-	1,316
	미차감이익	430	482	390	-	-	-

주: 당기순이익은 당해연도 연결 기준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 및 감사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실태」, 202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따라서 공공기관은 조정 세전순이익 산출 시 차감하여야 할 이익을 전액 차감하여 세전순이익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현 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1)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누어짐
 -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 문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퇴직연금은 사용자(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²⁾
 - 확정급여형³⁾, 확정기여형⁴⁾이 대표적이며, 이외 IRP특례형⁵⁾, 개인형 퇴직연금(IRP)⁶⁾이 있음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통계청,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3.12., “일러두기” 참고
- 3)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임
- 4)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로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임
- 5) IRP특례형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
- 6)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확정기여형(DC)과 유사하게 운영

- 공공기관⁷⁾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외⁸⁾하고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치과병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비율이 46.9%였으며, 확정기여형이 37.5%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84.4%로 나타남¹⁰⁾

[공공기관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현황(2023년 말)]

(단위: 개, %)

구분	제도 운영 기관 수	비율
퇴직금제도	69	13.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49	46.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99	37.4
사학연금 가입	15	2.8
합계	532	100.0

주: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총 합계는 공공기관 개수보다 많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7) 327개 공공기관 및 4개 부설기관

8)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제외함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10)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만을 가입한 기관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나. 주요 쟁점

(1) 기관 내 타 회계의 퇴직금 자원 사용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준비액 과소 문제

- 대한적십자사는 퇴직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급여기금을 금융기관 예치금, 기관내 대여금, 직원 및 직원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 등의 방식으로 운용
 - 「대한적십자사직원 및 고용원 퇴직금 특별회계 운영규정」¹¹⁾에 따른 것임

- 대한적십자사의 2023년 말 퇴직금 관련 자산이 부채를 약 361억원 초과하고 있으나, 퇴직금 관련 자산 중 기관 내 타 회계로부터의 미수금, 대여금이 약 1,262억원으로 50.7%를 차지하고 있음
 - 퇴직금 관련 부채는 약 2,126억원이나 퇴직금에 사용할 자원은 타 회계미수금 및 대여금을 제외하면 약 1,225억원에 불과함

11) 「대한적십자사직원 및 고용원 퇴직금 특별회계 운영규정」

제8조(운용방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배당률이 높은 기업체의 증권 또는 주식투자 3. 기관내의 대여 4. 기타 수익성이 좋으며 안전도가 높은 수익사업 다만, 전2, 3, 4호의 투자액은 기금의 5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기금에서 대학에 재학하는 직원, 고용원 및 무기계약직원과 그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무이자로 장학금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여금 총액은 기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대상, 금액, 시기, 상환절차 등 세부운영사항은 학생의 증가율, 기금의 형편,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회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에서 무주택세대주인 직원 및 고용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여금 총액은 기금의 2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대한적십자사의 2023년 말 퇴직금 관련 부채 및 자산]

(단위: 백만원)

부채(A)		자산(B)		차이금액 (B-A)
계정	금액	계정	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	현금및현금성자산	5,856	-
부가세예수금	9	단기금융자산	109,000	-
확정급여채무	211,18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402	-
기관내미지급금	1,421	당기법인세자산	443	-
-	-	장기대여금	2,439	-
-	-	유형자산	172	-
-	-	이연법인세자산	2,196	-
-	-	기관내미수금, 대여금	126,217	-
합계	212,618	합계	248,725	36,107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대한적십자사는 직원퇴직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지급을 위해 타 회계로의 기관 내 과도한 대여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금특별회계의 기금은 주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특별회계와 혈액원특별회계에 대여 중임
- 2019, 2022, 2023년에 기관 내 대여금 이자율이 퇴직금 운용자산의 이자율보다 낮아 대여금리와 연평균 이자율의 차이만큼 퇴직금특별회계에 손실이 발생했다 할 수 있음
 - 대여금에 대해 병원, 혈액원특별회계로부터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연 1.75%의 이자를 받고 있음

[대한적십자사 퇴직금특별회계 단기금융자산(정기예금) 연평균 이자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이자율	1.81	1.07	1.49	3.38	4.06

자료: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연도별, 회계별 순 대여금(차입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일반회계	35,657	△6,352	△4,459	△2,649	23,463	△12,194
병원특별회계	△102,040	△43,286	△46,524	△50,515	△79,092	22,948
혈액원특별회계	△39,293	△55,321	△56,524	△63,108	△65,208	△25,915
퇴직금특별회계	117,937	108,287	110,886	120,120	124,796	6,859
기타	△12,261	△3,328	△3,379	△3,848	△3,959	8,302
합계	0	0	0	0	0	0

주: 상기 대여금, 차입금 금액은 수취(지급) 기한이 1년 이내인 미수금, 미지급금을 포함한 것임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퇴직금회계 운영 중¹²⁾으로, 총인건비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으나¹³⁾ 이를 일반회계의 호봉승급, 승진 소요액 등으로 인한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 약 500억원을 먼저 사용하였음
- 공단은 인건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호봉승급, 승진 소요액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으로 퇴직적립금 전출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자체 전용하여 사용하였음¹⁴⁾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약 656억원이나 퇴직금에 사용할 재원은 일반회계미수금을 제외하면 약 161억원에 불과함

12) 퇴직금제도 운영 중임

13) 수치차 공공기관임

14)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4.7., p.85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2023년 말 퇴직금 관련 부채 및 자산]

(단위: 백만원)

부채(A)		자산(B)		차이금액 (B-A)
계정	금액	계정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65,631	현금및현금성자산	3,946	-
미지급금	454	단기금융상품	8,028	-
-	-	단기대여금	1,158	-
-	-	장기대여금	2,676	-
-	-	일반회계미수금	50,025	-
-	-	미수수익	207	-
-	-	선납법인세	45	-
합계	66,085	합계	66,085	0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할 금액을 타 인건비(호봉승급 등)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타 인건비 우선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회계는 퇴직금 운용자산(단기금융상품)의 이자율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금회계 단기금융상품 연평균 이자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이자율	1.91	1.12	1.23	2.92	3.92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2) 퇴직금 관련 자산 과소적립 문제

- 퇴직금 관련 부채 대비 퇴직금 관련 자산이 적어 부채만큼 자산을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2023년 말 기준 부채보다 자산이 적은 공공기관은 총 115개임
 - 공기업 14개, 준정부기관 37개, 기타공공기관 63개, 부설기관 1개로 구성되어 있음

[퇴직금 관련 부채 대비 자산이 적은 기관(2023년 말)]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개수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14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7
기타공공기관	88관광개발(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과학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체육회,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63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개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부설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
합계		115

- 주: 1. 밑줄 표시는 수치차 보전기관임
 2.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퇴직금 관련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는 경우, 퇴직금 관련 사용제한예금을 설정한 부분만 퇴직금 관련 자산에 포함함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퇴직금 관련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일부 직원의 퇴직연금 중간 정산 및 퇴직연금 운용방식 변경 등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의 납입시점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액이 발생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퇴직금 적립(퇴직금 관련 자산)은 진흥원「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연말 결산시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여 차이가 발생
 5.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퇴직금 관련 부채에 명예퇴직금 관련 부채(76,181,017,909원)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퇴직금 관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나타남

- 한국철도공사는 퇴직금제도 운영 및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중이며, 확정급여채무는 약 1조 2,64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외적립자산은 약 264억원에 불과하여 자산이 부채보다 약 1조 2,384억원 부족함

[한국철도공사의 2023년 말 퇴직금 관련 부채 및 자산]

(단위: 백만원)

부채(A)		자산(B)		차이금액(B-A)
계정	금액	계정	금액	
확정급여채무	1,264,856	사외적립자산 ¹⁾	26,415	△1,238,441

- 주: 1)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외에 적립해 놓은 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퇴직금 관련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는 경우, 퇴직금 관련 사용제한예금을 설정한 부분만 퇴직금 관련 자산에 포함함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는 퇴직금제도 운영 및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중이며, 확정급여채무는 약 1조 7,41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외적립자산은 약 1조 2,324억원에 그쳐 자산이 부채보다 약 5,095억원 부족함

[한국전력공사의 2023년 말 퇴직금 관련 부채 및 자산]

(단위: 백만원)

부채(A)		자산(B)		차이금액(B-A)
계정	금액	계정	금액	
확정급여채무	1,741,889	사외적립자산	1,232,379	△509,510

주: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퇴직금 관련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는 경우, 퇴직금 관련 사용제한예금을 설정한 부분만 퇴직금 관련 자산에 포함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서울대학교병원은 퇴직금제도 운영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사학연금에 가입 중¹⁵⁾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약 5,35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관련 자산의 합계는 약 906억원으로 부채보다 자산이 약 4,446억원 부족함

[서울대학교병원의 2023년 말 퇴직금 관련 부채 및 자산]

(단위: 백만원)

부채(A)		자산(B)		차이금액(B-A)
계정	금액	계정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535,173	퇴직연금예치금	90,348	-
-	-	국민연금퇴직전환금	224	-
합계	535,173	합계	90,572	△444,601

주: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퇴직금 관련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는 경우, 퇴직금 관련 사용제한예금을 설정한 부분만 퇴직금 관련 자산에 포함함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퇴직금 관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115개 기관은 퇴직금 관련 자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¹⁶⁾¹⁷⁾

15) 2016년 사학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이전 가입자의 경우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 중임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3) 수지차 공공기관의 퇴직금 관련 자산 과소적립 문제

- 퇴직금 관련 자산이 과소적립된 115개 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은 27개임
 - 상기 수지차 보전기관은 정부로부터 퇴직금을 포함해서 총인건비를 보전받고 있는데, 총인건비에 포함된 퇴직금을 별도로 사용제한예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타 인건비(호봉승급 등) 등에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

- 수지차 보전기관 중 자산 부족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855억원), 한국교통안전공단(796억원), 국립공원공단(434억원)임
 - 자산 부족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소비자원으로 나타났으며, 퇴직금 관련 자산이 0원으로 부족비율이 100%임
 -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 등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퇴직금 관련 자산이 과소적립된 수지차 공공기관의 자산 부족 금액 및 부족비율]
(단위: 백만원, %)

기관	부채(A)	자산(B)	차이금액(B-A)	차이비율 ((B-A)/A)
국가철도공단	106,322	78,827	△27,495	△25.9
국립공원공단	78,910	35,479	△43,431	△55.0
국토안전관리원	38,343	37,451	△892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8,837	56,115	△2,722	△4.6
한국도로교통공단	111,272	71,113	△40,159	△36.1
독립기념관	4,838	2,115	△2,723	△56.3
영상물등급위원회	2,198	1,764	△434	△19.7
예술의전당	11,049	6,886	△4,163	△37.7
전쟁기념사업회	7,042	3,930	△3,112	△44.2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동법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동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17) 퇴직금제도의 경우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거나 부채와 동일한 금액의 자산을 적립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에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권고사항임

(단위: 백만원, %)

기관	부채(A)	자산(B)	차이금액(B-A)	차이비율 ((B-A)/A)
한국가스안전공사	121,146	35,676	△85,470	△70.6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587	197	△1,390	△87.6
한국고전번역원	5,456	4,500	△956	△17.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527	2,521	△6	△0.2
한국교통안전공단	106,325	26,731	△79,594	△74.9
국가유산진흥원	13,579	2,677	△10,902	△80.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3,928	3,637	△10,291	△73.9
한국산업인력공단	80,202	65,009	△15,193	△18.9
한국소비자원	7,224	0	△7,224	△100.0
한국에너지공단	32,843	7,238	△25,605	△78.0
한국영상자료원	3,796	2,787	△1,009	△26.6
한국인터넷진흥원	32,087	20,136	△11,951	△37.2
한국임업진흥원	6,904	6,198	△706	△10.2
한국저작권위원회	5,674	5,170	△504	△8.9
한국학중앙연구원	1,923	557	△1,366	△7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2,386	12,703	△9,683	△43.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200	1,479	△6,721	△82.0
한국환경공단	146,523	137,638	△8,885	△6.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680	10,360	△320	△3.0

- 주: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퇴직금 관련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는 경우, 퇴직금 관련 사용제한예금을 설정한 부분만 퇴직금 관련 자산에 포함함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퇴직금 관련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일부 직원의 퇴직연금 중간 정산 및 퇴직연금 운용방식 변경 등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의 납입시점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액이 발생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따라서 수지차 보전기관은 정부로부터 퇴직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보전 받으므로, 총인건비 중 퇴직금은 별도의 사용제한예금으로 우선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금 관련 부채보다 자산이 적다는 것은 퇴직급여충당금 및 인건비 연동 법정경비 등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든 측면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퇴직금이 아닌 다른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기획재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이 퇴직금 관련 인건비를 타 인건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 요건 및 정부예산 지원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

가. 현 황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
 -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등을 의미하며,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 이내로 편성(중전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300% 이내로 편성)
 - 내부평가급은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에 내부평가 상여금, 생산 장려금 등 명칭 여하에 무관하게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기타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내부평가급만을 지급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내부평가급 또한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나. 주요 쟁점

-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이 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과 관련하여 차등화가 불충분한 문제가 존재
 -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13개 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 18개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이 존재하지 않아, 성과가 가장 낮은 직원도 성과급을 수령 가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직급 범위)
경영평가성과급 (1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토교통위원회(3)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정무위원회(3)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환경노동위원회(3)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평가급 (18)	국토교통위원회(5)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무위원회(3)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위: 개)

구분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직급 범위)
	환경노동위원회(3)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1)	산업통상자원부	(주)강원랜드(2급 이하)
	교육위원회(1)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주: 별도로 차등 등급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차등 지급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작성 제외
 자료: 각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15개 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 17개 기관은 관련 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달리 성과급 지급 등급 수를 6개 미만으로 설정하였음

[성과급 지급 등급 수가 6개 미만인 공기업·준정부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직급 범위)
경영평가성과급 (15)	국토교통위원회(5)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환경노동위원회(3)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무위원회(3)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위: 개)

구분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직급 범위)
내부평가급 (17)	국토교통위원회(5)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무위원회(3)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환경노동위원회(3)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환경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공원공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	산업통상자원부	(주)강원랜드(2급 이하)
			한국가스공사(호봉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주: 1. 표에 제시된 기관 중 한국연구재단은 성과급 지급 등급 수가 3개이며, 나머지 기관은 5개임
 2.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2024.7.31. 지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회신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해당 사항 없음' 으로 회신한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8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작성(이하 아래의 모든 표에서 동일)
 3. 내부평가급의 경우 2024.7.31. 기준 지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회신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급 구간 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제외한 7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작성

자료: 각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8개 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 21개 기관은 관련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설정하여,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등이 충분하지 않음

[최고 등급의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2배 미만인 공기업·준정부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직급 범위)
경영평가성과급 (8)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4급 이하)
			한국전력기술(주)(3급 이하)
			한국지역난방공사(비간부직)
			한전KDN(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3급 이하)
환경노동위원회(1)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비간부직)	
내부평가급 (2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6)	산업통상자원부	(주)강원랜드(2급 이하)
			한국가스공사(호봉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4급 이하)
			한국전력거래소(3급 이하)
			한전KDN
	국토교통위원회(4)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3급 이하)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부동산원(비간부직)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3)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급 이하)
		해양수산부	한국마사회(3급 이하) 해양환경공단(3급 이하 일반직 등)
	환경노동위원회(3)	환경부	국립공원공단(6급 이하)
			한국수자원공사(비간부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무위원회(2)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3급 이하) 예금보험공사	
교육위원회(1)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외교통일위원회(1)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위원회(1)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일반직)	

주: 별도로 차등 등급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차등 지급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작성 제외
자료: 각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최고 등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2배 미만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등급별 지급률 현황
(단위: %)]

구분	기관명(직급 범위)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차하위등급		최하위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경영 평가 성과 과 급	한국광해	3급 이상	16	55	28	53	27	45	-	-	
	광업공단	4급 이하	20	53	30	52	32	47	-	-	
	한국석유공사(4급 이하)		10	128	20	124	10	113	10	0	
	한국전력기술(3급 이하)		13	169	23	159	10	131	0	0	
	한국지역난방공사(비간부직)		14	186	15	181	14	164	0	0	
	한전KDN(주)		10	128	20	125	10	112	0	0	
	한국연구재단		14	117	71	100	둘째 등급		14	83	
	한국마사회(3급 이하)		10	57	20	53	10	43	0	0	
내 부 평 가 급	한국수자원공사(비간부직)		10	165	15	158	10	135	0	0	
	(주)강원랜드(2급 이하)		1	207	20	204	0	193	-	-	
	한국가스공사(호봉제)		97	250	-	-	3	0	좌동	좌동	
	한국광해	3급 이상	16	154	28	151	27	147	-	-	
	광업공단	4급 이하	20	153	30	151	32	148	-	-	
	한국석유공사(4급 이하)		10	212	20	206	10	187	10	0	
	한국전력거래소(3급 이하)		10	540	15	484	10	316	0	0	
	한전KDN(주)		10	210	20	207	10	190	0	0	
	국가철도공단(3급 이하)		0	0	100	100	0	0	0	0	
	주식회사 에스알		5	320	19	310	30	290	4	28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	105	20	103	20	98	10	95	
	한국부동산원(비간부직)		12	260	18	255	12	240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급 이하)		4	337	12	327	8	297	0	0	
	한국마사회(3급 이하)		10	283	20	267	10	217	0	217	
	해양환경공단(3급 이하 일반직 등)		10	520	15	510	8	480	2	0	
	국립공원공단(6급 이하)		10	109	15	105	15	95	10	91	
	한국수자원공사(비간부직)		10	220	15	210	10	180	0	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311	11	298	19	272	16	259	
	신용보증기금	3급		6	255	17	227	11	173	6	145
		4급 이하		6	235	17	217	11	183	6	165
예금보험공사	1~2급		6	128	10	114	6	72	0	0	
	3급		9	113	14	106	9	87	0	0	
	4급 이하		8	101	13	100	10	99	0	0	
	특정직원		29	110	0	105	5	90	0	0	
	전문직원		4	113	9	106	4	87	0	0	
한국장학재단		5	120	15	110	5	80	-	70		
한국국제협력단		10	120	15	110	10	80	-	0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일반직)		10	123	20	110	10	78	0.3	0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가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일부 기관은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최저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특정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등, 관련 지침에서 설정한 등급별 인원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음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관련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명(항목별 세부 현황)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미만	경영평가 성과급(5)	(주)강원랜드(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0.6%), 주식회사 에스알(5.0%), 한국인터넷진흥원(8.7%), 한전KPS(주)(4.55%)
	내부평가급 (8)	(주)강원랜드(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0.6%), 주식회사 에스알(5.0%), 주택도시보증공사(9.6%), 한국인터넷진흥원(8.9%), 한국장학재단(5.0%), 한국환경산업기술원(9.5%), 한전KPS(주)(4.55%)
최저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 합이 10% 미만	경영평가 성과급(4)	(주)강원랜드(0.6%), 그랜드코리아레저(주)(0.9%), 주식회사 에스알(5.0%), 한전KPS(주)(5.68%)
	내부평가급 (4)	(주)강원랜드(0.3%), 그랜드코리아레저(주)(0.9%), 주식회사 에스알(9.0%), 한전KPS(주)(5.68%)
특정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50%를 초과	경영평가 성과급(2)	그랜드코리아레저(주)(94.7%), 한국연구재단(71.0%)
	내부평가급 (5)	국가철도공단(100.0%), 그랜드코리아레저(주)(94.7%), 주택도시보증공사(51.5%), 한국가스공사(97%), 한국장학재단(60.0%)

주: 1. 별도로 차등 등급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차등 지급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작성 제외
 2. 지급 인원 비율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각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편, 2023년 평가를 기준으로 각 기타공공기관이 2024년에 지급한 내부 평가급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 100개 기타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이 존재하지 않아, 성과가 가장 낮은 직원도 성과급을 수령 가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
정무위원회(22)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주)
	국무조정실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17)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여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단위: 개)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환경노동위원회(8)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기상청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7)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단위: 개)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
보건복지위원회(5)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토교통위원회(4)	국토교통부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행정안전위원회(2)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여성가족위원회(2)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외교통일위원회(2)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위원회(2)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방위원회(2)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기획재정위원회(2)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법제사법위원회(2)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 2024.7.31. 기준 지급 여부 또는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회신한 (재)APEC기후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독립기념관, 산업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전략물자관리원, 창업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초과학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식품안전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전(MCS)(주), 항공안전기술원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작성

자료: 각 기타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93개 기타공공기관은 성과급 지급 등급 수를 6개 미만으로 설정하였음

[성과급 지급 등급 수가 6개 미만인 기타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
정무위원회(24)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
	국무조정실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대한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단위: 개)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산업통상자원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환경노동위원회(7)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기상청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보건복지위원회(5)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단위: 개)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
교육위원회(3)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방위원회(3)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교통위원회(3)	국토교통부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행정안전위원회(3)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외교통일위원회(3)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제사법위원회(2)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가족위원회(2)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획재정위원회(2)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자료: 각 기타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62개 공공기관은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설정하여,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등이 충분하지 않음

[최고 등급의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2배 미만인 기타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
정무위원회(15)	국무조정실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단위: 개)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9)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축산환경관리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2급 미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7)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광주과학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보건복지위원회(5)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단위: 개)

위원회명	소관부처명	기관명
환경노동위원회(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교육위원회(2)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토교통위원회(2)	국토교통부	코레일유통(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법제사법위원회(2)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외교통일위원회(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획재정위원회(1)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방위원회(1)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여성가족위원회(1)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료: 각 기타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가로, 일부 기관은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최저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특정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등 차등화가 충분하지 않음

[그 밖의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 관련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명(항목별 세부 현황)
<p>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이 10% 미만인 기관 (39)</p>	<p>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문연구직, 행정직), 국방과학연구소(연구, 기술, 관리직 28호봉 이하 등), 재단법인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은행, (재)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p>
<p>최저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 합이 10% 미만인 기관 (16)</p>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방과학연구소, 국제방송교류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정부법무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식재산보호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p>
<p>특정 등급의 지급 인원이 50%를 초과한 기관 (32)</p>	<p>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중앙의료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한체육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p>

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작성
 자료: 각 기타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 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각 공공기관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기관 유형별 내부평가급 차등 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경영평가 성과급과 달리 내부평가급은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음에도,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실태가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차등 지급 관련 모든 항목에서 기타공공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대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공공기관 유형별 내부평가급 차등 지급 관련 현황]

(단위: 개)

구분	해당 공공기관 수(전체 대비 비율)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	18/87 (20.7%)	100/240 (41.7%)	118/327 (36.1%)
성과급 지급 등급 수가 6개 미만인 기관	17/87 (19.5%)	93/240 (38.8%)	110/327 (33.6%)
최고 등급의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2배 미만인 기관	21/87 (24.1%)	62/240 (25.8%)	83/327 (25.4%)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미만인 기관	8/87 (9.2%)	39/240 (16.3%)	47/327 (14.4%)
최저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미만인 기관	4/87 (4.6%)	16/240 (6.7%)	20/327 (6.1%)
특정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	5/87 (5.7%)	32/240 (13.3%)	37/327 (11.3%)

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거나, 등급이 아닌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기관은 분자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각 주무기관은, 성과급이 충분한 수준으로 차등 지급됨으로써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출 이자율	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 금리</th> <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 <td>당해연도 3.1.~5.31.</td> </tr> <tr> <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 <td>당해연도 6.1.~8.31.</td> </tr> <tr> <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 <td>당해연도 9.1.~11.30.</td> </tr> <tr> <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 <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 </tr> </tbody> </table>	기준 금리	각 기관의 적용 기간	1.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3.1.~5.31.	4.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6.1.~8.31.	7.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9.1.~11.30.	10.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12.1.~차년도 2.29.
	기준 금리	각 기관의 적용 기간									
	1.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3.1.~5.31.									
	4.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6.1.~8.31.									
7.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9.1.~11.30.										
10.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12.1.~차년도 2.29.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대출 한도	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										
면적 요건 등	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용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나. 주요 쟁점

- 관련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2022년 이후 공공기관 주택용자금 신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 32개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에도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용자금을 신규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14개 공공기관은 2024.7.31. 현재에도 여전히 관련 대출제도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용자금을 제공한 기관]

(단위: %, 명, 천원)

기관명	대출 당시 한은 금리	기관의 대출 금리	대출 직원 수	대출 총 규모	'24.7.31. 기준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88관광개발(주)	5.04	3.50	1	30,000	개선(2024.1.1.)
국립공원공단	3.46~5.47	2.00	29	1,338,000	미개선
기술보증기금	3.46~3.91	2.30	2	200,000	개선(2023.12.31.)
대한체육회	4.80	2.00	1	30,000	개선(2023.9.11.)
사람학교교직원 연금공단	4.82	3.00	1	35,000	미개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3.46~5.47	2.00	19	996,253	미개선
신용보증기금	4.80~5.47	4.02	3	330,000	미개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46~5.47	1.15~3.00	1	70,000	개선(2023.8.31.)
주택도시보증공사	3.46~5.47	1.50~2.50	55	7,660,000	미개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46~5.47	3.00	24	1,620,000	개선(2023.4.25.)
한국공항공사	4.53~4.80	2.60	55	2,800,000	미개선
한국관광공사	3.46~4.53	1.60~2.90	48	4,991,400	개선(2022.12.1.)
한국광해광업공단	3.46~4.53	2.43~3.89	118	8,532,633	미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91~5.47	3.50	94	7,154,088	개선(2024.1.29.)
한국농어촌공사	3.46~3.91	1.10	49	4,367,500	개선(2022.7.5.)

(단위: %, 명, 천원)

기관명	대출 당시 한은 금리	기관의 대출 금리	대출 직원 수	대출 총 규모	'24.7.31. 기준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한국도로공사	3.46~3.91	1.80~1.95 + 인정과세	28	2,031,000	개선(2022.5.20.)
한국부동산원	3.46~5.47	2.20	50	6,643,000	미개선
한국산업단지공단	4.48~5.34	4.16~4.68	14	958,000	개선(2022.12.17.)
한국산업은행	3.46~5.47	2.36~5.12	66	4,581,220	미개선
한국석유공사	3.46~5.47	1.15~3.70	89	10,475,000	미개선
한국수자원공사	3.46~5.47	1.33~4.43	109	10,410,000	미개선
한국자산관리공사	3.46~5.47	3.30	47	5,250,278	미개선
한국전기안전공사	3.91~5.34	0.00	41	1,154,000	개선(2022.12.30.)
한국전력거래소	3.46~5.34	2.77~4.47	43	2,898,520	개선(2023.12.29.)
한국전력공사	3.46~5.47	2.50~3.00	900	78,213,000	개선(2023.6.30.)
한국조폐공사	4.48~5.04	2.50	41	2,057,500	미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	3.91	2.70	2	200,000	개선(2024.5.27.)
한국지역난방공사	3.46~5.47	2.08~2.92	267	41,993,000	개선(2023.10.20.)
한국체육산업개발(주)	4.05~5.47	2.00	17	465,000	개선(2023.10.16.)
한국토지주택공사	3.46~5.47	인정과세~4.82	406	33,939,620	미개선
한전KDN(주)	4.53	4.34	6	750,000	개선(2023.6.20.)
한전KPS(주)	3.46~5.47	2.00~4.60	119	12,922,900	개선(2023.12.28.)

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 수준으로 주택용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경우만 개선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7개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에도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에 대해서 주택융자금을 신규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3개 공공기관은 현재에도 여전히 관련 대출제도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기관]

(단위: 명, ㎡, 천원)

기관명	대출 직원 수	구입 당시 주택 면적	대출 총 규모	'24.7.31. 기준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한국광해광업공단	16	91~157	1,551,950	미개선
한국도로공사	5	88~122	337,000	미개선
한국석유공사	10	100	1,500,000	개선(2024.1.2.)
한국수자원공사	1	107	100,000	개선(2022.12.30.)
한국자산관리공사	1	105.5	70,000	미개선
한국지역난방공사	2	99.0	380,000	개선(2021.7.26.)
한국토지주택공사	8	100~113	640,000	개선(2023.12.29.)

주: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경우만 개선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1개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에도 1인당 7천만원을 초과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신규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13개 공공기관은 2024.7.31. 현재에도 여전히 관련 대출제도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1인당 7천만원 초과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기관]

(단위: 명, 천원)

기관명	대출 직원 수	대출 당시 1인당 한도	대출 총 규모	'24.7.31. 기준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기술보증기금	2	100,000	200,000	미개선
신용보증기금	2	130,000	260,000	미개선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4	100,000	360,000	미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48	150,000/200,000	7,375,000	미개선
한국관광공사	44	150,000	4,805,500	개선(2022.12.1.)
한국광해광업공단	53	100,000	5,063,000	미개선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77	100,000	7,294,490	미개선
한국농어촌공사	67	120,000	7,130,500	미개선
한국도로공사	76	75,000	5,697,500	미개선
한국부동산원	47	140,000	6,519,000	미개선
한국산업은행	37	100,000	3,530,920	미개선
한국석유공사	69	150,000	9,888,040	미개선
한국수자원공사	83	120,000	9,254,000	개선(2023.12.22.)
한국자산관리공사	39	160,000	5,250,278	미개선
한국전력거래소	27	100,000	2,302,000	개선(2022.9.30.)
한국전력공사	816	100,000	74,088,000	개선(2023.6.30.)
한국주택금융공사	1	130,000	130,000	개선(2024.5.27.)
한국지역난방공사	243	200,000	41,993,000	개선(2023.10.20.)
한국토지주택공사	333	90,000	29,733,970	미개선
한전KDN(주)	6	150,000	480,000	개선(2023.6.20.)
한전KPS(주)	81	150,000	10,417,900	개선(2023.3.8.)

주: 1인당 7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경우만 개선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편, 3개 공공기관은 무주택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2022년 이후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마련된 주택용자금을 제공하였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3명), 한국산업단지공단(2명), 한국체육산업개발(주)(5명) 등

□ 이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는 한편 관련 주택용자금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규정할 것
 -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출 이자율	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기준 금리	각 기관의 적용 기간
	1.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3.1.~5.31.
	4.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6.1.~8.31.
	7.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9.1.~11.30.
	10.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12.1.~차년도 2.29.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대출 한도	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	

나. 주요 쟁점

- 관련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2022년 이후 공공기관 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 35개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에도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신규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19개 공공기관은 2024.7.31. 현재에도 여전히 관련 대출제도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 기관]

(단위: %, 명, 천원)

기관명	대출 당시 한은 금리	기관의 대출 금리	대출 직원 수	대출 총 규모	'24.7.31. 기준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88관광개발(주)	3.46~5.04	1.00~3.50	35	495,000	개선(2024.1.1.)
국민건강보험공단	3.91~5.34	0.93~3.56	1,116	25,643,410	개선(2022.7.7.)
기술보증기금	3.46~5.47	3.50	230	6,733,000	미개선
대한법률구조공단	3.91	1.50	8	200,000	미개선
대한체육회	5.04	2.00	8	160,000	개선(2023.9.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46~5.47	3.00	143	3,549,000	미개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46~5.47	2.00	50	2,500,450	미개선
신용보증기금	4.48~5.47	4.02~5.02	265	8,100,840	미개선
주택관리공단(주)	3.91~5.47	3.8~4.9	192	3,169,000	개선(2022.12.21.)
주택도시보증공사	4.05	2.50	49	960,000	미개선
중소기업은행	3.91~5.47	4.40	1,150	28,934,920	개선(2024.6.2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05~4.82	4.00	133	4,026,000	개선(2023.7.1.)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46~5.47	3.00	95	1,850,000	개선(2022.12.29.)
한국공항공사	3.46~5.47	2.60~3.10	149	3,860,000	미개선
한국관광공사	3.46~4.53	2.50	127	4,586,592	미개선
한국광해광업공단	3.46~4.53	2.43~3.47	100	2,960,000	개선(2023.8.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91~5.47	2.50	239	3,969,145	개선(2024.1.25.)
한국농어촌공사	3.46~5.47	2.50	931	24,542,350	미개선

(단위: %, 명, 천원)

기관명	대출 당시 한은 금리	기관의 대출 금리	대출 직원 수	대출 총 규모	'24.7.31. 기준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46~5.47	2.50	89	1,702,000	개선(2022.12.2.)
한국부동산원	3.46~5.47	2.30~5.09	193	5,468,000	미개선
한국산업은행	3.46~5.47	2.46~5.21	668	16,055,460	미개선
한국석유공사	3.46~5.47	2.50	679	21,740,000	미개선
한국수자원공사	3.46~5.47	2.50	1,490	53,613,000	미개선
한국수출입은행	4.48~5.04	3.88~4.91	70	1,392,000	미개선
한국언론진흥재단	4.68	3.50	40	800,000	미개선
한국전력거래소	3.46~5.34	1.20~5.04	31	479,930	개선(2022.9.30.)
한국전력공사	3.46~5.34	1.75~3.50	3,056	58,310,000	개선(2023.8.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3.46~4.68	2.50	298	5,693,333	미개선
한국조폐공사	4.05~5.47	4.00	179	3,093,269	미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	3.91~5.47	2.00	61	1,830,000	미개선
한국지역난방공사	3.46~5.47	2.00	518	10,170,000	미개선
한국체육산업개발(주)	4.05	2.00	64	317,000	개선(2023.10.16.)
한국토지주택공사	3.46~5.47	2.40~2.90	918	31,446,835	개선(2023.12.29.)
한전KDN	3.46~5.47	2.00	368	7,170,000	개선(2023.12.20.)
한전KPS(주)	3.46~5.47	0.50~2.50	1,935	24,612,920	개선(2023.12.22.)

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경우만 개선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19개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에도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신규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10개 공공기관은 2024.7.31. 현재에도 여전히 관련 대출제도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1인당 2천만원 초과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 기관]

(단위: 명, 천원)

기관명	대출 직원 수	대출 당시 1인당 한도	대출 총 규모	'24.7.31. 기준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국민건강보험공단	415	직전년도 본인 퇴직금의 70%	16,905,440	미개선
기술보증기금	207	100,000	6,630,500	미개선
대한법률구조공단	5	30,000	150,000	미개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0	57,000	3,015,000	미개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4	70,000	2,440,418	미개선
신용보증기금	208	50,000	10,190,930	미개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8	45,000	3,875,000	개선(2023.7.1.)
한국항공공사	91	30,000	2,730,000	개선(2023.9.28.)
한국관광공사	91	50,000	4,032,193	개선(2023.10.5.)
한국광해광업공단	87	50,000	2,705,000	개선(2023.8.1.)
한국농어촌공사	627	30,000	18,734,700	개선(2024.1.1.)
한국부동산원	280	30,000	8,381,000	미개선
한국산업은행	404	40,000	12,903,200	미개선
한국석유공사	402	50,000	17,040,000	미개선
한국수자원공사	904	50,000	42,778,000	개선(2023.12.22.)
한국주택금융공사	61	30,000	1,830,000	미개선
한국지역난방공사	176	30,000	5,275,000	개선(2022.12.21.)
한국토지주택공사	727	30,000~50,000	29,266,336	개선(2023.12.29.)
한전KPS(주)	79	30,000	2,370,000	개선(2023.2.28.)

주: 1인당 2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경우만 개선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는 한편 관련 생활안정자금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
- 임직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 중학교 이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입학축하금 및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은 지원할 수 없음
 -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 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표]

국외학교	지급액
공통	해외파견 직원 근무지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뉴욕시 맨하튼, 호놀룰루, 몬트리올, 런던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유치원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만 지급 가능
고등학교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만 지급 가능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별 운영 중인 교육비 제도 현황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아래와 같이 지침의 내용 및 취지 등과 달리 임직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음
 - 일부 공공기관은 지침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도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관련 제도가 잔존

[임직원 초·중·고교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등을 지급하였고, 관련 제도가 잔존한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 인원 수	총 지급액	지급 대상	고교생 이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는지 여부 (개선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5	6,572	고등학생 자녀	△ (규정은 존재하나, 내부적으로 미지급 결정)
한국나노기술원	4	17,000	중·고등학생 자녀	X
한국수산자원공단	6	5,560	고등학생 자녀	X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	4,104	초·중·고교 및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취학 중인 자녀	X
한국한의약진흥원	10	13,527	「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재학 중인 자녀	X

주: 2021.1.1.~2024.7.31. 기준이며, 1인이 복수의 연도에 걸쳐 수령한 경우 매 연도마다 2 이상으로 중복 집계함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또한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해 학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학비보조금 등을 지원

[공공기관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지원 내용
지침에 규정된 자녀 1인당 지원 한도 초과 (3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지급 대상이 아닌 국가의 파견자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 (2개)	국가철도공단, 한국투자공사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교육비 제도 운영을 지양할 필요

가. 현 황

- 2023년 기준 전체 333개 공공기관(부설 포함) 중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기관 수는 292개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기준급여: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할 것
 -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보수체계를 고려하면, 월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의 규모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급’ 항목과 달리 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기본 연봉 이외의 수당이 포함됨
 -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 아래의 기준에 따를 것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1/4

나. 주요 쟁점

- 각 기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일부 공공기관은 기준급여를 ‘기본급’ 등으로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내에 기본 연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및 성과급까지 포함하여, 지침의 취지와 달리 명예퇴직수당을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기준급여를 ‘기본급’ 등으로 택하였음에도, 각종 수당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한 기관]

(단위: 개)

기본급 외에 추가된 항목명	기관명
성과급, 성과연봉 등 성과 관련 항목 (10)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행정연구원
출납수당, 안전관리수당 등 직무 관련 항목(3)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기타 항목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구활동비 등) (6)	국립공원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일부 공공기관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을 지침 대비 퇴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하여, 지침의 계산식에 따라 도출되는 금액보다 명예퇴직수당을 과다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을 지침 대비 퇴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한 기관]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기준급여를 ‘기본급’이나 ‘월평균임금의 45%’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한 기관(8)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환경연구원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에 관한 지침상 공식보다 유리한 공식을 규정한 기관(5)	건설근로자공제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주: 한국환경연구원은 내부규정도 불구하고 2024년 이후 실제 지급대상자에게는 정부 지침상 공식을 적용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지침을 초과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한 공공기관의 초과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9~2023년 지침 대비 지급액 차이 (총액 기준)
서울대학교병원	약 2,50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94
영화진흥위원회	36
충북대학교병원	30
한국가스기술공사	5
한국언론진흥재단	5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77

주: 실제 지급 사례가 없거나 차이가 음수인 기관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준급여를 ‘월평균임금의 45%’로 정한 공공기관 중, 일부 공공기관은 월평균 임금의 산정 방식을 연간 지급액의 1/12가 아닌 퇴직 직전 3개월 지급액의 1/3 등으로 정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 연평균 수준보다 높은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
 - 그 밖에 월평균임금의 산정 방식이 규정 등에서 명확하지 않아 특정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 연평균 수준보다 높게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월평균임금의 산정 방식을 퇴직 직전 3개월 지급액의 1/3 등으로 규정한 기관]

기관명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암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서민금융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환경보전원, 한전KPS(주)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각 공공기관은 명예퇴직수당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달리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기타 분야

1-1. 공공기관 지정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관리 약화

가. 현 황

- 2023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¹⁾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¹⁾으로 다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됨
 - 구체적으로는 2023년에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정원 기준(300명)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준정부기관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9개 기관이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

나. 주요 쟁점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²⁾ 및 경영평가³⁾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가 약화되는 문제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제2호⁴⁾에 따른 국회 제출 사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 1) (정원) 50명 → 300명, (수입액) 30억원 → 200억원, (자산) 10억원 → 30억원
- 2) 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②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에 따라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 4)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항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5)에 따른 국회 보고 사항으로, 국회 차원에서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2024년 공공기관 지정시 정원이 250명으로 정원 300명 기준에 미달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정부 정책사업(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사업) 등으로 인해 총자산이 2018년 2.4조원에서 2023년 5.2조원으로 증가하였고, 근로자했살론 등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금융보증계약부채의 급증으로 부채비율 또한 2018년 29.0%에서 2023년 614.2%로 급증한 상황
- 이외에도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역시 지속적으로 자산규모와 부채비율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적립금의 소진 등이 증장기적으로 추정됨에 따라 사전적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기관임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증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⑥ (생략)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⑧~⑩ (생략)

- 6) 특히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지속적으로 사업확장 등에 자금이 금융부채 중심으로 조달되고 있고, 정부의 보증 가능 규정 하에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으로 원리금 상환위험이 존재하며 국가의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기관
- 7) 4대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증장기적으로 2029년에는 적자로 전환되며, 2043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Ⅳ」, 2023., p.96.)

[공공기관별 자산 및 부채비율, 임직원 현황]

(단위: 억원,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민금융 진흥원	자산	23,777	29,063	31,706	36,469	43,071	51,984
	부채비율	29.0	858.6	681.8	419.1	412.3	614.2
	임직원 현황	134	161	189	222	239	250
부산항만 공사	자산	58,647	60,978	64,780	70,365	74,839	78,586
	부채비율	51.7	56.0	65.0	78.2	88.2	96.5
	임직원 현황	220	230	241	257	263	253
인천항만 공사	자산	31,069	33,199	32,761	33,494	35,348	36,403
	부채비율	43.9	53.3	45.5	51.9	59.0	67.1
	임직원 현황	228	248	253	261	264	25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자산	192,565	214,495	239,038	266,769	246,342	269,486
	임직원 현황	222	224	232	243	249	238

주: 임직원 현황은 일반정규직 정원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별 감사보고서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 지정 시 정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 대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 대상과 바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정원과 자산,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1-2.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관 현황 및 지정 해제의 적정성 분석 (금융감독원 · 한국예탁결제원)

가. 현 황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공공기관 지정
 - 각 기관의 규모, 정부지원 정도, 사업성격 등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신규지정, 해제, 유형변경이 이루어지며,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기관은 각 부처별로 관련법령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매년도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은 2007년(공공기관 최초 지정)~전년도 현황조사 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⁸⁾하고,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제1항⁹⁾ 각 호의 요건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추가하여 검토함

8) 2007~전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 미지정된 기관 및 지정해제된 기관도 조사대상에 포함, 다만 가장 최근 지정 이후 공공기관 지분 매각 등으로 법상요건 해당 여부에 변동이 생긴 기관은 사유 소명 후 조사대상에서 제외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나. 주요 쟁점

- 금융감독원은 법령 요건상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하나 2009년에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이 유보되고 있는바,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말 기준 금융감독원의 정부지원액 비율은 약 97% 수준으로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정대상이며, 직원 정원, 총수입액, 자체수입액¹⁰⁾, 자산 규모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의 지정 요건을 충족함¹¹⁾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관련 금융감독원 현황조사표]

(단위: 백만원, %, 명)

총수입액	자체수입액	자체수입비율	정부지원액 비율	총자산	직원 정원
357,107	141,486	39.62	96.79	272,523	2,190

- 주: 1. 총수입액, 자체수입액(비율), 정부지원액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3개년 평균
 2. 총자산 및 직원정원은 2023년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사업의 수입액: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라 함)는 2018년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관하여 경영성과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조직효율화, 고객만족도조사 내실화, 채용비리 근절 등 기타의 4가지 조건을 부여한 후 결정을 유보하였음
- 2024년 1월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이 공운위가 부여한 지정유보조건을 모두 이행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지정 유보를 유지하였는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¹²⁾
- 조직효율화를 위한 “상위직급 비율 및 1급 정원 감축” 요건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상위직급(1~3급) 비율은 2022년 말 38.4%에서 2024년 6월말 기준 34.6%로 감소하였고, 1급 정원은 2022년 말 57명에서 2024년 6월말 기준 55명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2022년부터 업무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내지원 축소 추진”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국내지원 내 팀 통·폐합을 통해 5개 팀을 축소하였음(총 20개 → 15개, '23.1월).
 - 현재 금융감독원 국내 지원은 11개로, 2023년 말 기준 국내지원 인력은 132명이며, 전체 운영예산은 32억원 수준임

[금융감독원 국내 지원 인력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인력(정원)			운영예산
	직원	업무지원인력	합 계	
2021	92	40	132	3,015
2022	92	44	136	3,441
2023	87	45	132	3,208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2) 금융감독원 유보조건 이행 현황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 II 위원회별 분석」 p.74 참조

- 그 외 조직효율화 유보조건으로 부과된 “워싱턴 사무소 폐쇄, 여타 해외사무소의 정비·조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22.3.31. 워싱턴 사무소를 폐쇄하고 해외사무소 기능 전환 및 정비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해당 기능 전환 방안들은 금융감독원의 본질적인 업무라거나 확대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¹³⁾¹⁴⁾
-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가 4개뿐으로, 금융감독원의 다른 해외사무소 소재지와 비교할 때 지원 수요가 저조한 지역이며, 2023년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 평가 결과에서도 6개 해외사무소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감사원은 2020년 1월 「감사보고서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에서 금융감독원 해외점포의 기능·업무 등을 전면 재검토한 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가 소재하지 않거나 그 수가 미미한 지역에 위치한 사무소는 우선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¹⁵⁾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소재 지역의 국내 금융기관 해외점포 현황]

(단위: 개)

국내 금융기관 해외점포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소재지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	하노이	북경
해외지점	17	7	-	9	10	10
해외법인	35	13	4	6	24	21
합계	52	20	4	15	34	31

주: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가 있는 국가(도시)를 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진출한 해외점포 수를 기재
자료: 금융감독원

- 13) 금융감독원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등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다만, 금융감독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측면에서 감독 기능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기관에 지정하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203932)이 발의된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4)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기능 전환 및 정비조정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 II 위원회별 분석」 p.75 참조
- 15) 금융감독원의 프랑크푸르트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해외점포가 3곳에 불과하여 필요시 본부에서 직접 해외출장을 통해 검사·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프랑크푸르트 소재 유럽중앙은행에도 금감원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업무 수행과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각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분담금)으로 대부분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운위가 금융감독원에 부과한 유보조건들의 이행은 조직 및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 또한 공운위가 부여한 유보조건 대부분은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근절, 조직 효율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향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는 단순히 지정 유보조건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중립성 보장, 현행 법률의 개정 가능성 및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⁶⁾

□ 한국예탁결제원은 2007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변경되었다가 2022년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는바, 지정해제 사유와 관련한 독점성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으며, 지정 해제의 주요 사유는 「공공기관 운영법」 및 시행령 상 ‘독점수입’의 규정과 해석에 따른 것임

16) 금융위원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찬반 의견이 대립함

- 찬성논거: ①금융감독원은 이미 「공운법」에 따른 지정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 공공정책의 주도적 수행 및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강한 감독권 등 공공성을 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②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이미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들 역시 개별 설치 근거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국회의 외부통제(국정감사 등), 예·결산의 승인 등을 받고 있다는 점, ③현행법상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부득이하게 자율성,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기관은 이미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의 우선 적용 문제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항
- 반대논거: ①국제통화기금(IMF),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가 권고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원칙에 비추어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공운법」과 달리 기관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임원의 임기보장, 해임사유 제한 등 지배구조 관련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운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금융감독원의 근거 법률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금융감독원은 이미 금융위원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및 국회의 외부통제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으며 「공운법」에 따른 규제가 추가될 경우 중복규제가 될 수 있음

-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 인한 수입액(시행령 제3조제2호¹⁷⁾)으로, 2022년부터 총수입액에서 정부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직전 3개년도 평균값)이 50% 이하로 나타남

[한국예탁결제원 정부지원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년도	'11~'13	'12~'14	'13~'15	'14~'16	'15~'17	'16~'18	'17~'19	'18~'20	'19~'21
정부지원액(a)	1,331	1,340	1,304	1,410	1,484	1,649	1,633	1,319	918
제1호	-	-	-	-	-	-	-	-	-
제2호	1,331	1,340	1,304	1,410	1,484	1,649	1,253	983	711
제3호	-	-	-	-	-	-	380	336	205
총수입액(b)	2,071	2,084	2,111	2,195	2,318	2,592	2,794	3,204	3,646
정부지원액 비율(a/b)	64.25	64.29	61.75	64.25	64.00	63.61	58.45	41.16	25.19

주: 1. 정부지원액, 총수입액은 모두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일 기준 직전 3개년도의 평균값이며, 정부지원액의 세부 항목은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구분임

2. 2013년~2020년(구분 기준) 제2호의 금액은 제3호 금액을 포함한 것임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 규모는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함)이 제정됨에 따라 전자등록 대상 증권 관련 수수료 수입이 정부지원액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함
 - 종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입액은 모두 법령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독점 수입으로서 “정부지원액”으로 분류되어 왔음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입장료·사용료·보험료·기여금·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 2019년 「전자증권법」¹⁸⁾ 시행에 따라 주식등의 전자등록업이 예탁결제원의 독점 업무가 아닌 ‘허가제’의 형태로 도입되었는바, 상장주식 등 전자등록 의무 대상¹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허가제에 기반한 수입으로서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부지원액 산정에서 제외되었음

[한국예탁결제원 수입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정부지원액	151,136	197,059	140,668	57,976	76,820	103,390	121,477
총수입액	237,778	307,172	293,176	360,987	439,550	521,600	614,544
정부지원액 비율	64.0	64.1	48.0	16.1	17.5	19.8	19.8
자산규모	3,011,769	3,447,368	3,464,253	5,013,508	4,738,059	6,405,851	4,026,773
직원정원	561	605	658	693	715	695	695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8) 시행 2019.9.16., 법률 제14096호, 2016.3.22., 제정

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3.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 하지만 「전자증권법」의 시행 이후 2024년 8월까지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업의 허가²⁰⁾를 받은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전자등록업무의 실질적인 독점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 운영법」에서는 실질적 독점 사업 수입은 정부지원액으로 보지 않고,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법 제4조제1항제2호)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 심사 시 해당 수입이 독점 사업 수입액으로 집계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정 요건과 관련한 독점성의 개념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독점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의 논의²¹⁾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21) 독점사업에 따른 수입을 정부수입액에 포함시키는 입법적 개정 방향

구분	내용
법령에 따른 독점 수입으로 엄격 해석	현행법에서와 같이 법령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는 경우에만 사업 수익을 정부지원액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
실질적 독점력 기준 도입	현행법의 체계를 실질적 독점력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액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법
절충안	법령상 독점적 사업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를 유지하되 유보조치를 설정하는 방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2.5.

1-3.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현황 및 개선점 분석

가. 현 황

-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심사 결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수는 총 201개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이 34개로 가장 많으며, 이는 2024년 공공기관 지정 당시 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취지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한 것에 기인함
 -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25개, 금융위원회 소관 23개, 국토교통부 소관 21개 순임

[2024년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현황]

(단위: 개)

소관부처	기관명	개수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파트너즈(주)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주),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4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
교육부	APEC국제교육협력원,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헬스케넥트(주), 이지케어텍(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티피에스주식회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9
국가보훈부	(주)한빛씨에스	1

(단위: 개)

소관부처	기관명	개수
방위사업청	(주)에이디디 보안환경관리단, (주)에이디디 시설관리단	2
국토교통부	KAC공항서비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협회, 남부공항서비스(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알이비파트너스(주),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엘엑스파트너스(주),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재단법인 건설산업교육원,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 재단법인 스마트건설교육원, 재단법인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주택산업연구원, 제이디씨파트너스(주), 주식회사 엘에이치사육관리,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한국주차안전기술원, 한국항공보안(주)	2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은캐피탈, KDB인프라자산운용, KDB비즈, KDB인베스트먼트,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신보운영관리(주), (주)IBK시스템, IBK신용정보(주), IBK연금보험(주), IBK자산운용(주), IBK투자증권(주), (주)IBK캐피탈, (주)IBK저축은행, (주)IBK서비스, 에이치에프파트너스(주), 한국회계기준원, 예울FMC(주), 캠프선박운용(주), (주)캠코시설관리, (주)캠코씨에스, 서울보증보험, 한국예탁결제원	23
기획재정부	(사)국제금융센터	1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촌희망재단,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에이플 주식회사, 한국마사회 시설관리(주), 국립농업박물관, (사)낙농진흥회	7
국가 유산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화유산국민신탁,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6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아가페	3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1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청)	(사)대한결핵협회,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사)한국한센복지협회, 노인의료나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재생의료진흥재단	13
산림청	(주)포이파트너스,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4
산업통상 자원부	(주)하이원파트너스, (주)키즈라라, (주)코엔서비스, KOSPO서비스(주), KPS파트너스(주), 이더블유피서비스(주), 중부발전서비스(주), 카페스(주), 코워드서비스(주), 한전CSC, 한전FMS,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지역난방안전(주), 지역난방플러스(주), (주)힘이되는나무, 케이엔오씨서비스(주),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키콕스 파트너스, 케이씨엘엔지테크, 케이엔에프파트너스, 한전기술서비스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5

(단위: 개)

소관부처	기관명	개수
새만금 개발청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1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1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3
여성가족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코웍스	2
원자력안전 위원회	(주)킨스파트너스	1
인사혁신처	(주)상록골프앤리조트	1
중소벤처 기업부	한국산학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주)에스비씨인증원,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중진공파트너스(주), 기보메이트, SBDC종합관리(주)	10
통계청	(재)한국통계진흥원	1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
해양수산부	(주)부산항보안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사)한국수산회,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항만협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원양산업협회, (사)한국항만물류협회, (사)한국검수검정협회,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울산항만관리(주),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17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1
환경부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물기술인증원,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4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 전국재해구호협회	2
합계		20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 그 미지정 사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지정 여부의 판단에 기획재정부의 재량의 여지가 크게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예를 들어,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산은캐피탈, KDB인프라 자산운용, KDB인베스트먼트, KDB비즈)와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제1항제5호22)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지정의 법정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실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자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기관명	설립연도	공공기관 지분율	자체수입 비율	총수입액	자산규모	정원
산은캐피탈(주)	1972	99.9	100	526,206	8,593,744	248
KDB인프라자산운용(주)	2003	84.2	100	37,243	70,706	78
KDB인베스트먼트(주)	2019	100.0	100	34,819	152,004	15
KDB비즈(주)	2019	100.0	100	25,895	7,280	568
(주)IBK캐피탈	1986	100.0	100	549,274	10,531,622	269
IBK투자증권(주)	2008	87.8	100	1,453,546	6,300,017	675
IBK연금보험(주)	2010	100.0	100	2,032,314	11,200,276	176
IBK자산운용(주)	2004	100.0	100	21,844	79,347	61
IBK저축은행	2011	100.0	100	88,897	2,100,002	136
(주)IBK시스템	1991	55.6	100	191,350	68,418	635
IBK신용정보(주)	2000	100.0	100	31,072	38,537	115
(주)IBK서비스	2018	100.0	100	67,173	19,809	1,894

주: 1.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전년도 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

2. 총수입액은 3년 평균 총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2)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특히 이 중, KDB인프라자산운용(주), 산은캐피탈(주)의 경우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고, IBK캐피탈, IBK 신용정보 및 IBK시스템 역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에 지정 해제되었는바, 이들 기관 모두 해제 당시 공공기관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사유에서 해제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지정 실익이 어떠한 측면에서 적은 것인지는 자세히 공시되지 않음²³⁾
-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재량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대부분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상황으로, 최종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근거를 밝히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지정 여부 및 유형 분류 결과에 대하여 적절성 또는 타당성의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요건을 「공공기관 운영법」 및 시행령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미지정 사유에 대하여도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관련 법령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

23) 공공기관 지정 심사 시 각 기관에서는 ① 소규모 기관이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② 법인 설립 초기로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고, ③ 정책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경쟁시장에서 영업 중인 기관이라는 점, ④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규제 적용시 시장에서 영업력과 경쟁력 유지가 어려움 등이 주요한 지정 유보 요청 사유로 제시한 바 있음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정부순지원 수입(2024년 예산 기준) 중 보조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9개 공공기관¹⁾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였는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115.8억원 중 부정수급액이 19.4억원으로 교부액 대비 부정수급액 비중이 16.8%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준임

[상위보조사업자인 공공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등 환수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내역사업명	사업 연도	부정수급 유형 ¹⁾	보조금 교부액	부정수급액 등 ²⁾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인턴십)	2020	임금 지급내역 허위 증빙 제출	12,000	9,000
		2020	전수 활동 실적 증빙 사진 중복 사용	12,872	1,772
	2021	12,095		7,777	
	2022	13,042		3,634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개별지원사업	20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법 33조 1항 1조)	3,911,000	6,750
		2020			1,000
		2022		3,120	
		2022		6,240	
		2022		1,040	
	통합지원사업	2021	목적외 사용	42,000	6,650
	해외전시회 (개별)	2023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 전시회 참가, 보조금 중복 수급	5,000	5,000
2023		5,000		5,000	

이상이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단위: 천원)

기관명	내역사업명	사업 연도	부정수급 유형 ¹⁾	보조금 교부액	부정수급액 등 ²⁾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 학교	2020	가족간 거래	15,000	13,636
		2021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20,000	1,500
		2021		20,000	1,476
		2021		15,000	520
		2022	가족간 거래	20,000	12,080
		2022		22,000	6,000
		2022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16,000	187
		2023	가족간 거래	10,000	9,000
	희망리턴 패키지	202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10,000	150
		2022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17,000	102
		202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17,000	8,500
		2022		20,000	4,880
		2022		17,000	773
		2022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17,000	16
		202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17,000	8,500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확산	202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44,000	1,000
		2021	가족간 거래	44,000	28,800
		2022		44,000	6,000
		2022		44,000	15,000
		2022		44,000	44,000
		2022		44,000	18,500
	특성화시장 육성	2019	가족간 거래	240,000	8,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2020	허위처리	51,000
2020			허위처리	48,000	47,961
2021			규정미숙	35,000	2,700
2021			허위처리	47,500	47,500
아기유니콘200 육성		2021	규정미숙	270,000	267,667

(단위: 천원)

기관명	내역사업명	사업 연도	부정수급 유형 ¹⁾	보조금 교부액	부정수급액 등 ²⁾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시니어인턴십	20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200	960
		2020		4,700	4,700
		2021		4,070	4,070
		2021		16,006	370
		2021		28,860	3,552
		2021		704,116	3,000
		2022		66,970	31,080
		2022		1,110	1,110
		2022		1,110	1,110
		2022		1,480	1,480
		2022		2,220	2,220
		2022		3,330	3,330
		2022		4,440	4,440
		2022		2,220	2,220
		2022		38,000	38,000
	2022	231,750	(고소금액) 231,750		
	2022	8,000	(고소금액) 8,000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2022	용도 외 사용	13,500	1,866
한국산업인력 공단	대중소 공동훈련지원 (전략분야)	2023	지원금 목적 외 사용	503,650	18,384
한국콘텐츠 진흥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2019	인건비 부당집행	200,000	2,4300
	만화콘텐츠 기업육성	2022	용도 외 사용	350,000	(소송금액) 257,100
		2023	용도 외 사용	200,000	(소송금액) 200,000
	게임기업 육성	2023	타기관 중복과제	343,333	(소송금액) 343,333
	음악산업 육성	2023	용도 외 사용	89,500	(소송금액) 62,678

(단위: 천원)

기관명	내역사업명	사업 연도	부정수급 유형 ¹⁾	보조금 교부액	부정수급액 등 ²⁾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기업지원	2023	보조사업자의 실소유 거래처와의 거래	10,800	10,770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기업지원	2023	거래처 1곳과 복수의 수의계약	217,000	22,320
합계				11,585,874	1,944,574

주: 1) 부정수급 유형은 각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명시함

2) 부정수급액 등에는 소송 진행 중으로 부정수급 여부가 미확정된 건들이 포함되어 있음

1. 단순 오지급 사례는 제외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추진 방향

-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10.8.)에서 201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관리법」”이라 함) 개정을 통해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등 제재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실제 적용이 저조²⁾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수급 제재 강화 방안³⁾을 추진하였음
- 또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2022)의 후속조치로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⁴⁾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79개)을 대상으로 누락된 제재부가금 200억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⁵⁾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인지부족, 제재처분으로 인한 마찰·민원 등을 우려하여 별도 제재 없이 환수처분으로 종결

3) ① 부정수급자 고발·수사의뢰 의무화, ② 부정수급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③ 행정제재 대폭 강화, ④ 부정수급액 엄정 환수 추진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국민권익위원회,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의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보도자료, 2023.12.27.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제재조치 금액은 총 1,336억원으로 환수가 1,15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가 186억원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후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기관을 확인하여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것임

나. 주요 쟁점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관리법」 상 제재부가금 의무 부과 규정 미준수 문제

-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제1항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3조의27)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8)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공공기관이 상위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별 지침 등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 건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 부처에 보고하고 있음

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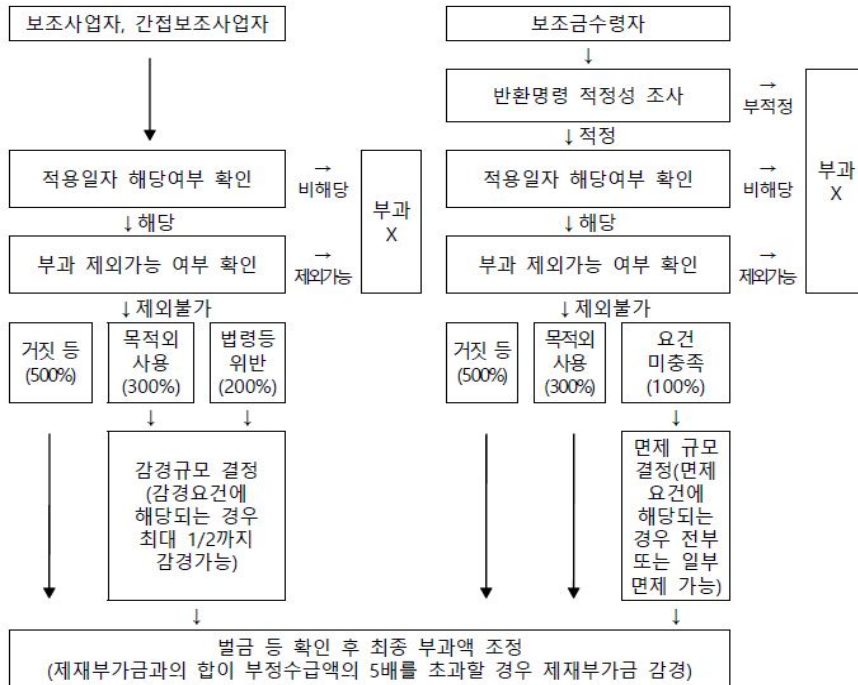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5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2022.3.)」

- 그런데 일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하여 환수한 건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1건의 부정수급(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제1항을 근거로 보조금 수령자에게 환수처분통지까지 하였으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았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인건비 부당집행, 용도 외 사용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환수 결정을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제재조치를 취했어야 하나,⁹⁾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만 이행하였음

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8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부정수급 적발 건에 대한 제재 부과 현황]

기관명	부정수급 유형 (사유)	제재부가금 여부	미부과 사유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임금 지급내역 허위 증빙 제출	O	-
	전수 활동 실적 증빙 사진 중복 사용	X	보조금 수령자의 단순 과실로 미부과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검토 중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보조금 관리법」 위반	X	불인정금액으로 미부과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관리법」 위반	O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보조금 관리법」 위반	부과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	「보조금 관리법」 위반	검토 중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금 관리법」 위반	X	주무부처 미부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가족 간 거래	X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창업진흥원	허위처리	X	단순 지침 위반이나 고의성이 없는 불인정 건으로 판단
	규정미숙		
발명진흥회	광의의 부정수급	X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점검 가이드라인」(2024.9.)에 따르면 법령 위반의 교부취소 및 반환사유로 인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을 수행한 ‘과오수급’ 역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
- 이와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 명령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제재부가금의 의무 부과 대상이 되며 시행령 [별표8]¹⁰⁾ 기준에 따라 감경 및 면제가 가능한 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및 공공기관은 이를 준수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를 검토하고 징수할 필요가 있음¹¹⁾

□ 「보조금 관리법」 상 부정수급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부과 기준을 지침 등에 명확히 마련할 필요

- 기획재정부장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하고, 각 부처 및 보조사업 담당 기관은 통보 받은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하여 조사 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 등을 이행함

10) [별표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1)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한 교부취소 및 반환명령의 경우 ‘협의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 처분이 필요하며, 그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분류 가능하여 보조금 반환 외에 제재를 부과할 수 없음

- 현행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점검 가이드라인」(2024.9.)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법」에서는 의도가 없는 법령위반도 부정수급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도성이 없는 과오수급이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됨
 - 따라서 법령 위반의 교부취소 및 반환사유로 인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을 수행한 ‘과오수급’ 역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¹²⁾

[부정수급의 개념]

부정수급	과오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사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 e나라도움상 점검결과 등록시에는 구별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조금법상에는 부정수급에 포함되는 개념
<p>제재처분 대상(고의성 여부와 무관)</p> <p>※ 과오수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법·지침 위반이며, 확정 및 환수,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판단 대상</p>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점검 가이드라인」(2024.9.)

12) 과오수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법·지침 위반이며, 부정수급자 확정 및 환수,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판단 대상

- 그런데 각각의 부정수급 사례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기관이 단순 사업 지침 위반 사항으로만 보거나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사업 지침에 따른 환수조치만 하고 「보조금 관리법」 상 반환명령 및 제재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중소기업창업부 보조사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위보조사업자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가족간 거래,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의 사유로 부정수급 적발된 건이 다수인데, 개별 사업 지침에 따른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만 하였고 「보조금 관리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¹³⁾
 - 또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부정수급 4건은 용역 결과물 불인정 및 수급자 착오로 인한 외주용역비의 오집행 등 ‘지침 위반으로 인한 불인정 건’으로서, 창업진흥원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적용하여 환수 조치를 하였고, 별도로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 이와 같이 특정 보조금 지급 사례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그 부정수급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부처 및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조치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점검 가이드라인」(2024.9.)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허위 신청, 정산서류 조작, 부적정 계약거래, 목적외 사용 등) 및 사례에 대하여 정리·제시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 및 기관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부정수급 판단 및 제재 부과 기준 등을 지침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¹⁴⁾

13)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건(보조사업자의 실소유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200%를 부과한 바 있음

14) 공공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은 현행 「보조금 관리법」 상 부정수급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다양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 각 보조사업별 지침 및 기준에 규정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내용 (부과 주체, 기속 여부 등)이 상이한바, 부정수급자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불이익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지침에 일관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법」 상의 제재부가금 부과(제33조의2)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제31조의2¹⁵⁾)는 법률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별 보조사업 지침에 관련 규정 자체가 없거나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의 규정 취지를 위반한 문제가 있으며, 사업 지침 간 일관성이 없음
 - 또한 「보조금 관리법」 상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의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이 되는데, 일부 공공기관들의 경우 개별 사업 지침에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¹⁶⁾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16) 「법령 근거없이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은 위법, 국민권익위 “내부규정만으로 특정 업체 제외는 무효”」,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0.4.1.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규정]

관련 규정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과주체	성격	부과주체	성격		
법률		「보조금 관리법」		중앙관서의 장	의무	중앙관서의 장	의무
사업 운영 지침 및 기준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중앙관서의 장	재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량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운영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규정 없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량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진흥공단	재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량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운영세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앙관서의 장	의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량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	해외지사화 통합관리지침 (KOTRA)		중앙관서의 장	재량	중앙관서의 장 대한투자무역 진흥공사	재량 재량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정 없음		대한투자무역 진흥공사	의무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KOTRA)		규정 없음		대한투자무역 진흥공사	재량
	창업 진흥 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중앙관서의 장	재량	창업진흥원	재량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		규정 없음		창업진흥원	의무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가. 현 황

- 2023년 6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25조1)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²⁾ 건설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³⁾ 제18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
 -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시도별 배치기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
 -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409개 중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34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⁴⁾에 근거한 기관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5개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
 - 이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인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최종 153개로 조정됨
 - 본 분석에서는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정부 소속기관 44개와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폐합기관 2개⁵⁾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1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함⁶⁾

-
- 2) ‘혁신도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의미함
- 3) 이후 2023.6.9.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4) ① 중앙행정기관, ②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③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④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⑤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⑥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
- 5)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광해광업공단(‘21.9.)
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20.12.)
- 6) 이 중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에 각각 부산 및 세종으로 이전하여 분석 대상(106개)에 포함하였으나, 이후 2022년, 2024년에 각각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12월에 106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음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77개,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19개, 그 외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이 10개임

[연도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단위: 개)

연도	이전 기관명			개수
	혁신도시(77)	세종시(19)	개별 이전(10)	
2010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오송)	2
2011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1
2013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개발연구원	-	9
2014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	52

(단위: 개)

연도	이전 기관명			개수
	혁신도시(77)	세종시(19)	개별 이전(10)	
20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서부발전(주)(태안), 한국장학재단(대구)	24
20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주)(경주)	4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공원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8
2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재외동포재단(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3
201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	-	3
합계				106

주: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각각 2022년, 2024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며, 재외동포재단은 2024.6.4. 해산함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innocity.molit.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계획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7.)에는 한국산업은행(38번) 및 방위사업청(106번) 등 이전 추진 대상 기관명이 명시되었고, 그 외 지방시대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116번)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 이전 관련]

구분	주요 내용(발췌)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p>(법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안보실 주도 법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p> <p>※ 국방과학기술 역량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대전)</p>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국토교통부)	<p>□ 과제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 발전 지원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자료: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7. 대한민국정부

나. 주요 쟁점

- 2024년 1월 기준 전체 327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서울 및 경기)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총 144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공공기관 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120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이 24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공기관 24개,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 23개 순 등으로 나타남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 현황]

(단위: 개)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서울 (120)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5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기타 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주)공영홈쇼핑,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항공박물관,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예술의전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전략물자관리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06

(단위: 개)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보전원, 한식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부산 (20)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2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3
	기타 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항만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15
대구 (14)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2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
	기타 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7
인천 (7)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1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공단	1
	기타 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항공안전기술원	5
광주 (2)	기타 공공기관	국립광주과학관, 전남대학교병원	2
대전 (23)	공기업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4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4
	기타 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한국통계정보원	14

(단위: 개)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울산 (9)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2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4
	기타 공공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
세종 (24)	준정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기타 공공기관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환경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3
경기 (24)	공기업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2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기타 공공기관	88관광개발(주), 국립암센터, 국방전직교육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학중앙연구원	19
충북 (14)	준정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3
	기타 공공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치산기술협회	11
충남 (6)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2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1
	기타 공공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독립기념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

(단위: 개)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전북 (10)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3
	기타 공공기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7
전남 (16)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3
	준정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5
	기타 공공기관	한전MCS,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8
경북 (10)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3
	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기타 공공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과학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5
경남 (12)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
	준정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기타 공공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방기술품질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7
강원 (12)	공기업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3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
	기타 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	3
제주 (4)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1
	기타 공공기관	제주대학교병원, 한국국제교류재단	2
합계			327

주: 본점 소재지는 2024년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함
 - 이 중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및 수도권에 있는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음
 -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에서는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폭넓게 포함될 것으로 보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상의 이전대상공공기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p>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p>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은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 2022년 12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이 포함된 이후 정부는 지자체·노조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2023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 11월에 종료될 예정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내역]

- ('22.7) 12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포함
- ('23.1~7) 지자체·노조 등 의견 수렴 및 갈등상황 모니터링
- ('23.8~9)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23.11~현재) 용역 계약 및 진행 중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

- (용역명)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 (목적)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성과평가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책의 미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완방안을 분석하고자 함
- (용역기간) '23.11~'24.11 (1년)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비혁신도시 간 첨예한 입장차이 등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갈등 최소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현재 1차 이전의 성과평가 및 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는 설명임

□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현 황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¹⁾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87개 공공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31개의 기관이 A등급을 받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1개의 기관이 B등급, 근로복지공단 등 7개의 기관이 C등급, (주)강원랜드 등 4개의 기관이 D등급을 받음
 - 만족도 결과에 대한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 등급, 80점 이상은 C 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 부여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14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23년 기준)]

(단위: 개)

구분	공공기관
A (31)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조폐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B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환경공단
C (7)	근로복지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D (4)	(주)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제외 (1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14개 기관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나. 주요 쟁점

-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은 주요 공공기관은 (주)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임
 - (주)강원랜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 받음
 - 업무 유형별 고객만족 수준 평가에서 (주)강원랜드는 카지노, 하이원그랜드 호텔, 하이원콘도, 하이원골프에서 D등급을 받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매입임대, 개인토지에서 D등급을 받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C등급)을 제외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 받음
 - 업무 유형별 고객만족 수준 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개인보증(일반), 분양이행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행에서 D등급을 받음
 - 한국마사회의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결과는 C(21년), D(22년), D(23년)로 등급 하락추세
 - 업무 유형별 고객만족 수준 평가에서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에서 D등급을 받음

[고객만족도 조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최근 4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유형	공공기관	2020	2021	2022	2023
시장형 공기업	(주)강원랜드	D	D	D	D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D	D	D	D
	주택도시보증공사	C	D	D	D
	한국마사회	-	C	D	D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발간일 2024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김경호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tel 02·761·0031)

ISSN 3058-5058

© 국회예산정책처, 2024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8-002040-10

ISSN 3058-5058

